

ISBN 979-11-85663-25-8

연구-기본-16-06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은정 · 김진 · 손동기



2016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SBN 979-11-85663-25-8

연구-기본-16-06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은정 · 김진 · 손동기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발간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효의 사상이 감소하며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연령주의가 커졌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고령자를 생산성이 낮은 집단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내재화 시켜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하게 된다. 그 결과 고령자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도 어렵고, 재취업해도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저출산·고령화 시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분리시키고 차별하는지를 측정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측정하고자 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우리사회에 적합한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단계로써 국내외에서 수행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척도·지표를 검토하였다.

본 과제는 원내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진행하고, 일본은 춘해 보건대학교의 김진 교수가, 프랑스는 한국외대 EU연구원 손동기 연구원이 맡아주었다. 바쁜 가운데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검독을 통해 귀한 의견주신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와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연령주의의 개념 및 구성요소	4
제1절 연령주의 개념 및 연령의 의미	4
1. 연령주의의 개념 및 구성요소	4
2. 연령주의의 유형	9
3. 노인 호명 및 노인의 의미	14
제2절 영역별 연령주의	17
1. 노화	17
2.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	20
제3절 국내외 연령주의 척도 및 평가	26
1. 주요 국가의 연령주의 및 관련척도	27
2. 국내 연령주의 및 관련척도	38
제4절 소결	44
참고문헌	46
제3장 일본의 연령주의	50
제1절 연령주의의 개념	50
1. 일본에 있어서의 고령자 문제	50
2. 연령주의의 개념	59
제2절 연령주의의 구성요소	63
1. 편견·고정관념	63
2. 태도	69
3. 차별	70
제3절 영역별 연령주의	73
1. 노화	73
2. 노동시장	75

제4절 국내외 연령주의 척도 및 평가	79
1. 일본판 FAQ	79
2. 일본어판 FSA 단축판	84
3. 일본 내각부 [평성15년도 연령·나이듦에 대한 의식조사]	89
4. 일본 내각부 [공생사회 지표], [공생사회에 관한 기초조사]	94
5. 杉井潤子 「현대사회의 연령차별 실태 규명과 고령화 교육추진」	100
제5절 소결	104
참고문헌	107
 제4장 프랑스의 연령주의	111
제1절 연령주의 개념	111
1. 일반적 개념	111
2. 연령주의의 구성요소	120
4. 제도(nomologique)를 통해서 본 연령주의	129
제2절 영역별 연령주의	133
1. 연령주의와 사회적 표상(représentaions sociales)	133
2. 연령주의와 노동시장	135
제3절 프랑스 연령주의 척도 및 평가	147
1. 프랑스에서 연령주의 연구	147
2. 프랑스 연령주의 척도	148
제4절 소결	152
참고문헌	155
 제5장 결론	158

표 목 차

[표 1-1] 연령주의 척도개발 연구단계	3
[표 2-1]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6
[표 2-2] 부정적/긍정적 연령주의	13
[표 2-3] 생물학적 노화	18
[표 2-4] 해외 관련척도	27
[표 2-5] 우리나라의 연령주의 척도	39
[표 2-6] 우리나라의 의미문화척도	40
[표 2-7] 손희정(2009)의 노화관련지식문항	42
[표 2-8] 우리나라의 노화사실인지척도	42
[표 3-1] 2000년대 일본의 법제도 및 시책에서 나타난 고령자관	56
[표 3-2] Burtler(1975)가 제시한 고령자에 대한 편견-6가지의 비현실적인 신화 ..	63
[표 3-3] Palmore(1990)가 제시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64
[표 3-4] 일본 후생백서(1997)에서 제시한 6가지 '노인신화'	65
[표 3-5] 일본판(수정판) FAQ 척도	79
[표 3-6] 일본판 FAQ를 사용한 에이지즘 조사연구 및 결과	81
[표 3-7] 일본어판 FSA척도(단축판)	85
[표 3-8] 내각부 「연령·나이듦의 사고방식에 대한 의식조사」(2003)조사항목 ..	89
[표 3-9] 일본 내각부 [공생사회 지표]-공생도 지표, 고령자 분야만 발췌 ..	94
[표 3-10] [공생도], [고령자와의 공생도] 결과	96
[표 3-11]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지표	101
[표 3-12]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실태 결과	102
[표 4-1] 노인의 연령 기준	112
[표 4-2] 50세 이상이 불리기 원하는 호칭과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호칭 비교	114
[표 4-3] 연령층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고정관념의 수량화(1994년)	125
[표 4-4] 2015년 프랑스 기관별 이의 신청된 주요 차별 이유 분포	128
[표 4-5] 나이에 따른 개인의 삶의 수준 변화 추이 1996-2014년	137
[표 4-6] 2000년 젊은이와 노인 지원자의 채용 이유	140

[표 4-7] 프랑스 고용시장에서의 주요 차별 기준	142
[표 4-8] 시니어는 몇 세부터인가?:	145
[표 4-9] 시니어지원자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가?	145
[표 4-10] 시니어채용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146
[표 4-11] FSA-R과 FSA-14	148
[표 4-12] 급내상관관계수(ICCs) Ageism(ESS4 2008) Module items of ESS	150
[표 4-13] 노인의 스스로 인간성 상실(Auto-deshumanisation) 관련 적도	151

그 림 목 차

[그림 3-1]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장래추계	51
[그림 4-1] 프랑스인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호칭에 따른 연령	114
[그림 4-2] 연령에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호칭에 따른 연령	115
[그림 4-3] 미디어에서 50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16
[그림 4-4] 2015년 연령에 따른 여가로 인터넷 활용	119
[그림 4-5] 2013년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 수준	120
[그림 4-6] 2013년 연령에 따른 개인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	121
[그림 4-7] 2013년 연령에 따른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수준	122
[그림 4-8] Fiedler의 사회적 정보 취급 과정	124
[그림 4-9] 유럽국가들의 연령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사	126
[그림 4-10] 유럽국가들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조사: 심각한 문제/전혀 없다	127
[그림 4-11] 연령에 따른 은퇴자 비율	138
[그림 4-12] 2015년 연령에 따른 교육 수준	139
[그림 4-13] 교육 수준에 따른 실업률 비교(1982-2012)	140
[그림 4-14] 1975-2014년 연령에 따른 고용률 변화 추이	142
[그림 4-15] 나이에 따른 직업 불안정성 변화	143
[그림 4-16] 1975년도 이후 나이에 따른 실업률 변화 추이	144

제1장 서론

지은정

우리나라에서 연령주의라는 표현은 낯설고 어색한 생경한 단어에 가깝다. 연령차별이라고 해야 더 많은 이들이 알지도 모른다. 학술적으로도 연령주의보다는 연령차별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해외에서는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의 초대소장이었던 Robert Butler가 연령주의를 제안한 이후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과는(Sagreant, 2011)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연구가 시작되었고, 사회적 이슈였던 경우도 별로 없다. 물론 2000년대 초중반에도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 이미지, 노화사실인지척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령주의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연령주의는 우리 사회의 3번째 이즘(ism)으로(Burtler, 1995) 인종주의(racism)나 성차별주의(sexism)보다 더 만연되어 있다(Banaji, 1999; Rupp et al., 2012 재인용). 물론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노인을 송배하거나 존경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Levy and Langer, 1994), 이런 경향은 한국이 가장 강하고 중국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et al., 1997; Nelson, 2016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에 입각한 효의 사상이 자리하여 연령주의가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나이 들(aging)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노령 인구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Yun and Lachman, 2006; 정진웅, 2014 재인용). Jin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김지연 외, 2012 재인용) 김은실(2001)도 연령주의를 일

상의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율하는 “고도의 조직화된 조용한 폭력”이라고 표현하였다(김은실, 2001; 정진웅, 2014 재인용). 산업화가 될수록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이 강조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인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이 증가하고 있지만,¹⁾ 우리나라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과는 달리, 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분명하고(조용만, 2004)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노인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존재하기(Nelson, 2005; 정진웅, 2014 재인용)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연령주의를 노인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연령차별은 어떤 연령집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열등하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이 같은 신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의해 규정되어진다는(박종우, 1999)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는 노인이 처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노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구조화한다. 노인은 일할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써, 일을 해도 생산성이 낮은 인구집단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내재화시키게 된다. 60세 이상은 일을 하고자 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일을 해도 저임금·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은 현실도 이를 말해준다. 60세 이상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비·청소가 적합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지은정, 2016) 예로 들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분리시키고 차별하는지를 측정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측정하고자 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 연령주의나 연령차별,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Palmore의 연령주의 척도나 FSA(Faraboni Scale of Ageism)를 번안하여 사용하거나, Sanders et al.(1984)의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혹은 Palmore(1977; 1988)의 FAQ-I 을 수정한 노화사실인지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연령주의(연령차별)에 대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단일 문항을 사용하고,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태도로 인한 심리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연령주의에 대한 관심도 적었지만, 연령주의 척도개발은 이제 시작단계로써 우리 사회 고령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차별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령주의 척도개발에 대한

1) “노인인구의 증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줄일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 동의한 것도(김희삼 외, 2016) 이를 말해준다.

노력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사회에 적합한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연구는 아래와 같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2016년)는 제한된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7단계 가운데 1단계를 추진하고 익년에 2~7단계를 실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연령주의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단계로써 국내외에서 수행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척도·지표를 검토하였다. 국외 사례는 프랑스,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지만, 연령주의 척도를 비롯하여 노인과 관련된 많은 척도들이 개발되었고,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호칭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며 미국은 1960년대 Burtler이 연령주의 개념을 고안하여 Palmore가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여 발전시켜서 선정하였다.

[표 1-1] 연령주의 척도개발 연구단계

구분	연구내용	수행시기	보고서
1단계	국내외 문헌검토: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16년 말	I 편
2단계	척도 개발		
3단계	전문가 조사→지표보완		
4단계	사전조사→지표보완		
5단계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	2017년	II 편
6단계	척도의 신뢰도·타당도 분석		
7단계	연령주의 실태분석		

제2장

연령주의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은정

제1절 연령주의 개념 및 연령의 의미

1. 연령주의의 개념 및 구성요소

연령주의는²⁾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특정 범주, 특히 연령을 이유로 편견(prejudice)을 갖거나, 사람에 대해 부당하게 처우, 차별(discrimin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Palmore, 2001).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가 사람의 생물학적 성이나 피부색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연령에 따라 이들에 대해 편견을 체계화하고 차별하는 것이다(Burtler and Lewis, 1973; 박종우, 1999 재인용). 이와 같은 연령주의는 인종주의(racism), 성차별주의(sexism)에 이어 우리 사회의 3번째 이즘(ism)로 써(Burtler, 1995; Palmore, 2001 재인용), Burtler(1995)는 가장 잔인한 거부(rejection)라고도 표현하였다(Sagreant, 2011 재인용).

연령주의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2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예를 들면, McMullin and Marshall(2001)

2) 연령주의는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의 초대소장이었던 Robert Burtler가 제안한 이후 사회적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Sagreant, 2011).

은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를 부정적 고정관념, 믿음, 태도로 대별되는 이데올로기(①)와 특정한 그룹을 역연령(曆年齡. 출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상의 나이) 기준에 의해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차별(②)의 2가지로 구분하였다(김욱, 2002). 그러나 Nelson(2005)는 연령주의를 감정, 인식, 행동, 정책의 4가지 구성요소로 보았다. 감정적인 요소는 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고, 인식요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행동요소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차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나 기관의 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차별 역시 연령차별주의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Wilkinson and Ferraro, 2002; 김주현, 2012 재인용).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령주의 구성요소는 Palmore(1999)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 태도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Palmore(1999)의 연령주의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정관념(stereotype)과 편견(prejudice)

고정관념은 잘못되거나 편향된 이미지이고(Fiske and Neuberg, 1990; Heyma et al., 2014 재인용), 편견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Palmore, 1999).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대부분 개인의 경험이나 입증되지 않은 증거에 의존하며, 긍정적인 뜻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표 2-1〕 참고). 노인은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거나 문제가 있는 부담스러운 집단으로만 간주하거나(Clark et al., 2009; 우국희 외, 2012 재인용), 노년기를 의존, 수동성, 질병, 죽음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혹은 노인들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제약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노인들은 신기술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편견은 사람들의 태도 속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미지 속에 반영되어 나타나며(우국희 외, 2012) 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조엔 T. 외, 2016).

그러나 노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고정관념과는 달리 노인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행동이 느린 점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전체적인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우국희 외, 2012) 강조하고 있다.

6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표 2-1]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구분	예시
신체기능	노인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
	노인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아이에게 하듯 큰 소리로, 천천히, 과정을 섹어 강조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노인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노인들은 낙상을 지나치게 걱정한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
	노인은 성에 관심이 없다
	나이든 여자는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혼자 늙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인지기능	나이가 들면 지능이 떨어진다
	노인들은 신기술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나이가 들면 전망증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 혼명해진다
	노인들은 잘 속으므로 사기군의 먹잇감이 되기 쉽상이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노인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노인들은 인색하다
	노인들은 불평이 많다
성격·자아	노인들은 건강염려증 환자다
	노인들은 보살핌 받기를 원하지만 책임을 많이 지는 일은 싫어한다
	노인들은 내성적이라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를 더 좋아한다
	노인들은 꿈과 희망을 버린지 오래다
	노인들은 자기만의 방식에 갇혀 버린 사람들이다
	노인의 대부분은 우울하다
	노인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있다
	노인들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
생활환경	노인들은 혼자 살기보다 자녀, 손주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
	노인들은 항상 손주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형제자매 관계는 평생 변하지 않는다
	고령 직장인은 젊은 직장인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퇴직하면 우울증에 걸리므로 노인들은 끌가지 버티다가 퇴직을 한다
	퇴직한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많다
	노인들은 퇴직 후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다
죽음	청소년과 청년보다 노인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
	노년층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

자료) 유경 외(204), 조앤 T. 외(2016)의 내용을 편집함

2) 태도(attitude)

태도는 개인이 가지는 느낌, 신념, 행동, 지각, 가치관으로써(박경란, 2001; 고영희, 2002; 한정란, 2004 재인용)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자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집단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무시하거나 배제 혹은 기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김주현, 2015). 노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나 노년기는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라는 부정적 태도 혹은 노년기야말로 황금기라는 긍정적 태도를 들 수 있다(Palmore, 1999). 혹은 고령자에 대한 경멸적 태도, 회피적 태도 혹은 아랫사람을 다루는 듯한 태도, 매우 단순화하고 천천히 말하는 태도, 신체적·재정적 소홀·방임, 고령자는 원하지 않지만 주거를 분리해야 한다는 태도 등이 해당된다(Hummert and Shaner, 1994; Kite et al., 2005; Palmore, 2004; Levy and Macdonald, 2016).

이 가운데 노인과의 부적절한 의사소통방식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첫째, 과도한 순응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대할 때 더 크게, 더 천천히 말하고 톤을 과장하고 하이톤으로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노인과 말하는 방식으로 이는 노인들이 청력에 문제가 있고 지능이 떨어지며 인지기능이 느리다는 고정관념에 기초해 있다. 개인별 인지상태나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게 오버하는 대화방식은 노인이 표현하는 진지한 사고나 관심, 감정을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아이를 대하듯 하는 방식은 종종 얘기에게 말하듯이 노인에게 말하는 언어스타일이다. 비록 노인들이 친밀감으로 받아들여기도 하지만, 이런 대화방식 또한 노인의 인지적 능력에 결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될 수 있다(Nelson, 2005; 우국희 외, 2012).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주된 원인은 연령증가로 인한 필연적 변화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는, 나이가 들면 으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손희정, 2009).

3) 차별(discrimination)

차별은 단순히 상황을 서술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간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다. 서술적으로 쓰인 차별은 특정 존재 혹은 부재를 근거로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차별로 보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Devorah, 2007). ILO도 다음의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첫째, 특정 직업(job)에 고유한 자격요건(inherent requirements)의 경우³⁾ 둘째, 국가안보관련 조치 예컨대 테러행위자, 국가전복을 기도한 자 등에 대해서는

3)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

안보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뒷째, 국제노동기준 상의 특별한 보호·지원조치 뒷째, 적극적 평등보호 내지 차별시정조치가 그것이다(조용만, 2004). 그러나 버스나 기차에서 흑인과 백인 승객의 좌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종을 근거로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써(Devorah, 2007),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연령차별은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기초하여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집단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다⁴⁾. 의료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의료적 처치를 거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Palmore, 1999). 의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 병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며(Levenson, 1981) 의사들이 노인들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노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여겨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Bowling, 2007; North et al., 2012; 김지연 외, 2012 재인용). 혹은 노인충을 무시·배제하고 그들의 욕구를 덜 반영하는 행위, 노인충에 대해 보다 방어적이고 동정적인 행위, 노인에게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으로 해를 주는 것(Pasupathi and Lockenhoff; 원영희, 2005),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해당된다. 한편, 원영희(2005)는 노인차별을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당한 적이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하는 일이나 의견을 못미더워 한 적이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적이 있다’와 같은 무시경험(①),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 한 적이 있다’, ‘카페, 식당 등에 있을 때 내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간 적이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버스나 택시를 타려고 할 때, 내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다’와 같은 기피경험(②), ‘대중매체에서 노인이 무시되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극장 등 문화시설 분위기가 젊은이들 위주여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와 같은 소외경험(③)이라고 하였다.

한편, 중립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차별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특

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은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조용만, 2004).

4) 한편, 과거에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혼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연령주의를 연령차별과 구분하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연령주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존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고 연령차별은 고용 상에서의 부정적이고 불평등한 처우 등 노인을 직간접적으로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행동을 기술하는 용어라는 것이다(Carmichael et al., 2006; Clark et al., 2009; 김주현, 2015). 이 가운데 Carmichael et al.(2006)은 연령차별을 고용에서의 차별로 국한시켜 이해한 반면, Clartk et al.은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전 영역의 직접적·간접적 차별행동으로 보았다. 학자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 인지적 요소, 편견은 부정적 감정 내지 평가적 요소이고, 차별은 행동적 요소로써(Freeman et al.m 1981; 원영희, 2003; 우국희 외, 2012 재인용) 연령차별은 연령주의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정 연령집단의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과적 불이익을 보게 하는 간접적 차별도 있다. 도시 계획가가 노인의 이동욕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병원을 폐쇄한 것은 직접적으로 노인들을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건강보호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간접적 차별의 결과는 직접적 차별의 결과만큼이나 심각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연령주의는 단순히 연대기적 연령을 바탕으로 한 부당한 처우에 그치지 않는다(박종우, 1999). 편견이나 억압의 한 형태로써 그 억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릇된 태도나 관점을 고착화시킨다(김욱, 2002). 심지어 어린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화를 초래하여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답습하게 된다(McGuire, 1993; 양정남 외, 2010 재인용). 또한 노인은 젊은 사람들과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부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면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은 불만과 적개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Rupp et al., 2005; 김지연 외, 2012). 또한 연령주의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에 대해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시켜서,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된다(박종우,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차별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구조를 통해 재생산된다(McGuire et al., 2008). 피해당사자인 노인도 차별구조를 당연시하게 되어(김주현, 2009; 양정남 외, 2010 재인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2. 연령주의의 유형

1) 고령자 연령주의/청년 연령주의

연령주의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는 다르게 고정된 피해 집단이 없고 누구나 차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Burtler, 1969). 즉, 연령주의는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연령계층이 연령주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독일의 '독일연방차별금지기구(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 이하 ADS)'에 따르면 연령차별은 '낮은 연령에 의한 차별'과 '높은 연령에 의한 차별'로 구분된다(송영신, 2016). Hassell and Perrewè(1993), Duncan and Loretto(2004), Gee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청년 근로자는 너무 어리다는 취급을 받거나 경험이 미숙해서 작업장에서 부정적인 처우를 받고 연령에 근거하여 승진기회가 제한된다고 느끼고 있었다(Macdonald and

Levy, 2016 재인용). Marchiondo et al.(2016)의 연구결과 역시 젊은 근로자 역시 고령근로자처럼 연령차별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차별주의는 노인차별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연령보다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가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평등대우일반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에 근거하여 실시된 ‘차별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높은 연령에 의한 차별’이 9.9%로 ‘낮은 연령에 의한 차별’ 경험(5.8%)에 비해 4.1%p보다 높고, 6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높은 연령에 의한 차별경험 비율이 15.3%로 높아진다. Rothermund and Temming(2010)의 연구에서도 차별대우의 주된 대상은 노인으로 나타났다(송영신, 2016 재인용). ageism보다 old-ageism이라는 단어가 보다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한 것도(Rix, 2006; 우국희 외, 2012 재인용) 이런 연유일 것이다.

또한 연령주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억압을 가하는 역할에서 억압을 당하는 역할로 바뀌거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Neugarten and Moore, 1968; Butler, 1969; Palmore, 1990; 김욱, 2002; 2003 재인용). 나이 어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노인은 죽을 때까지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인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다른 연령집단에 대한 차별과 질적으로 다르다(Iversen et al., 2009; 김지연 외, 2012 재인용). Nelson(2005)도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가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연령차별에 대한 연구는 고령자에 집중되었다고 하였다(Macdonald and Levy, 2016 재인용). 본 연구도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 호의적 연령주의/적대적 연령주의

연령주의는 고령자에 호의적인 연령주의(ageism for the aged)와 적대적인 연령주의 (ageism against the aged)로 볼 수 있다(박종우, 1999). 그리고 사회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역할과 지위 · 대우가 변화되면서 노년층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억압과 편견, 그리고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김욱, 2002).

우리나라는 효를 바탕으로 한 연령주의적 전통가족에 기반한 정당화된 권력관계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는 가족내외로부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노인은 단지 연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소요여부에 관계없이 연소자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되며, 이와 같은 관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 이유는 가족 내에서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단순한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유형화된 제도적 관계였기 때문이다.

전통적 가족을 뒷받침하는 연령주의는 연장자의 권위와 존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제도적 규범이 이를 뒷받침하였고(authority) 또 다른 한편으로 연소자에 대한 지배(dominance)를 뒷받침 할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과 수단이 모두 연장자들에게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소자들에게는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배제되었다. 연장자는 연소자에게 개별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규범이 종적인 유대를 유지시켜 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연령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전통가족은 ‘노인들을 경시하는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가 아니라, ‘연장자에게 호의적인 연령주의(ageism for the aged)’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단시간에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문화끼리 부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평등적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신분질서를 미풍양속이라 하여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서(최재석, 1964),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 내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은 가족 밖의 사회규범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사회의 공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계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인간관계를 크게 잠식하기 시작하였다(박희, 1997). 전통사회가 시장질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도시산업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신분관계는 더 이상 그 권위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연장자인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제공됨에 따라 연장자들에게 더 이상 예속될 필요 없이 그들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자와의 관계에서 지위의 전도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연장자들에게 불리한 연령주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가족 내의 전통적 윤리는 더 이상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이 뒷받침 없는 노인들의 권위는 더 이상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였고, 노인들은 권위의 상실과 더불어 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자원의 접근마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자녀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얻게 되는 새로운 신분적 종속관계가 유형화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의존적 신분계층(socially structured dependency)으로 전환된 셈이다(박종우, 1999).

비교적 관점에서 World Values Survey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적대적인 연령주의 경향이 강하다. “70세 이상 노인은 친근하게 보인다”에 대해 우리나라(2.2) 51개 국 가운데 50위로(2.8점, 5점 만점) 노인의 우호성에 대한 인식이 최하위권이었다.

“70세 이상 노인은 유능해 보인다”의 질문에 대해서도 51개국(평균 2.5) 중 51위(1.7)로 노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최하위였고, 특히 29세 이하는 70세 이상의 능력에 대해 1.54점을 주어 가장 낮았다⁵⁾. 또한 “70세 이상 노인을 존경한다”에 대해서는 51개국 중 (평균 3.0) 49위(2.4)로 노인에 대한 존경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40대 이하가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낮게 나타났다. “고령층이 요즘 존경받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81.8%로 51개국(평균 58.9%) 중 루마니아(85.3%)에 이어 2번째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김희삼 외, 2016).

3) 긍정적 연령주의/부정적 연령주의

연령주의라고 하면 부정적인(negative) 측면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쓸모없는 늙은이, 구식사람 등), 긍정적인(positive) 연령주의도 있다(〔표 2-2〕 참고). 노인은 친절하다, 노인은 경험이 많아서 지혜롭다. 젊은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노인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노화를 멈출 수 있다, 노인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행복하다, 노인은 부유하다와 같은 고정관념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노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사회보장제 면제,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과 정책입안자, 행정가나 법률가의 우위를 차지하고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혜택, 가구주로서의 권한, 그리고 고령자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임대료 할인과 같은 주거혜택, 그리고 노인만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 의료혜택(medicaid 등)과 같은 긍정적인 차별대우도 있다(Palmore, 1999).

그러나 긍정적 연령주의 특히,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적 연령주의로 인해 청년들은 노인을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김주현, 2015). 노인 스스로도 노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대우로 인식하기도 하였다(우국희 외, 2012). 연령주의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을 고려한 기능적 연령을 무시한 채 역연령에만 근거하여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며 부정적 고정관념·편견을 강화하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있다.

5) 급속한 기술 및 사회의 변화는 노인세대가 가진 전통적 기술과 경험적 지식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능숙하고 최신 문물의 흡수가 빠른 젊은 층에서 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특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김희삼, 2016).

[표 2-2] 부정적/긍정적 연령주의

구분	부정적 연령주의		긍정적 연령주의	
고정 관념	질병(Illness)	노인은 병약하다	친절(Kindness)	노인은 친절하다(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무력(Impotency)	노인은 무력하고 성적 욕구가 없다	지혜(wisdom)	노인은 경험에 많아서 지혜롭다
	추함(Ugliness)	노인은 추하다(마녀같은 노파 등)	믿을 수 있음(Dependability)	젊은 사람보다 더 신뢰 할만하다
	정신적 능력감퇴(Mental decline)	노인은 정신적 능력이 쇠퇴한다(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자유(freedom)	노인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정신질환(Mental illness)	많은 노인들은 노망(senile) 걸렸고, 치료불가능하다	블로(eternal youth)	노화를 멈출 수 있다
	쓸모없음(Uselessness)	노인은 일할 수 없고, 일 하더라도 비생산적이다	정치적권력(Political power)	노인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고독(Isolation)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다	행복(happiness)	노인은 행복하다
차별	암울(Depression)	노인은 암울하다		
	빈곤(poverty)	노인은 가난하다	부유(Affluence)	노인은 부유하다
	고용(Employment)	노령으로 고용상 차별을 받는다(채용, 승진, 퇴직 등)	경제적(economic) 혜택	세금감면, 사회보장세 면제,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기관(Government Agencies)	프로그램 이용 및 질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고용과 훈련서비스 등 이용)	정치적(political) 혜택	정책입안자, 행정가나 법률가의 우위를 차지하고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족	가족(family)	학대, 방임,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가족(family)	노인은 가구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주거(housing)	다른 세대와 분리된 공간에 거주한다	주거(housing)	고령자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임대료 할

14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인혜택을 받는다
의료보호 (Health Care)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다	의료보호 (Health Care)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혜택을 받는다 (medicaid 등)
태도	노년기는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worst year)이다 등의 부정적 태도	노년기는 황금기(golden years)이다 등의 긍정적 태도	

자료) Palmore(1999)를 바탕으로 편집·작성함.

4) 제도적/개인적 연령주의

연령주의를 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도적인 연령주의는 서비스 대상이나 프로그램 참여의 상한연령이나, 고령자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분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이지 않다. 제도적 관행은 고령자가 의존적이고 신체적·정신적 역량이 감소한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 형성되지만, 고정관념이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기도 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Sagreant, 2011).

3. 노인 호명(呼名) 및 노인의 의미

1) 노인 호명

우리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범주를 필요로 한다(장애, 동성애, 노년 등). 그러나 모든 범주는 그 범주에 붙여진 이름이 고착되면,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만 강화시키기도 한다(정진웅, 2014). 이와 같은 범주를 가르는 대표적인 기준은 성, 인종, 장애, 연령이다.

따라서 연령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는 연령부터 정의되어야 한다. 연령주의는 그 사회의 문화적 힘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노인이며 노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그 사회가 규정하기(박종우, 1999) 때문이다. 또 한 연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편견과 억압의 형태로 구조화되었기(Glanda Law, 1995;

김주현, 2012 재인용) 때문에 연령주의에서 연령 혹은 노인을 구분하는 연령기준은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나이의 의미는 상당히 유동적이며, 노년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노년기에 대한 연령범주도 다르다(Levy and Macdonald, 2016). Giles and Reid(2005)은 나이는 사회적 해석(social construction)임을 강조한다. 사람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이 다르며, 청년, 중년, 노년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해외에서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50~75세로 보기도 하고(평균 60세), 45~80세(평균 67세)라고 본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반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에 속하는 노인은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Despotovic and Milosevic, 2007; Chrisler et al., 2016; Levy and Macdonald, 2016 재인용).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법적 기준도 없어서 60세와 65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⁶⁾, 그나마도 최근에는 노인을 구분하는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어(헤럴드경제, 2017.1.29.)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노인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노후인지연령도 연구에 따라 다르다. 국민노후 소득보장 폐널조사에 따르면, 노후시작시기를 평균 67.9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송현주 외, 2014), 전국노인실태조사에서는 평균 71.7세로 조사되었다(정경희 외, 2014).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에 해당하는 연령기준도 70~74세라는 응답이 5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5~69세가 28.1%이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2.7%로 조사되었다(정경희 외, 2014; 정경희, 2015; 지은정 외, 2015 재인용). 의학기술의 발달, 건강향상 등으로 역연령과 정신적·신체적 역량을 고려한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과거에 연령이 갖았던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노인의 의미

연령주의에서 노인의 의미 혹은 노인 호명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이미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되어⁷⁾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정진웅, 2014). 이로

6) 노인복지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이며(보건복지부, 2013),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도 60세 이상의 노인이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은 60세였지만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33년에는 만 65세가 될 예정이다(지은정 외, 2015).

7) 타자는 혼히 주체가 자신의 속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특성이 투영되는 범주 즉 '은폐된 사진(underground self)'이다. 가령 서양은 스스로의 속성 중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속성을 동양에 투사함으로써 동양을 비이성적이고 불가해한 존재로 과거에 고착되어 합리성의 영역

인해 연령주의하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그것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누구를 부를 때 노인이라는 용어를 호칭으로 쓰지 않고, 지칭 어로써도 그 사용이 조심스러워졌다. 노인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용어는 이제 ‘별 볼일 없어진’ 익명의 노년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전 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 같은 유력인사는 70이 넘어도 노인이라고 지칭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정진웅, 2006; 정희진, 2005). 이들은 자신들이 이룬 사회적 성취로 인해 노인이라는 익명의 범주에 묻히지 않으며 은퇴를 했더라도 과거의 직함이었던 회장, 사장, 의원 등으로 지칭되고 회장님, 사장님, 의원님으로 호칭된다.

오늘날 노인이라는 지칭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생물학적 현상을 지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나이와 결합되어 있는 ‘별 볼일 없는’ 사회적 위상을 지시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이처럼 노인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 노인은 ‘소외된 노인’이나 ‘힘없는 노인’처럼 부정적 수식어들과 더 어울리는 지칭어가 되고 ‘노인 사장’, ‘노인 국회의원’과 같은 결합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다가오게 된다. ‘청년의 열정’은 자연스러워도 ‘노인의 열정’은 부자연스럽게 느끼지고(정진웅, 2011), 노년의 궁정적 측면에 주목할 때는 “노년” 혹은 “실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정진웅, 2014) 같은 맥락일 것이다.

또한 나이라는 특성은 개별적 주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다른 요인들에 우선하는 특성으로 인식되기 쉬운 것이다. 마치 길거리에서 장애를 지닌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보다 장애라는 타자성이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정진웅, 2014). 그러나 나이란 다양한 변인들 중 하나일 따름이지, 단독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신분차별이나 젠더불평등 등의 다른 차별적 기제들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연령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의 삶에 작동하는 연령주의는 종묘공원 노년 남성들의 삶에 작동하는 연령주의가 다른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Neugarten(1968)은 나이는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 ‘텅빈 변수(empty variable)’라고 하였고(정진웅, 2014 재인용), Kooji and Zacher(2016)도 연령만 사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Levy and Macdonald, 2016). 따라서 연령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이라는 호명과 노인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연령과 노인이라는 범주로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면, 연령주의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 진입하지 못한 존재로 형상화한다(Said, 1979). 우리사회도 노인이라는 범주는 현대 한국사회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싶은 속성들을 투사하는 대표적 문화적 범주가 되었다(정진웅, 2014).

제2절 영역별 연령주의

1. 노화

사전적 의미로 노화를 정의하면, “세포와 신체조직 전 기관에 걸쳐 일어나는 기능적, 구조적, 생화학적 변화로 체내의 항상성(homeostasis)이 붕괴되어 궁극적으로 죽음에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오상진, 2015). 그러나 노화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것으로부터(이호선, 2006; 김주현, 2015 재인용), 나아니 듦은 노년기 생활세계의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 등을 통한 경험에 의해서 생물적 변화와 심리사회적 변화가 변수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주현, 2015). 따라서 생물학적 노화 외에 사회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성재·장인협, 2010). 이에 본 절에서는 노화를 생물학적 노화, 사회적 노화, 심리적 노화로 검토하였다.

1) 생물학적 노화(biological aging)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 출생하고 성장·발달하며 결국은 죽음으로 그 활동을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은 생물학적 또는 생물·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생물학적 노화과정이 재생 과정을 능가하면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나서 결국은 생명이 종식된다. 생물학적 노화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말한다. 생물학적 노화는 노화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고 관찰 가능한 과정이기 때문에 노화라고 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떠올리게 된다(최성재·장인협, 2010; 최성재 외, 2016).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들은 [표 2-3] 과 같다⁸⁾.

8) 생물학적 노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체의 면역체계가 약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그 시기 및 진행 속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변화다. 반면에 폐암과 같은 질병은 어느 특정 개인에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노화현상이 될 수는 없다.

둘째, 노화의 주된 원인이 신체 내적인 데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면 신체적 노화가 촉진되지만 이것은 신체 외적인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생물학적 노화현상

생물학적 노화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개인에게도 신체적 기관 또는 기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역연령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정도의 노화현상을 보이지는 않으며 개인 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시력이나 청력의 노화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청력은 상당히 약해지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최성재 · 장인협, 2010; 최성재 외, 2016).

[표 2-3] 생물학적 노화

구분	기능의 변화
감각기능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통각의 기능감퇴
지각 기능	지각 과정의 속도 저하
심리근육운동기능	심리근육운동이 느려짐(반응속도 저하)
정신기능	지능, 학습능력, 기억력,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변화
신체기능	근육조직의 감소
	골밀도의 감소
	단백질 생성의 감소
	조직기능과 순환기계 기능의 감퇴
	면역기능의 저하
	뇌기능의 저하
	내분비 기능의 감퇴
	소화흡수율의 저하
	영양소 섭취의 감소
	항상성의 저하
	노화에 다른 세포의 생화학적 변화

주) 심리근육운동은 감각기관에 의하여 투입된 정보가 필요한 근육운동으로 종결되어 나타나는 기능임

자료) 최성재 · 장인협(2010), 오상진(2015)을 바탕으로 작성함.

2) 사회적 노화(social aging)

사회적 노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 이웃,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집단 속에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지위

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명이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런 변화로 신체적 기능이 약해져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즉, 기능의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 또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갑자기 짧은 시간에 기능 상실이 일어나는 것은 노화라 할 수 없다(Strehler, 1977; 최성재 외, 2016 재인용).

의 변화와 상실에 따라 역할의 변화와 상실이 일어나고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는 것 등을 말한다.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 존재이며 또한 무엇을 감지하고, 판단하고 배우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노화도 나타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바로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는 말이다(최성재 외, 2016).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어떤 사회적 노화가 진행되는가? 인간은 생애단계에 따라 역할을 습득하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인식하는데(김주현, 2015), 성인초기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첨가되었다면, 성인중기에는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인후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역할들을 상실하거나 역할수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다. 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으로부터 은퇴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면 가까운 친구 역시 멀리 이사를 가거나 사망함으로써 친구관계망을 상실한다. 그렇다고 노인들이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 초기나 중기 만큼 많은 의무나 기대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장휘숙, 2012).

전통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고령자집단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존재감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무시와 배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사회생활에서 은퇴 등 경제적 활동에서 물러남으로써 자신의 역할이 변했음을 느끼고 가족생활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상실, 부모·조부모의 역할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바뀌었음을 느낀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주체에서 물러남과 함께 가족생활에서도 역할 변화를 급격하게 겪는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부적응과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자녀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옷을 입거나 일상생활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집안의 대소사나 자신의 거처를 결정하는 문제 등을 자녀들의 결정에 따라야 해서 역할변화를 겪고 있다(김주현, 2015).

3) 심리적 노화(psychological aging)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생존하고 변화하고 사멸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환경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감지하고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고 목적 있는 행동을 하는 심리적 존재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리적으로도 변화를 겪는다(최성재 외, 2016).

그러나 고령자는 나이 들에 직면하여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는 나이 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노화를

자각하게 되는 경험은 고령자들에게는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님을 토로하였다(김주현, 2015).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신체적·사회적 노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다만, 노년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주로 노화로 인한 인지적, 신체적 능력의 감퇴 혹은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적 노화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관심을 갖더라도 노인은 우울하고 고독하다. 소심해진다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서도 정적인 경험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고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줄어들기도 하였다(유경, 2007; Magai and Halpern, 2001; 유경 외, 2014 재인용). 또한 노화로 인한 우울감, 고독감, 활력 감소는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

연령주의는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지만(Palmore, 1999) 연령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영역은 노동시장이다(ADS, 2016; 송영신, 2016 재인용). 고령자는 생산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서 연령이 높다고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험적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노화(고령화)와 생산성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르다(지은정,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는 진입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채용에서 퇴직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ILO의 기준으로 보면, ①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②개인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훈련 또는 고용에의 접근, ③각각의 자질, 경험, 능력 및 근면성에 따른 승진, ④고용기간(tenure of employment)의 보장, ⑤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⑥근로조건(근로시간, 휴식, 연차유급휴가, 직업안전·건강 등), ⑦정부부문에서의 고용, ⑧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⑨노사단체에의 가입·활동 등 근로관계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며(ILO 제111호 권고 및 제111호 권고 제2조⁹⁾), 유럽연합(EU)의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78호)를 기준으로 보면, ①선발기준·채용조건을 포함한 고용 접근(access to employment) ②실무적 현장경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 및 모든 수준의 직

9) ILO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촉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제162호, 1980년)가 있다(조용만, 2004).

업지도와 직업훈련, ③해고와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 및 근로조건 ④노사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및 노사단체가 제공하는 급부로써(제3조 제1항) 채용부터 고용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조용만, 2004).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일을 통해 당당함을 유지하며, 남에게 특히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음을 강조한다. 노년기에 소득이 있는 일자리는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것, 자기 인생을 끝까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자존감을 의미하는데(우국희 외, 2012)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는 쉽지 않다. 독일의 ‘연방차별금지기구’는 연령차별의 문제가 부각되는 노동분야에 주목하고 연방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이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노령친화기업들을 선정하여 ‘Good Practice Award’를 시상한 것도(ADS, 2016; 송영신, 2016 재인용) 이런 연유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차별’에 관한 인식이 전무하거나, ‘연령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직접적 불이익(금전적 손실, 처벌 등)을 알지 못하고, 해당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령 차별을 당해도 연령차별로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문제의식을 갖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구제의 실효성이 낮아서 쉽게 대응을 포기하였다(박윤섭, 2016). 연령차별금지법은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직·채용 및 임금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차별은 비교대상이 되는 두 집단이 교육이나 경력 등에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전혀 고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직업에 특정한 집단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임금차별은 동일학력, 동일경력,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정책이나 임금관행상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노동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유동철, 2005).

노인은 완고하고 생산성이 낮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꺼려하고 덜 창의적이고 교육시키기 힘들다는 편견이 팽배해서(Shore and Goldberg, 2004) 채용이나 고용유지에서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Gordon and Arvey, 2004; Ng and Feldman, 2009; 김지연 외, 2012 재인용). 우리나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들은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 능력이나 경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치부되어 차별받았음을 토로한다(김주현, 2015).

또한 연령차별금지법이 있지만, 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드러내놓고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연령을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①체력적 요인, ②기준 구성원들과의 인화적(연공서열 등) 요소, ③연령에 따른 업무경력 없음 등을 이유로 하거나 ④응시자의 연령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이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인 ‘연령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용주 가운데는 일정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남성은 만 30세, 여성은 만 27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정연령 이상의 구직자에게는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연령을 응시 제한요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실제 채용되는 사람들이 특정 출생연도의 군을 형성하거나, 대학졸업 당해 연도 해당자들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역시 연령차별의 증후로 볼 수 있다(박윤섭, 2016). 다른 연구에서도 55세 이후 퇴직한 이후 구직과정에서 대부분은 나이 제한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기준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를 따지지 않으나, 재취업과정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나이가 장애가 되고 있었으며 자격증이나 노인이 가진 숙련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연령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우국희 외, 2012).

한편,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차별이 발생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취업알선사업을 통해 대규모 빌딩 경비원으로 취업한 A고령자(만69세)의 경우,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근로하는 타 연령대(40대 및 50대) 근로자와 급여수준에서 차별받고 있음을 상담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근로자는 본인과 타 근로자와의 급여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있을 것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구인처의 경우, 채용단계에서 고령 근로자가 적용받을 급여를 명시하였고 당사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차이는 연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차별로만 보기 어렵고, 직무, 근로조건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차이와 법적 차별을 구분하기 어렵다(박윤섭,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단계와 임금에서의 차별은 명백한 차별이다. 유럽연합(EU)도 고용접근과 관련한 평등대우는 모든 형태의 고용 내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막는 일체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조용만, 2004) 우리나라도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동료·상사와의 관계

노인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렵지만, 노동현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노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경험과 모욕적인 취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서러워하며 불만을 분출하였다(김주현, 2015). 부당한 처우로써 첫째,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차별적 표현을 들고 있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비하조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태도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노인들은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만 쉬어라~라는 것 또는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그래서 무시하는 것, 사람대접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였다. 그래서 일에서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심지어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나이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욕하거나 반말과 같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도 거론된다. 노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고 반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거칠게 욕을 해서 노인들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있었다.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노인의 인력과 자존감을 봉괴시키는데 자행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관심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노인들이 하는 일이나 업무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해주지 않고 노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감을 그냥 주고 관심을 꺼버리는 형태가 많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값싼 싸구려” 취급당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우국희 외, 2012).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도 “여러 연령층보다 젊은 층을 고용한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데 찬성비율은 우리나라가 67.2%로, 51개 국 평균(41.1%)보다 훨씬 높다. 세대 공존 사업장보다 청년층 고용 사업장의 실적이 좋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서(김희삼 외, 2016)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네 번째, 배제하고 끼워주지 않는 형태도 있다. 회사 내에서 노인들은 중요한 결정에 참여를 시키지 않거나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같은 동료임에도 함께 어울리지 않아서 회사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서 차별로 느끼고 있었다(우국희 외, 2012).

3) 교육·직업훈련, 승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만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 진입 후에도 차별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교육·경력 등에 차이가 없고 동일직종에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승진이나 배치, 훈련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승진

이나 배치과정은 임금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영향이 존재되어 나타난다. 승진이 잘되고 좋은 직무에 배치되면 임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유동철, 2005).

그러나 채용·해고 외에도 승진, 근로조건, 교육훈련 기회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이인재 외, 2007).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연령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정 연령을 초과하면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IT관련 교육, 해외연수 기회 등). EU의 경우 고용상 평등대우는 직업훈련에서의 평등대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에의 접근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승진에 관한 평등대우는 캐리어구조 내에서의 승진이 해당 직업에 관한 자격·능력,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험 및 기타의 객관적 기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조용만, 2004). 물론 연령을 이유로 승진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자 당사자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성과, 업무태도,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의료원의 경우 관리자급인 수간호사를 평간호사로 전보하였다. ○○의료원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평점 등이 낮음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인권위 등 조사에서 고연령인 근로자를 해당 직위에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차별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박윤섭, 2016).

4) 직업안정성 및 퇴직

강제퇴직은 각 사람의 능력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강제되는 가장 대표적인 연령차별이다. 64세 근로자가 65세가 되었다고 갑자기 근로능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퇴직시키는 것이므로 명백한 연령차별이다(Palmore, 1999). 고용된 경비원이 일정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사례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겸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력, 체력 등을 이유로 만 52세 정년을 설정하였으나, 업무상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도 만 60세임을 이유로 들어 인권위에서 '차별'시정권고 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일할 능력이나 의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직급별/직종별 정년제 등에 의해 반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박윤섭, 2016).

경험적 연구에서도 채용과정에서 고령자가 선발될 가능성은 33.7%, 승진·승급에서 고령자가 선발될 확률은 45.4%, 교육훈련기회의 제공과정에서 고연령자가 받을 가능성은 46.3%, 동일한 조건하에서 50세 이상이 해고(권고사직)될 가능성은 59.5%로 나타났

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령자가 채용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권고사직·해고될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차별요건과 비교하더라도 고령자가 채용될 가능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권고사직·해고될 가능성은 가장 높은 셈이다(이인재 외, 2007). ILO도 근로자가 퇴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조용만, 2004) 우리나라도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령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국내외 연령주의 척도 및 평가

연령주의는 1969년 Robert Butler(1969)에 의해 처음 명명되고 소개되었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노인에 대한 태도나 편견, 노인 이미지(의미분화척도), 노화사실인지정도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Benson, 1982; Gillis, 1973; Calnan and Hanron, 1970; Campbell, 1971; Miller and Dodder, 1980; Tuckman and Lorge, 1953; 김은일, 1982; 김매자, 1978; 박경란 · 이영숙, 2001; 송미순, 1984; 이해원, 1999; 한정란, 2000; 김욱, 2003 재인용).

그리고 최근에는 연령주의에서 나아가 연령통합(age integration¹⁰)척도나 사회통합 척도 혹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 European Commission, 2010, 정해식 외, 2014 재인용; 정경희 외, 2015¹¹; 정순둘 외, 2015¹², 2016). 해외에서 사회통합의 정도나 형평성을 측정한 지표개발 연구는 Council of Europe(2005)의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methodological guide(정순둘 외, 2015)와 사회통합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부터 주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고(European Commission, 1996; 2001; 2004; 2007; 2010) 캐나다도 사회통합 지표를 만들었다.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조건, 삶의 기회, 삶의 질, 협조의지, 참여, 문해력으로 구성하였다(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 정해식 외, 2014 재인용). 국내에서는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 상태지표, 이현주 외(2011)의 지역별 사회통합지표(정순둘 외, 2015 재인용), 정해식 외(2014)의 사회통합 지표개발연구, 김미곤 외(2014) 및 여유진 외(2015)의 사회통합 실태 연구, 그리고 김미곤 외(2015)의 사회통합인식에 대한 연구, 정순둘 외(2015)의 연령통합척도, 정경희 외(2015)의 연령통합 지표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절은 이 가운데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연령주의 척도가 Fraboni scale of ageism(FSA)나 Palmore(2001)의 Ageism Survey 외에는 많지 않아서 연령주의와 관련된 척도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10) 연령통합 사회는 연령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과 무관한 사회(age-irrelevant society) 가 되며 이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1) 정경희 외(2015)의 연령통합지표는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으로 구성되었다

12)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과 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 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인프라로 구성하였다(정순둘 외, 2015).

1. 주요 국가의 연령주의 및 관련척도

지금까지 개발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연령주의 척도는 모두 범주에 근거한 집단 간 편견(bias)을 측정하고 있다(〔표 2-4〕 참고. Fiske and North, 2014).

[표 2-4] 해외의 이즘(ism)척도

구분	지표	지표개발자 및 연도
사회적 계층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Pratto et al.(1994)
	Stereotype Content Model	Fiske et al.(2002)
인종주의	Symbolic Racism Scale	Henry and Sears(2002)
	Implicit Association Test(race)	Greenwald et al.(1998)
	Indirect Priming Measure of Racism	Fazio et al.(1995)
	Aversive Racism Measure	Dovidio et al.(1986)
	Anti-Asian Bias	Lin et al.(2005)
성차별주의	Modern Sexism Scale	Swim et al.(1995)
	Neo-sexism Scale	Tougas et al.(1995)
	Ambivalent Sexism Inventory	Glick and Fiske(1996)
	Sexual Prejudice	Herek and Lemore(2013)
연령주의	Attitudes Toward Old People Measure	Tuckman and Lorge(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	Kogan(1961)
	Aging Semantic Differential	Rosencranz and McNevin (1969)
	The Salter View of Elderly Scale	Salter and Salter(1976)
	Facts on Aging Quiz	Palmore(1977; 1998)
	Ageism Survey	Palmore(2001)
	Fraboni Scale of Ageism	Fraboni et al.(1990)
	the image of aging scale	Levy et al.(2004)
	Succession, Identity and Consumption Scale	North and Fiske(2013)
	Ageism(European Society Survey. ESS)	European Commission(2008)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NADS)	Furnes and Mykletun(2010)
	Workplace Age Discrimination Scale	Marchiondo et al.(2016)

정신질환	Mental Illness Stigma	Link et al.(2004)
외모차별	Anti-Fat Prejudices	Crandall(1994)
장애인차별	Ableism	Dovidio et al.(2011)
성전환자 차별	Prejudice toward gay men and Lesbian women	Morrison and Morrison(2002)

자료) European Society Survey 홈페이지, Palmore, 2001; Morrison and Morrison, 2002; Cherry and Palmore, 2008; Furunes and Mykletun, 2010; Wisdom, 2010; Kilic and Adibelli, 2011; North and Fiske, 2013; Fiske and North, 2014; Levy and Macdonald, 2016; Marchiondo et al., 2016)

먼저 인종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는 Symbolic Racism Scale(Henry and Sears, 2002), Implicit Association Test(Greenwald et al., 1998), Indirect Priming Measure of Racism(Fazio et al., 1995), Aversive Racism Measure(Dovidio et al., 1986), Anti-Asian Bias(Lin et al., 2005)을 들 수 있다.

성차별주의에 대한 척도는 Modern Sexism Scale(Swim et al., 1995), Neo-sexism Scale(Tougas et al., 1995), Ambivalent Sexism Inventory(Glick and Fiske, 1996), Sexual Prejudice(Herek and Lemore, 2013) 등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드물지만 외모차별(Anti-Fat Prejudices) 지표에 대한 연구(Crandall, 1994; Fiske and North, 2014 재인용), 성전환자(Gay, Lesbian)에 대한 차별을 측정하고자 고안된 Prejudice toward Gay men and Lesbian women(Morrison and Morrison, 2002)도 있다. 그 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Mental Illness Stigma)에 대한 연구(Link et al., 2004)와 장애인 차별(Ableism)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Dovidio et al., 2011; Fiske and North, 2014 재인용).

연령주의 척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령주의를 측정하고자 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Cherry and Palmore, 2008). 다만 연령주의로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노화사실인지척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Attitudes Toward Old People Measure(Tuckman and Lorge,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Kogan, 1961), Aging Semantic Differential(Rosencranz and McNevin, 1969), The Salter View of Elderly Scale(Salter and Salter, 1976), Facts on Aging Quiz(Palmore, 1977; 1998), Ageism Survey(Palmore, 2001), Fraboni Scale of Ageism(Fraboni et al., 1990), the image of aging scale(Levy et al., 2004), Succession, Identity and Consumption Scale(North and Fiske, 2013), Ageism(European Society Survey. ESS. European Commission, 2008),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NADS. Furnes and Mykletun, 2010), Workplace Age Discrimination Scale(Marchiondo et al., 2016)을 들 수 있다(European Society Survey 홈페이지¹³), Palmore, 2001; Morrison

and Morrison, 2002; Cherry and Palmore, 2008; Furunes and Mykletun, 2010; Wisdom, 2010; Kilic and Adibelli, 2011; North and Fiske, 2013; Fiske and North, 2014; Levy and Macdonald, 2016; Marchiondo et al., 2016).

그리고 Social Dominance Orientation(Pratto et al., 1994)와 Stereotype Content Model(Fiske et al., 2002)는 사회적 그룹간 계층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Fiske and North, 2014). 이 가운데 Fiske et al.(2002)의 The Stereotype Content Model은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2가지 기준(역량과 따뜻함-친절)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이 척도는 젊은 사람과 노인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데 적용되어(Cuddy et al., 2005) 연령주의를 측정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를 적용한 연구를 보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따뜻하지만, 역량은 낫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Abrams et al., 2009; Vauclair et al., 2010; Euro Barometer, 2011 재인용) 양가적(ambivalent) 측면의 연령주의를 측정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척도 가운데 연령주의와 관련된 척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Measure(Tuckman and Lorge, 1953)

Tuckman and Lorge(1953)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측정하고자 Attitudes Toward Old People Measure을 개발하였고, 설문문항은 10개 범주의 13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적(감각, 소화력, 신체적 조정력-coordination, 항상성, 질병, 사고, 피로, 불편함, 목소리, 죽음), 보수주의(conservatism), 활동과 관심, 재정적, 신체적(조정력, 항상성, 소화, 통증, 죽음, 감각, 목소리·피로, 질병과 사고), 가족, 인성, 미래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future), 인생의 전성기, 불안정(insecurity), 정신적 능력감퇴로 구성하였다.

보수주의 문항은 노인은 구식이다, 노인은 보수적이다, 노인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한다, 노인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오래된 친구를 좋아한다, 노인은 젊은 세대에 대해 비판적이다, 노인은 변화나 그들이 쌓아온 방식이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14문항으로, 활동과 관심문항은 노인은 쓸모없는 물건들을 수집한다(종이, 낡은 옷 등),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보낸다, 노인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9문항, 재정문항은 노인은 비생산적이다, 노인은 돈 문제에 대해 인색하다 등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신체문항은 조정력 2문항(노인은 천천히 걷는다, 노인은 신체적 조정력이 낫다), 항상성 2문항(노인은 따뜻한 날씨

에도 몸이 차갑다, 노인은 뜻은 날씨에 외출하는 것을 기피한다), 소화 5문항(노인은 조금 먹는다, 노인은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 등), 통증 2문항(노인은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 노인은 통증으로 괴로워한다), 죽음 2문항(노인은 퇴직 후 곧 죽는다, 노인은 암이나 심장병으로 죽는다), 감각 3문항(노인은 청력에 문제가 있다, 노인은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등), 목소리 · 피로 5문항(노인은 젊은 사람들보다 잠이 덜 필요하다, 노인은 매일 낮잠을 자야한다,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에 피로를 느낀다 등), 질병과 사고 6문항(노인은 집에서도 사고가 많이 난다, 노인은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노인은 쉽게 감염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족은 12문항으로 노인은 손자녀를 버릇없게 키운다, 노인은 자식들이 자기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은 (손)자녀가 자신을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기대한다, 노인은 자식 · 친척과 자주 싸운다 등이며, 인성은 14문항으로 노인은 친절하다, 노인은 불평이 많다, 노인은 화를 잘 낸다, 노인은 이기적이다, 노인은 짜증을 잘 낸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미래에 대한 태도문항은 5개로 노인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인은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노인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등이며, 인생의 전성기에 대한 문항은 5개로 노인은 다시 젊어지고 싶어한다, 노인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등이다. 불안정 측정문항은 19개로 노인은 쉽게 화를 낸다, 노인은 사소한 일을 걱정한다, 노인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다, 노인은 외롭다, 노인은 무력하다 등이며, 정신적 기능감퇴는 7문항으로 노인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노인은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없다 등으로 구성되었다(Tuckman and Lorge, 1953). Tuckman and Lorge(1953)은 이 척도로 20~48세의 147명의 학생(Psychology of the Adult at Teachers College)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Attitude Toward Old Persons Scale(Kogan, 1961)

Kogan(1961)은 Attitude Toward Old Persons Scale을 개발하여 일반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항은 총 26개로 구성되었으며 국내외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문항은 노인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이 낫다, 노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기 나름의 방식을 고수하며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인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지혜롭다는 주장은 어리석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의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해 말해서 다른 사람

들 따분하게 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단정하기 못해서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짜증을 잘 내고 불평을 많이 하고 불쾌하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외에서 Kogan(1961)의 Attitude Toward Old Persons Scale을 사용한 논문은 Hilt and Lipschultz(1999), Wisdom(2010), Kilic and Adibelli(2011), Feenstra(2012)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Kilic and Adibelli(2011)와 Feenstra(2012)도 Kogan(1961)의 척도로 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Hilt and Lipschultz(1999)은 지역 텔레비전에 조명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다.

3)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노인 이미지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Tuckman and Lorge, 1952; Osgood et al., 1957; Rosencranz and mcNevin, 1969; Sanders et al., 1986; MacNeil et al., 1996; 한정란, 2004 재인용). Fishbein and Ajzen(1975)에 따르면, 태도는 어떤 주어진 대상이나 생각 또는 사람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태도 측정연구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기술과 부정적인 기술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 위에서 주어진 대상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미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한정란 외, 2007).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의미분화척도들의 문항을 보면, “현명하다—어리석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유식하다—무식하다, 즐겁다—우울하다, 믿을 수 있다—믿을 수 없다, 관대하다—이기적이다,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깨끗하다—지저분하다, 우호적이다—우호적이지 않다, 재미있다—지루하다, 생산적이다—비생산적이다, 건강하다—쇠약하다, 착하다—나쁘다, 융통성 있다—고지식하다,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진보적이다—보수적이다, 매력적이다—매력 없다. 참을성 있다—참을성 없다, 낙천적이다—비관적이다, 불평이 많다—불평이 없다, 생활이 무료한—생활이 활기찬, 구속적인—자유로운, 나약한—강인한, 가난한—부유한, 모험적인—조심스러운, 부정확한—정확한, 소심한—대범한,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민감한—둔한, 참여적인—방관적인, 겸손한—오만한, 이해심이 적은—이해심이 많은, 존경스러운—존경스럽지 않은, 관대한—편협한, 성실한—불성실한, 똑똑하다—멍청하다, 예쁘다—밉다, 행복하다—슬프다, 능숙한—서투른, 머리가 좋은—머리가 둔한, 도움이 되는—도움이 안되는, 행복한—우울한, 호감이 가는—호감이 안가는, 재미있는—재미없는, 현대적인—구식의” 등이다. 대표적인 의미분화척도는 Osgood et al.(1957)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Sanders et al.(1984)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문항 중에는 긍정적인 반응인지 혹은 부정적인 반응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항들, 즉 반대되는 양극점에 위치시키기 어려운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진보적이다—보수적이다”의 문항에서 진보성 혹은 보수성은 하나의 관점이고 의견일 뿐, 반드시 진보적인 것은 긍정적인 속성이고 보수적인 것은 부정적인 속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비생산적이다”와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의 문항 역시 긍정성과 부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생산성과 의존성은 아동 및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성인들만의 시각에서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것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적인—구식의”의 의미문화 문항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Fishbein and Ajzen, 1975; 한정란, 2004 재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문화척도는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Facts on Aging Quiz(Palmore, 1977; 1988)

연령주의는 사람들이 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Cherry and Palmore, 2008).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미신이 아닌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에(Palmore, 1988) 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적게 가질 것이다. 나아가 고정관념, 편견, 차별행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김지연 외, 2012). 한정란(2003), Fraboni et al.(1990), Holtzman et al.(1981)의 연구에서도 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에 대한 부적 편견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김지연 외, 2012 재인용).

이에 Palmore(1977)은 사람들의 노화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정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노화사실인지척도 FAQ(Facts on Aging Quiz)를 개발하고 1988년에 Fact On Aging Quiz(part-1: fAQ-1)의 True-False version을 개발하였다(Cherry and Palmore, 2008).

이와 같은 Facts on Aging Quiz은 노화에 대한 사실 정보를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 척도와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한정란 외, 2007; 김지연 외, 2012). 또한 노화사실인지척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고정관념 또는 연령주의)을 측정할 수 있어서(최성재 외, 2016) 노화에 대한 오해를 측정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Cherry and Palmore, 2008).

5) Ageism Survey(Palmore, 2001)

Palmore는 Barrow and Smith(1979), Bythway(1995), Palmore(1999)의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Ageism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령주의는 편견(고정관념과 태도), 차별(개인적 행동과 제도적 정책)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여, Ageism Survey도 고정관념, 태도, 개인적·제도적 차별을 포함하였다. 다만, 연령주의는 부정적인 형태와 긍정적인 형태가 있지만, Ageism Survey에서 Palmore는 간결하게 조사하기 위해 부정적인 연령주의로만 구성하였다.

문항은 나이로 인하여 모욕적인 욕설이나 언사를 들었다, 나이로 인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했다, 나이로 인하여 의료치료를 거절당한다, 나이로 인하여 승진을 거절당한다, 타인이 ‘당신은 그 일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라고 말한다, 나이로 인하여 범죄의 희생이 되었다 등의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Palmore, 2001). 측정은 각 문항에 대해 경험한 적이 없으면 0, 한번=1, 두 번 이상이면 2로 입력하였다(Palmore, 2001). 이와 같은 Palmore(2001)의 Ageism Survey은 편견과 차별로 정의되는 연령주의 경험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Cherry and Palmore, 2008).

6) Fraboni Ageism Scale(FSA. Fraboni et al., 1990)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령주의 척도 중 하나는 FSA(Fraboni Scale of Ageism)이다. Fraboni et al.(1990)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기존 척도들이 태도의 인지적 측면만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적대적 태도, 차별적 태도, 회피 욕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김주현, 2015) 행동보다는 태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다(Cherry and Palmore, 2008).

FSA는 고령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향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멸하는 말투(derogatory speech, antilocution, 10문항), 차별(9문항), 회피(10문항)의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방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노인집단에 대한 오해, 신화로부터 증폭된 적의, 혐오의 표현 등에 관한 것이고 회피 요인에 대한 항목은 노인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경향에 대한 것들이다. 차별은 보다 극단적인 연령주의를 나타내는 항목들에 관한 것으로 보다 강한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다(분리, 격리-segregation 등).

적대적인 말을 측정하는 문항(①)은 노인들은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비축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개인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짜증난다,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평이 많다 등의 10문항으로, 차별은(②) 노인이 유아를 돌보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노인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역코딩), 노인들과 있는 것은 매우 즐겁다(역코딩) 등과 같은 9문항으로, 회피는(③) 나는 종종 노인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나는 노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노인들이 나와 이야기하려는 것이 싫다, 나는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Fraboni et al., 2000; Fiske and North, 2014 재인용). 각 문항은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매우 동의하지 않음=1, 매우 동의=5), 조사는 16~65세의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정신병원 직원, 소규모 기업, 건강·교육관련 기관 등. Fraboni et al., 1990. 김주현, 2012; 김지연 외, 2012; Fiske and North, 2014 재인용).

7)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Cherry and Palmore, 2008)

Cherry and Palmore(2008)은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 ROPE)를 개발하였다. 연령주의 척도라는 표현 대신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라고 한 것은 더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고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이다.

ROPE 척도는 연령주의적 행동의 빈도와 유형을 측정하고자 고안되었다. 문항은 총 20개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6개는 긍정적인 연령주의를, 14개의 문항은 부정적 연령주의를 측정하였다. 노인(60세 이상)에게 “당신은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한다, 노인의 나이를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나이 때문에 노인에게 더 크고 더 느리게 말한다, 노인과 말할 때 단순한 단어를 사용한다, 내 앞에 느린 운전자가 있을 때, 나는 “분명 노인일 거야”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각 문항별로 ‘전혀 없다(0)’, ‘가끔 있다(1)’, ‘종종 있다(2)’ 가운데 응답하도록 한 후,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설문문항은 연령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쳤고 Palmore(2001)의 Ageism Survey의 부정적 연령주의 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연령주의와 부정적 연령주의는 Palmore(1999)의 연령주의 유형에 기초하였다. 한편, 연령주의는 편견(고정관념과 태도)과 개인적 차별(행동) 그리고 제도적 차별(정책과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ROPE는 개인차원의 차별(부정적/긍정적)만 측정하였다(Cherry and Palmore, 2008).

8) Age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Ageism(ESS. EU)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연령차별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European Social Survey(ESS. 28개 국가가 참여함)의 일환으로 노인에 대한 태

도와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Age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Ageism module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나이범주·정체성, 고정관념 내용(stereotype content- benevolent and hostile forms of prejudice), 편견,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 인지된 지위(perceived status), 세대간 접촉과 유사성(similarity)의 6개의 요소,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인지된 위협(perceived threat)이 포함된 것은 노인은 건강보호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며, 연금이나 할인, 난방연료 수당(winter fuel allowance)과 같은 혜택을 받아서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서 사회적 가치와 도덕성에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인식된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위협이 되는 연령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Riek et al., 2006; Euro Barometer, 2011 재인용).

인지된 지위(perceived status)를 포함한 것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집단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령은 각 연령그룹별 사회적 역할, 지위, 권력, 책임을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가 연령에 의해 결정되며(Garstka et al., 2004)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각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대우(treatment)와 상호작용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낫거나 낙인찍힌(stigmatised) 그룹의 사람들은 자존감과 웰빙(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포함하였다.

끝으로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집단에 속했다고 인식하거나, 집단이 다르더라도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때 편견이 줄어든다(Gaertner and Dovidio, 2000). 많은 연구들이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과의 긍정적 접촉경험은 다른 집단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Pettigrew, 1998) 세대간 접촉과 유사성을 척도의 구성요소로 삼았다(Euro Barometer, 2011).

나이범주 및 정체성 문항은 짧음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연령, 늙었다고 볼 수 있는 연령 등 4개 문항, 호의적/적대적 고정관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70세 이상을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70세 이상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70세 이상을 측은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70세 이상을 존경한다의 18개 문항으로, 편견을 측정하는 문항은 연령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대했는가, 얼마나 자주 연령으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했는가의 5문항, 인지된 위협은 20대가 범행을 저지를 것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는가, 고용주가 40대보다 20대를 선호한다고 얼마나 우려하는가, 20대/70세 이상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등의 7문항, 인지된 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40대/70세 이상의 지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세/70세를 상사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5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세대간 접촉과 유사성은 30세 이하/70세 이상의 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가, 15~30세의 (손)자녀/70세 이상의 가족구성원과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가, 지난 1달 동안 20대/70세 이상 동료와 함께 한 시간 등의 1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European Social Survey 홈페이지).

9) Succession, Consumption and Identity(North and Fiske, 2013)

기존에 개발된 연령주의 척도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묘사하였다면, North and Fiske(2013)의 Succession, Consumption and Identity(SCI) 척도(혹은 Prescriptive Intergenerational-Tension Ageism Scale)는 규범적 믿음(prescriptive belief)에 초점을 맞추었다(North and Fiske, 2013; Fiske and North, 2014 재인용).

특히, Succession, Consumption and Identity은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North and Fiske(2012; 2013)에 따르면, 연령주의는 고령자들이 가진 재원을 후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젊은 층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퇴직하기. succession) 제한된 사회자원을 불공평하게 더 많이 소비하며(consumption),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Identity). 특히, 자원이 희소할 때 이와 같은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orth and Fiske, 2016).

이에 SIC 척도는 연속(succession. 8문항), 소비(consumption. 7문항), 정체성(identity. 5문항)의 20문항으로 3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succession에 대한 문항은 대부분의 고령근로자는 젊은 세대를 위해 언제 퇴직해야 할지 모른다,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령자보다 더 생산적이다, 노인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는 더 빠르게 발전하였을 것이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비문항은 의사는 병든 노인을 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노인은 가족들에게 종종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노인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들의 자산을 주는 것이다 등의 7문항으로 정체성 문항은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노인들은 페이스북(Face book)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노인들은 쿨하게(cool) 행동하려고 노력해서는 안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16~81세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령주의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연령주의를 포함하였다. 연령주의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고령화되는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SIC 척도를 고안하였다(Fiske and North, 2014).

10)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NADS)

연령차별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직장생활, 고용유지,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March and Sahin-Dikmen, 2003; Parkins et al., 2006; Taylor and Urwin, 2001; Taylor and Walker, 1998; Urwin, 2006; Virjo, 2004; Furunes et al., 2008; Sullivan and Dupлага, 1997; Furunes and Mykletun, 2010 재인용). 그리고 직장에서의 연령차별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Rupp et al., 2006). 그럼에도 직장내 연령차별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거의 없다. 이에 Furunes and Mykletun(2010)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연구(2,653명의 학교 선생님¹⁴⁾)를 통해 직장에서의 연령차별지표를 고안하였다.

Furunes and Mykletun(2010)가 개발한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NADS)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①승진(고령근로자는 승진/내부임용에서 제외된다), ②훈련(고령근로자는 다른 직원과 동등한 훈련기회가 없다), ③발전(development. 고용주는 새로운 장비나, 근무방법-working methods, 활동이 도입될 때 젊은 근로자를 선호한다), ④ 발달평가(developmental appraisal), ⑤ 임금상승(고령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젊은 근로자보다 낮다), ⑥변화과정(change process. 고령근로자는 젊은 근로자처럼 변화과정과 새로운 업무방법을 익힐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 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5(전적으로 동의함)의 5점으로 측정하였다.

11) Workplace Age Discrimination Scale(WADS)

지금까지 직장동료와 상사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연령주의를 당하는 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차별의 형태(고용거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행동(사회적 배제 등)이나 빈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Marchiondo et al.(2016)은 근로자가 경험한 연령차별을 측정할 수 있는 Workplace Age Discrimination Scale(WADS)을 개발하였다. 총 25개의 문항으로 나는 나이 때문에 해고당할까 걱정한다, 나는 나이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직장에서 나는 나이 때문에 조롱당한다, 나는 나이 때문에 월급이 불공평하게 낮다, 나는 종종 나이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WADS는 모든 연령대 근로자의 연령차별인식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14) 각 국가의 교사노조를 통해 표본을 추출함

2. 국내 연령주의 및 관련척도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까지 노화사실인지척도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Sanders et al.(1984)의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변안하여 사용하거나(한정란, 2000; 2003; 김수영 외, 2002; 원영희 외, 2002; 임영신 외, 2002; Sanders et al., 1984; Hawkins, 1996; 한정란, 2004 재인용), Palmore(1977)의 FAQ를 활용하여 노화사실인지정도를 측정한 문혜리(1999), 한정란(2000), 김수영 외(2002)의 연구(한정란 외, 2007 재인용), Palmore(2001)이 개발한 척도를 변안하여 조사하거나(김옥, 2003; 원영희, 2005; 양정남 외, 2010), FSA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한 연구(김지연 외, 2012) 혹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을 뿐이다.

국내에서는 윤진과 조석미(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 원영희(2005)의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가 있고, 한정란(2000)이 Palmore(1988)가 개발한 Facts on Aging Quiz I (FAQ I)과 Facts on Aging Quiz II (FAQ II) 및 윤진과 조석미(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개발한 ‘한국판 노화에 대한 지식 척도’가 있다(한정란, 2007; 김지연 외, 2012).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척도는 김주현(2012)의 연령주의 척도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김주현(2012)의 척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주현(2012)의 연령주의 척도

김주현(2012)은 Palmore 척도가 노인 스스로의 경험에 한정되고 Fraboni 척도는 실제 행동이 아니라 태도에 중점을 두고 Cherry and Palmore(2008)의 ROPE는 연령주의를 구성하는 편견(고정관념과 태도), 개인적 차별(행동), 제도적 차별(정책과 실천) 중 개인적 차별만을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표 2-5] 우리나라의 연령주의 척도

요인	측정문항
노화불안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까봐 두렵다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부정적인 고정관념(편견)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노인은 대부분 과거 속에 살고 있다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기피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노인과 만나면 때때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나는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모의 변화	나는 거울에서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늙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노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노인에게 나이에 관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대부분의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
노인에 대한 기피/회피	노인들은 따로(별도로 구분되는)지역 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따로(별도로 구분되어) 마련되는 것이 좋다

자료) 김주현(2012)을 연구결과를 편집함.

측정문항은 Lasher et al.(1993)의 노화불안척도(AAS) 20개, Cherry and Palmore(2008)의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ROPE), Fraboni et al.(1993)의 29개의 FSA 문항을 기초로 개발하였다. 44개의 예비문항을 정리한 뒤,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내적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1개의 예비문항을 사용하였다(매우 그렇다
어서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 그 후 내적 신뢰도 분석을 통해 8문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7개의 요인

으로 구성된 21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요인1: 노화불안, 요인2: 편견, 요인3: 기피, 요인4: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모의 변화, 요인5: 노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 요인6: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요인7: 노인에 대한 기피/회피). 연구를 통해 최종 도출된 연령주의 척도문항은 21개이다.

2) 우리나라의 의미분화척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미분화태도척도는 Sanders et al.(1984)이다. 이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한 국내연구는 한정란(2000;2003), 원영희 외(2002), 김수영 외(2002), 임영신 외(2002) 등이 있다.

[표 2-6] 우리나라의 의미분화척도

한정란(2004)의 의미분화척도	손희정(2009)의 의미분화척도
깨끗하다 – 지저분하다	현명한 – 어리석은
잘생겼다 – 못생겼다	친절한 – 불친절한
세련되다 – 촌스럽다	박식한 – 무식한
건강하다 – 허약하다	즐거운 – 슬픈
침착하다 – 덤벙대다	신뢰할 수 있는 – 신뢰할 수 없는
유식하다 – 무식하다	관대한 – 이기적인
똑똑하다 – 명청하다	비활동적인 – 활동적인
중요하다 – 쓸모없다	깔끔한 – 단정치 못한
재주가 많다 – 잘 하는 게 없다	호의적인 – 비호의적인
남을 잘 믿는다 – 의심이 많다	재미있는 – 지루한
착하다 – 못됐다	건강한 – 아픈
부지런하다 – 게으르다	좋은 – 나쁜
재미있다 – 재미없다	융통성 있는 – 융통성 없는
용기가 있다 – 비겁하다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못한
불만이 없다 – 불만이 많다	인내심 있는 – 인내심 없는
책임감이 있다 – 책임감이 없다	낙천적인 – 비관적인
명랑하다 – 우울하다	불평이 없는 – 불평이 많은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존경스러운 – 존경스럽지 않은
너그럽다 – 이기적이다	겸손한 – 오만한
정직하다 – 거짓말을 잘 한다	이해심 많은 – 이해심 적은

자료) 한정란(2004; 한정란 외, 2007 재인용), 손희정(2009)

이 가운데 한정란(2004)은 외국척도에 의존해왔던 노년학 연구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전 연령대를 포괄하여 각 연령집단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한정란 외, 2007). 그리고 손희정(2009)이 Sanders et al.(1984)의 의미분별척도에서 일부 문항(긍정부정의 평가가 불가능한 문항)을 삭제하고 박경란 외(2002)의 연구에 사용된 형용사 척도를 추가하여 연구하였다(Likert 7점 척도. 손희정, 2009). 한정란(2004)과 손희정(2009)가 Sanders et al.(1984)의 척도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의미분화척도는 [표 2-15] 과 같다.

한정란(2004)는 1점에서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에 근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의도적인 응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20개의 형용사 쌍들 중 긍정적인 형용사와 부정적인 형용사의 순서를 임의로 배치한 후, 자료 입력 단계에서 긍정적인 형용사일수록 높은 점수로 그리고 부정적인 형용사일수록 낮은 점수로 환산하여 재입력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의 분포는 가장 부정적인 경우 20점에서부터 가장 긍정적일 경우 100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태도점수의 범위는 항목별로 2.5점에서 3.5점까지로, 총점으로는 50점에서 70점까지로 규정하였다(한정란 외, 2007). 한정란 외(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노화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의 노화사실인지척도

우리나라에서 노화사실인지척도를 개발하기 보다는 Palmore의 FAQ를 활용한 연구가 많다(문혜리, 1999; 한정란, 2000; 김수영 외, 2002; 한정란 외, 2007 재인용). 물론 윤진·조석미(1982)가 개발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 없다. 손희정(2009)이 Palmore(1998)의 노화사실인지척도 FAQ(Facts On Aging Quiz)-1을 사용하되, 임영신(2002), 윤진·조석미(1982), 김문주(2005), 이윤미(2003), 이나진(2006)을 참고하여 문항을 수정한(최종 26문항)을 들 수 있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노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경우 긍정적인 고정관념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우세하였다(손희정, 2009).

또한 최성재 외(2016)은 Palmore가 1977년에 개발하여 1988년에 다시 수정한 The Facts on Aging Quiz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노화사실인지척도를 수정하였다([표 2-16]). 최성재 외(2016)의 노화사실인지척도문항은 손희정(2009)의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설문문항이 더 많다.

[표 2-7] 손희정(2009)의 노화관련지식문항

연번	문항
1	치매는 노화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2	나이가 들면, 오감은 감퇴하는 경향이 있다
3	노인이 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4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5	대다수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우울함을 느낀다
6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7	적어도 10% 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에 살고 있다
8	노인 운전자들의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
9	젊은이에 비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10	절반이상 노인이 일상생활을 할만큼 충분히 건강하다
11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12	2008년 현재 인구 12%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13	우울은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14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대체로 반응속도가 늦다
15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모든 면에서 비슷비슷해진다
16	50% 이상의 노인들은 좀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
17	노인들의 투표율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낮다
18	고령자가 직장에서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킨다
19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20	30% 이상 노인들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으로 생활한다
21	일하지 않고 쉬는 노인들이 계속 일하는 노인들보다 자기 생활에 더 만족해한다
22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종교적 경향이 늘어난다
23	대부분 노인들은 좀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24	장래 노인들의 건강 및 재정상태는 나바질 것이다
25	현재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5년을 더 산다
26	우리나라는 UN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속한다

자료) 손희정(2009)

[표 2-8] 우리나라의 노화사실인지척도

연번	항목
1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5가지 감각 기능(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은 점차 감퇴된다.
2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관계에 관심이 없고 또한 성생활 능력이 없다
3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
4	65세 이상 노인은 비노인층에 비해 운전 중 사고를 적게 낸다
5	고령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젊은이들만큼 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
6	약 4분의 3 이상의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
7	대부분의 노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8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9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10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행동이나 생각에서 거의 비슷하다
11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 정도 된다
12	대부분의 노인들은 빈곤한 상태(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상태)에 있다
13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하고 싶어한다
14	현재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 중 3분의 1정도이다
15	현재 노인들이 일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이다
16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17	노인들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18	대부분의 노인들은 거의 화를 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19	10년 전에 비해 현재 같은 나이의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훨씬 더 좋다
20	절반 이상의 노인들은 노쇠하여 기억장애, 방향감각장애, 정신착란 등을 일으킨다
21	나이가 들면 지능은 점점 더 떨어진다
22	나이가 들면 모든 기억력은 떨어진다
23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급성질병(단기간 발생)이 더 많다
24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직장에 결근하는 일이 더 적다
25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26	남성의 평균수명은 여성의 평균수명과 거의 비슷하다
27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노인비율은 40%도 안 된다.
28	노인들 중에 홀로 된 비율은 남자나 여자나 같다
29	노인들의 투표율은 20~30대 젊은이들보다 높다
30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젊은 층보다 낮다
31	노인들 가운데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은 거의 70% 정도 된다.
32	활동을 적게 하는 노인들이 많이 하는 노인들보다 생활만족감을 더 느낀다
33	노년기 생애 마지막 1년간의 의료비는 노년기 연평균 의료비보다 훨씬 많다
34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는다
35	인지장애는 노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36	나이가 많아지면 밤에 소변보는 횟수가 늘어난다
37	우리나라의 노인 전체 의료비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이상이나 된다
38	노년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키)이 줄어든다
39	노인의 자살률은 50세가 넘으면 크게 증가한다
40	치매는 노년기의 가장 흔한 인지장애의 한 형태이다
41	치매는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42	나이가 들면 조심성이 증가한다
43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년기에 정신질환 발생률이 더 높다
44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수면장애가 더 적다
45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문제이다
46	노인의 가족수발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은 배우자이다
47	노인의 능력은 교육/훈련 및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48	노화과정은 지연시키거나 돌이킬 수 없다
49	노년기의 만성질병은 대부분은 유전적 원인으로 생긴다
50	중년기를 지나 나이가 들면 창의성은 크게 떨어진다

자료) 최성재 외(2016)

제4절 소결

대부분의 고령자는 연령주의를 경험하였지만(캐나다의 91%, 미국의 85%), 연령주의는 다른 차별과는 달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는 20백 만개, 인종주의는 87만개의 연구결과가 있지만, 연령주의와 관련해서는 708,000개에 불과한 것도 이를 말해준다(2015년 기준. 구글검색). 다른 차별과는 달리, 연령주의를 덜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고, 일반적인 편견의 형태로 보지 않는 것도 요인일 것이다(Tas et al., 2010; Cary et al., 2016 재인용).

그러나 연령주의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다른 이즘(ism)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지만, 꾸준히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연령주의 척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령주의를 측정하고자 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Cherry and Palmore, 2008). 다만 연령주의로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노화사실인지척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Attitudes Toward Old People Measure(Tuckman and Lorge,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Kogan, 1961), Aging Semantic Differential(Rosencranz and McNevin, 1969), The Salter View of Elderly Scale(Salter and Salter, 1976), Facts on Aging Quiz(Palmore, 1977; 1998), Ageism Survey(Palmore, 2001), Fraboni Scale of Ageism(Fraboni et al., 1990), the image of aging scale(Levy et al., 2004), Succession, Identity and Consumption Scale(North and Fiske, 2013), Ageism(European Society Survey. ESS. European Commission, 2008),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NADS. Furnes and Mykletun, 2010), Workplace Age Discrimination Scale(Marchiondo et al., 2016)을 들 수 있다(European Society Survey 홈페이지, Palmore, 2001; Morrison and Morrison, 2002; Cherry and Palmore, 2008; Furunes and Mykletun, 2010; Wisdom, 2010; Kilic and Adibelli, 2011; North and Fiske, 2013; Fiske and North, 2014; Levy and Macdonald, 2016; Marchiondo et al., 2016). 연령주의는 1969년 Robert Butler(1969)에 의해 처음 명명되고 소개되었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노인에 대한 태도나 편견, 노인 이미지(의미문화척도), 노화사실인지정도 등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서 연령주의를 측정하고자 시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주의 척도는 Palmore(2001)의 Ageism Survey의 척도와 Fraboni et al.(1990)의 Fraboni Scale of Ageism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

보다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비영어권 역시 Palmore(2001)의 Ageism Survey의 척도와 Fraboni et al.(1990)의 Fraboni Scale of Ageism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연령주의 연구는 이제 태생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했다. 2000년대 초까지 노화사실인지척도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던 시도는 상당히 적다. Sanders et al.(1984)의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번안하여 사용하거나(한정란, 2000; 2003; 김수영 외, 2002; 원영희 외, 2002; 임영신 외, 2002; Sanders et al., 1984; Hawkins, 1996; 한정란, 2004 재인용), Palmore(1977)의 FAQ를 활용하여 노화사실인지정도를 측정한 문혜리(1999), 한정란(2000), 김수영 외(2002)의 연구(한정란 외, 2007 재인용), Palmore(2001)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조사하거나(김욱, 2003; 원영희, 2005; 양정남 외, 2010), FSA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가(김지연 외, 2012) 있을 뿐이다. 물론 윤진과 조석미(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 원영희(2005)의 노인차별피해경험 척도가 있고, 한정란(2000)이 Palmore(1988)가 개발한 Facts on Aging Quiz I (FAQ I)과 Facts on Aging Quiz II (FAQ II) 및 윤진과 조석미(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개발한 한국판 노화에 대한 지식 척도'가 있지만(한정란, 2007; 김지연 외, 2012) 이 역시 적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령주의 척도 개발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 김미곤 · 여유진 · 김태완 · 정해식 · 우선희 ·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 여유진 · 정해식 · 양재진 · 이창곤 · 우선희 · 김성아. 2015. 『정책 영향자의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욱 · 김지범 · 문용갑 · 신승배 · 장상수. 2012.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수현 · 이정아 · 정주연. 2013.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 13(3). 59~90.
- 김욱.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2). 97~118.
- 김욱.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2). 361~391.
- 김주현. 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53~75.
- 김주현. 2015. “한국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인식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 38(1). 69~104.
- 김지연 · 김민희 ·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김희삼 · 이영숙 · 이상엽 · 김혜원 · 죄슬기 · 김석호 · 이윤석 · 김순희. 2016. 『세대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방안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 박윤섭. 2016. “근로자의 관점에서 본 고용현장에서의 연령차별 현황 및 문제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 회의자료.
- 박종우. 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ageism)와 노인문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1. 51~68.
- 손희정. 2009. “고등학생의 노화관련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교육. 2(1). 1~19.
- 송영신. 2016. “독일 연령주의의 현황, 연구동향 및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 회의자료.
- 안주엽 · 이인재 · 조용만 · 부가청 · 윤문희. 2007. 『노동과 차별(I): 선진국의 반차별법 ·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 · 남재량 · 이인재 · 성지미 · 최강식. 2007. 『노동과 차별(II): 인식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 양정남 · 최은정 · 김화선 · 심정영. 2010.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노인차별경험의 영향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1). 207~229.
- 여유진 · 정해식 · 김미곤 · 김문길 · 강지원 · 우선희 ·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상진. 2015. 『노화의 생물학 분자생물학적 원인에 대하여』. 서울: 탐구당.
- 우국희 · 주경희 · 이연순. 2012. “취업노인의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281~304.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4). 319~339.
- 유경 · 유경호 · 강연옥 · 이주일 · 김지현. 2014. 『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유동철. 2005. “장애인 고용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사회복지연구*. 27(1). 113~132.
- 이호근. 2013. “고령자고용촉진 법·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노동법논총*. 28(2). 93~138.
- 이창배. 2014. “직장 내 차별과 폭력피해 인식, 그리고 직무만족: 노인경비원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경찰학회보*. 16(5). 219~241.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상남 · 신학진. 2009. “노인의 이미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6(4). 165~187.
- 정경희 · 황남희 · 이선희 · 김주현 · 정순둘. 2015. 『연령통합 지표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둘 · 기지혜 · 이은진 · 최혜지. 2015.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380~404.
- 정순둘 · 송아영 · 전혜상. 2015. “복지태도와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 노인과 비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0(4). 245~266.
- 정순둘 · 정세미 · 이미우 · 임정숙. 2016.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연령집단별 비교”. *보건사회연구*. 36(1). 261~285.
- 정순둘 · 정주희 ·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총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정진웅. 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3). 751~765.
- 정진웅. 2014. “반연령주의적 문화실천으로서의 노년연구-고령화시대의 노년연구에 관한 제언”. *보건사회연구*. 34(3). 452~276.
- 정해식 · 김미곤 · 여유진 · 유진영 · 김성아. 2014.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앤 T. 에르버 · 레노어 T. 슈츠만. 2016. 『노화, 그 오해와 진실』. 강영옥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조용만. 2004.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에 관한 국제기준의 연구”. 노사포럼. 제 24호. 한국경영자총연맹.
- 지은정 · 황기돈 · 이호창 · 이재원. 201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 시장형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은정. 2016. “인력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교육훈련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245~270.
- 한정란. 2004.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척도 개발연구”. 한국노년학. 24(3). 197~210.
- 한정란 · 류희선 · 김기진. 2007.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직업교육연구. 26(3). 121~139.
- 최성재 · 김영진 · 박덕배 · 정창률 · 송기민 · 선우덕. 2016. 『생애설계 총론 사회보장제도-Life Planning Series I』. 한국생애설계협회.
- 최성재 · 장인협.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Abrams, Dominic, Hannah J. Swift and Lisbeth Drury. 2016. “Old and Unemployable? How Age-Based Stereotypes Affect Willings to Hire Job Candid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105~121.
- Cary, Lindsey A. Alison L. Chasteen and Jessica Remedios. 2016. “The Ambivalent Ageism Scale: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cale to Measure Benevolent and Hostile Ageism”. *The Gerontologist*. 1~10.
- Cherry, Katie E. and Erdman, Palmore.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A Measure of Self-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 849~861.
- Deborah, Hellman. 2007. *When is Discrimination Wrong?*. Harva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Research Group on Attitudes to Age. 2011. 『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Age UK Improving later life』.
- Fiske, Susan T. and Michael S. North. 2015. “Measures of Stereotyping and Prejudice: Barometers of Bias”. in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Constructs*. edited by Gregory J. Boyle, Donald H. Saklofske and Gerald Matthews. pp. 684~718. Academic Press.
- Feenstra, Anna. 2012. “Student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ScholarWorks at WMC*.
- Furunes, Trude and Reidar J. Mykletun. 2010. “Age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Validation of the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NAD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1. 23~30.
- Hilt, Michael and Jeremy Harris Lipschultz. 1999. “Revising the Kogan Scale: A Test of Local Television News Producer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Communication Faculty Publications*.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 Kilic, Dilek and Derya Adibelli. 201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gan’s attitude towards old people scale in the Turkish society” . *Scientific Research.* 3(9). 602~608.
- Levy, Sheri R. and Jamie L. Macdonald. 2016. “Progress on Understanding Ageism ” .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5~25.
- Macdonald, Jamie L. and Sheri R. Levy. 2016. “Ageism in the Workplace: The Role of Psychosocial Factors in Predicting Job Satisfaction, Commitment and Engagement” .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169~190.
- Marchiondo, Lisa A., Ernest Gonzales and Shan Ran.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place Age Discrimination Scale” .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1. 493~513.
- Nelson, Todd D., 2016. “The Age of Ageism” .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191~198.
- North, Michael S. and Susan T. Fiske. 2013. “A Prescriptive Intergenerational-Tension Ageism Scale: Succession, Identity and Consumption(SIC)” . *Psychological Assessment.* 1~8.
- Palmore, Erdman B.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Second Edi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almore, Erdman B..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Sagreant, Malcolm. 2011. Age Discrimination: Ageism in Employment and Service Provision. Routledge.
- Tuckman, Jacob and Irving Lorge.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249~260.
- Wisdom, Nick M. 2010. “Social Acceptance of Age Discrimination” . Doctorate Thesis of Graduate College of the Oklahoma State University.
- 헤럴드경제, 2017.1.29.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 기준 ‘70세’부터? 초고령사회 대비 지금도 늦었다” .

제3장

일본의 연령주의

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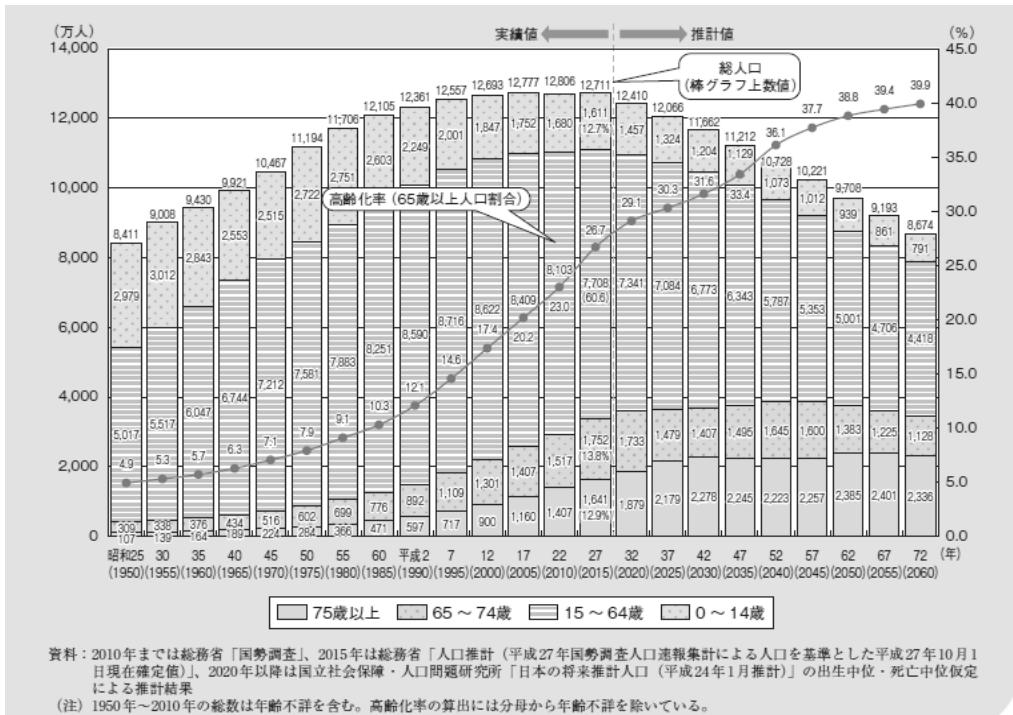
제1절 연령주의의 개념

1. 일본에 있어서의 고령자 문제

1) 일본의 고령화 추세

일본은 2007년에 고령화율이 21.5%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15년 10월 기준 총 인구 1억 2,711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92만 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도 12.9%에 달한다.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2035년에는 33.4%, 2060년에는 39.9%로 약 2.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内閣府, 平成28年度高齢社会白書).

[그림 3-1]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장래추계



자료) 内閣府(2016), 『平成28年度 高齢社会白書』, p. 5.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초고령사회 문제는 노인의 개인적 문제만이 아닌 전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개호나 노후생활보장문제와 더불어 세대 간 갈등, 노인차별 및 학대문제도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고령자관(觀)과 고령자 문제의 변천¹⁵⁾

고령자관(=노인관(觀))은 「노인을 대상화 할 때의 생물적·심리적·사회적인 제 측면에 대한 관점으로 노인에 대한 대응, 행동의 심리적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고령자관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스테레오타입화 될 경우 사회적 태도나 이미지로 이루어진 사회적 고령자관으로 형성된다」(現代福祉学レキシコン第2版, 2003: 334). 즉, 고령자관이란 사회 안에서 고령자 자신 및 고령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15) 辻正二(2000), 鳥羽美香(2005), 藤田綾子(2007), 手島洋(2015)을 참고로 하였다.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관점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령자관은 한 사회의 가치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기준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가 행해지게 된다(手島, 2015: 24).

일본의 고령자 문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나는 고령자 측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고령자 문제이다. 전자는 노화, 질병, 독거, 노후 불안, 입소시설 부족 등 고령자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의미하고, 후자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노인의 사회적 부양문제, 개호문제, 노동력 부족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辻, 2000: 1-2). 고령자관 및 고령자 문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고령자 연구에 있어서 분석의 전제가 되며, 특히 연령주의(에이지즘)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일본의 고령자관 및 고령자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1945년 이전 : 이에(家)제도 안에서의 효, 경로사상

일본에서는 에도(江戸)시대 이전부터 '늙은이', '노인'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지금은 '고령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관은 1945년 이전까지는 유교적 효행사상을 토대로 한 노인부양 및 경로사상이 일반적이었다. 효행사상의 핵심은 효(孝)로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 나아가 연장자(노인)를 존중하는 경로사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효 사상 및 경로사상은 이에(家)제도 안에서 더욱 공고해지면서 노인부양 시스템으로서도 기능하였다.

일본의 구 민법에서는 이에를 근원으로 하는 가부장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장남이 가계계승과 부모부양의 의무를 지니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규범이었다. 그리고 이에제도 하에서 고령자의 생활이나 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특히 은거(隱居)제도¹⁶⁾가 있어서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경애의 대상이자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2) 1945년~1980년대 : 타테마에로서의 경로사상과 혼네로서의 고령자관, 고령자 문제 부각, 사회적 약자에서 사회참가주체로서의 고령자 상 추구

16) 은거는 일본의 민법상 제도로서 호주가 생전에 가장권을 상속인에게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국현법 시행(1947년 5월 3일)에 따른 호주제 폐지와 함께 은거제도도 폐지되었다.

전후 새로운 민법시행으로 이에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중심에서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변모되면서 노인부양이나 효, 경로사상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도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는 고도경제성장기로 도시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1960년에는 국민개연금체제가 정비되면서 노인부양은 부분적이지만 사회화되기 시작했다. 노인부양이나 가족규범에 대한 가치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건강한 노인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초반까지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辻, 2000: 3).

1964년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서 명시되었다. 본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였고, 「노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기본이념이 제시되었다. 본 법에서는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동생산성 가치' 측면에서 고령자를 중시한 측면도 있으나(手島, 2015: 26),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 간주한 측면도 있었다.

70년대는 급속한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에 대한 사적부양의식은 더욱 약해지고, 와상노인, 노인개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고령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중시한 기존의 경로사상은 「타테마에」(タテマエ: 겉모습, 형식)로서 남고, 생산성을 상실한 고령자에 대한 무능력, 쇠약함을 강조하는 부정적 태도나 이미지가 「흔네」(ホンネ: 본심)로서의 고령자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약자 이미지가 더욱 확대되었다(副田, 1986). 개개인들 사이에서 흔네로서의 노인에 대한 경시, 멸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급격한 기술혁신, 젊은 세대 중심의 가치체계, 소비생활 중심, 개인생활 중시, 죽음과 결부되는 고령자의 질병, 죽음에 대한 죄악감 등이 있다(奥山, 1999b).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80년대 들어와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80년대는 '고령화사회론'(일본형고령사회론)의 관점이 주류화 되면서 노인빈곤이나 질병 등 고령자 개인적 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복지, 연금, 노동, 의료, 사회보장 문제 등이 고령자 문제로 부각되었다.

1986년 『장수사회대책대강』이 내각 결정되면서 '고령자의 사회참가 기회를 확보하고 삶의 보람을 높이며, 지역연대 및 사회 활력을 높이는 참가형 사회 형성'이 구체적인 정부 방침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1988년 『장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하여』에서는 지금까지의 고령자 위치 및 이미지가 '보호나 원조를

받는 대상'에서 사회참가의 '주체'로 바뀌게 된다.

요약하면, 전후 80년대까지 사회 표면적으로는 경로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가족 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의식 안에서는 점점 회미해지고 있었다. 노인 문제는 노인개인보다는 '노후'라는 연령에 초점을 두고 노후의 생활문제, 퇴직 후의 문제로 변화하였다. 80년대에는 고령자 개인이 아닌 고령자 인구 증대로 초래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정부에서도 지원해야 할 원조대상이 아닌 사회참가 주체로서의 고령자상을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다.

(3) 1990년대 :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정부의 고령자정책 본격화, 활력있는 고령자 상 구축

전후 자본주의 경쟁과 시장원리, 이윤추구, 대중문화의 급속한 침투와 더불어 젊은 세대 중심의 소비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젊음은 긍정적인 것으로, 그 반대 극단에 있는 늙음은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또한 핵가족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더욱 더 길어진 노후기간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은 약화되고 취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증가하였다.

深谷(1995)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를 볼 때 가장 좋은 경우는 「따로 사는 외할머니」였고, 가장 싫은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다. 손자입장에서 같이 사는 조부모의 경우 잔소리가 심해서 싫고, 곁에서 조부모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커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도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嶋村(2002)의 조사결과 「일본사회에 경로사상이 있다」고 대답한 대학생은 전체의 33.9%이고, 노인을 산속 등에 버리는 구조에 대해서 「일본사회에서는 노인을 배제하려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7.1%를 차지하였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체력쇠퇴', '완고함', '늦음', '시끄러움', '부자유', '외로움'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辻(2000)의 조사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드러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일본사회에 경로사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은 24.3%, 「없다」라는 응답은 74.6%로 나타나, 응답자의 7할 이상이 지금 일본에는 경로사상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990년대 일본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고령자정책이 본격화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길어진 고령기에 대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수동적 관

17) 본 조사는 宮崎大學, 宮崎女子短期大學, 山口大學 3개 대학의 1학년을 대상(총 535명)으로 1990년 12월부터 1991년 5월에 실시한 「若者の高齢者に關する意識調査」이다(辻正二, 2000: 117).

점이 아닌, '삶의 보람', '자아실현', '사회참가'라는 능동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대두된다는 점이다(藤田, 2007). 1993년 남성의 평균수명은 76세, 여성은 82세로 고령화율 13%가 되면서 고령자를 모두 같은 집단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65~74세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자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1994년 고령화율 14%를 넘어서면서 일본은 고령사회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장수사회',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고령자 관련 법제도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전 국민에게 공포하기 시작한다. 가정에서 고령자를 개호하는 것이 고령자 학대로 이어지는 사태를 보고, 고령자 개호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적개호보험제도를 창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게 된다.

1995년 일본정부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령사회대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한다. 1997년 『후생백서』(평성9년판)에서는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로서, 이러한 상황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령사회를 어떠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회적 과제라고 하였다. 특히 본 백서에는 젊은이들의 고령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데, '수수함', '늦음', '약함', '비생산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고령자의 사회참가나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연대 구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이지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백서에서는 앞으로는 「제2의 현역세대」로서 노동, 여가,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활약해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이러한 고령자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사회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입견을 버리고 세대 간 교류와 고령자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厚生労働省, 1997). 1999년 『골드플랜 21』에서도 '노인=약자'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고령자가 사회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활력 있는 고령자 상'을 구축해 나아가야 함을 제언하였다.

90년대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법·시책·정비에 힘을 쏟았고, 거기에서 추구하는 고령자 상은 제2의 현역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가를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자의 모습이다.

(4) 2000년대 이후 : 고령자 인식 개혁, 고령자의 자립과 활약 강조, 공생사회 구축

2000년대는 90년대의 정부의 고령자관이 더욱 명확해지고 확산된다(표 3-1). '고령자=사회적 약자'라는 획일적인 인식을 개혁하고, 고령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실태에 맞

게 또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 고령자들의 의욕과 능력을 살리기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된다. 특히 '고령자의 자립',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구축', '활력 있는 고령자상', '세대 간의 새로운 관계구축'과 같은 관점이 강조되었다.

2006년 일본은 고령화율 20%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정부는 고령사회대책을 전면에 내걸고 다양한 분야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 참가형 사회실현'과 '평생현역사회 실현', '공생사회 실현', '1억총활약사회'를 핵심적인 기본이념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누구든지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한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활약하는 공생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이다.

[표 3-1] 2000년대 일본의 법제도 및 시책에서 나타난 고령자관

법제도, 시책	내용	고령자관
고령 사회 대책 기본법 (1996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전체를 보면 건강하고 활동력 있으며,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그러나 고령자 개개인의 모습이나 상황은 다양하며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고령자의 실태를 근거로 건강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존재라는 종래의 획일적인 고령자상을 탈피해서 시책을 전개해야 한다. -연령만을 가지고 고령자를 차별하는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래의 획일적 고령자상(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탈피하여 고령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시책 필요 -일률적인 고령자 이미지 인식타파를 위한 국민의식개혁 필요
고령 사회 대책 대강 (1996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를 '지원받는 자'로 일률적으로 보는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를 없애고,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살리고 다양한 방해요인을 없애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 2012년 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의욕이나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령자상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의욕과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욕이나 능력이 있는 고령자는 지원하는 자로서 가능 -전원참가형사회 실현을 위한 고령자 고용취업대책 추진,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

후생노동백서 (매년 발간)	<p>자에게는 지원하는 측이 되도록 국민의 의식개혁을 도모한다.</p> <p>-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형태 구축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동시에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활약의 장을 창출하는 등 사회참가의 기회확보를 추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백서: [평생에 걸쳐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후생노동행정] -많은 고령자들이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활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욕 있고 능력이 있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자립강조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 필요, 고령자도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백서: [현대생활을 둘러싼 건강리스크 -정보와 협동으로 만드는 안전과 안심-]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사회에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취업의욕을 가진 고령자가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사회의 주체로서 활약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의 현역으로서 활력있는 고령자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기가 길어짐에 따라 "제2의 현역"으로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사회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백서: [생활과 사회안정을 위한 자립지원] -취업의욕을 가진 고연령자가 그동안의 지식과 기술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는 것은 고연령자 자신의 안정된 생활영위,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자립과 자립지원 강조

고령사회백서 (1996년부터 매년 발간)	<p>식과 경험을 살려,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현역사회" 실현은, 고령자 자신의 건강과 삶의 보람으로 이어지므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p> <p>-생활과 삶의 보람을 동시에 만드는 "지역공생 사회"로의 패러다임전환: 지원받는 자, 지원하는 자로 분리되었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생활과 삶의 보람을 동시에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비전을 제시해 간다.</p>	<p>-공생 사회 안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함</p>
	<p>○ 2002년 백서</p> <p>-대다수의 고령자가 가난하고 약하며,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종래의 이미지는 실태로서도 의식으로서도 다르다. 고령자는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고령기를 맞이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	<p>-의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자립적이고 활동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고령자가 있음을 지적</p>
	<p>○ 2003년 백서</p> <p>-건강면, 경제면에서 어려운 종래의 획일적인 고령자상을 바꾸고, 그것을 전제로 한, 그리고 연령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p>	<p>-종래의 일률적인 고령자상을 바꾸고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도 필요</p>
	<p>○ 2007년 백서</p> <p>고령자=지원받는 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고령자는 대체로 건강하며 취업이나 사회참가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p>	<p>-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필요</p>
	<p>○ 2012년 백서</p> <p>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의문을 던진다. 또한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살리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p>	<p>-획일적인 고령자상의 문제점 지적</p>
	<p>○ 2016년 백서</p> <p>-1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을 위해 긴급히 실시해야 할 대책</p> <p>-고령자의 활약의 장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고 연금을 포함한 소득전체</p>	<p>-고령자의 활약의 장, 자립기반 지원강화</p>

<p>기반을 높이는 것으로 고령자세대의 자립을 건강면과 경제면에서 지원한다.</p> <p>-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인구감소사회에서 국가의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p>	
---	--

자료)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www.mhlw.go.jp/>)를 토대로 필자 작성.

2000년대 정부시책에서 보이는 고령자관을 정리해 보면, 종래의 지원 대상으로서의 노인=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진 노인이라는 획일적 고령자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지닌 고령자, 특히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사회에서 활동적인 주체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요개호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양,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공생사회 실현이라는 고령사회 대책의 필요성 하에 정부가 의도하는(지향하는) 고령자관이 절제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手島, 2015: 28).

일본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 사회적 상황에 따라 효와 경로의 대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 사회참가 주체 등 다양한 가치관의 갈등 안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타테마에로서의 경로사상과 혼네로서의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는 이중적 고령자 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手島, 2015: 28). 나아가 정부의 고령자 대책 방침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처해 있는 일본사회의 전략적 대응으로서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의존적인 고령자 증가를 막기 위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기존의 획일적 고령자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 있는 고령자를 사회적 주체로서 제 활동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적인 고령자상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볼 수 있다.

2. 연령주의의 개념

일본에서 연령주의(ageism) 용어는 일반적으로 '에이지즘(エイジズム)'이라는 외래어로 표기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령차별', 특히 '고령자 차별'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에이지즘 용어 자체에는 '고령'이라는 의미가 없으나, 지금까지의 에이지즘 연구에서는 모두 고령자에 대한 것으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牛島, 2011: 28).

에이지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연령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연령집단을 고령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現代エイジング事典, 1996; 新版フェミニズム事典, 1991; 人權事典, 1997; エイジング基本用語集, 2003). 『大辞林』(第三版の解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별, 특히 고령자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デジタル大辞泉에서는 「연령에 의한 차별, 강제퇴직, 주거퇴출 등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고령자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여성학습재단에서는 「연령차별, 특히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말함. 고령자를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게 보는 것, 또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식하고 차별 하는 것. 성차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차별문제의 하나임」으로 규정하고 있다(<http://www.jawe2011.jp/>).

일본국내에서 발간된 에이지즘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 기타 문헌 등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는 미국 학자들이 제시한 것을 대부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고령자 차별이라는 관점에서의 에이지즘 연구가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¹⁸⁾. 먼저,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초대소장이었던 노년학자 버틀러(Butler, R.N.)가 최초로 제시한 ageism의 개념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버틀러는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의 논문에서 에이지즘을 최초로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고령자들을 조직적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해서 차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95년 "The Encyclopedia of Aging"에서는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이 피부색이나 성별에 의해 행해지는 것처럼, 에이지즘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고정관념이나 차별의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G.L. Maddox, ed., 1995; 辻, 2000: 15에서 재인용).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에이지즘 정의는 미국의 노년학자 펠모어(Palmore, E.B.)가 제시한 것이다. 그의 연구(1990=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는 일본에서 奥山正司 · 秋葉聰 · 片多順 · 松村直道(1995)와 鈴木研一(2002)에 의해 번역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펠모어(1999=2002: 21~24)는 에이지즘을 「어떤 연령집단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편견 또는 차별」로 규정하였다. 어떤 연령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혹은 고정관념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을 말하며,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 차별이란 그 연령집단의 구성원에 대

18) 일본에서의 노인연구는 전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사회 병리학, 가족사회학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사회문제론 관점에서 노인문제론, 노후문제론에 대한 연구, 인구론 관점에서의 고령화사회론, 장수사회론, 초고령사회론이라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노인차별이라는 관점에서의 에이지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다(辻, 2000: 11).

해 부당하게 부정적인 취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긍정적 에이지즘이란 고령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 펠모어의 에이지즘 개념은 부정적 편견, 부정적 차별, 긍정적 편견, 긍정적 차별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에이지즘의 원인으로 개인적 원인, 사회적 영향, 문화적 원인의 3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한편, 일본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연령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南(2004)은 「에이지즘은 고령사회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보는 편견(태도)과 차별(행동)을 총칭한 개념」으로 보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이어 연령차별이 3대 차별로 다루어지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에이지즘이라는 용어도 보편화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은 공공연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데 반해 에이지즘은 용어로도 사건으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¹⁹⁾.

鳥羽(2005)에 따르면 에이지즘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며, 「광의적 의미에서는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지만, 협의적 의미에서는 고령자가 나이 들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견의 대상이 되거나 다양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鳥羽, 2005: 93) 에이지즘이라는 용어가 아직 일본사회에 일반화 되지는 않았지만 「더러운 영감탱이」, 「더러운 할망구」, 「노망난 노인」 등의 용어는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용어에는 격렬한 공격성과 증오감 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에이지즘을 야기하고 또한 에이지즘의 결과로 이러한 용어들이 일상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杉井(2007)에서는 에이지즘을 「연령차별」로 정의하고, 「고령자에 대한 뿐리 깊은 편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체계적인 스테레오타입화 및 차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1970년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처우가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副田義也가 지적한 태마에로서의 경로사상이 수용되었지만 거기에 있는 노인은 과거사회의 '주체'이고, 현재는 경애(敬愛)대상인 '객체'로서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저에는 혼네로서의 고령자에 대한 멸시와 무관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였다.

工藤(2011)의 연구에서는 베틀러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에이지즘을 「고령기의 심신의 기능저하에 대한 몰이해나 멸시, 고령자의 능력이 현대사회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일방적 평가에 의한 고령자 차별」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나이든 사람은 심신이 약하다」, 「고령자는 모두 완고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처럼,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거나 차별적 행동을 하는

19) 1991년~2002년까지 마이니치신문에서 '에이지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횟수를 검색하기 위해 키워드검색을 한 결과 4건이 검색되었다. 1984년~2003년 아사히신문을 검색한 결과 80년대는 2건, 90년대는 13건이 검색되었다. 특히 뉴스기사 등에서 검색되지 않고 오피니언이나 기고, 사설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사회문제로서의 기사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南, 2004: 2).

것을 에이지즘으로 보았다(工藤, 2011: 2)

일본의 에이지즘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이다. 특히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들어오면서 고령자문제가 고령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전 국민이 당면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부터 에이지즘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종차별,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문제로의 쟁점화는 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의 축적 또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에 있어서 연령차별과 관련된 법제화도 2007년 고용대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ADEA)에 비하면 그 실제적 내용 및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山添, 2013: 13).

일본에서 에이지즘 관련 논의나 전개가 뒤쳐진 배경에는 다음의 요인이 있다(山添, 2013: 13-14). 첫째,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에이지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 스스로 권리주체의식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辻, 2007: 27). 둘째, 이에제도 하에서부터 노인을 배려하고 경로하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에도시대에 효도와 유교도덕사상이 일반 서민에게 침투하면서 경로사상과 우노(優老)에 대한 예의, 양노(養老)의 실천이념이 현대에까지 이어졌다. 전통적으로는 장수에 대한 축복 등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회 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현대에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고령자 이미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즉,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다른 한편에서 커지고 있었던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편견, 고령자 차별문제가 사회표면적으로 표출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1975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미국과 일본의 노인비교연구를 한 펼모어는 문화가 가지는 거대한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그는 일본은 경로사상이 깊은 사회로 근대화가 진행되어도 문화 구조 안에서 노인을 극단적으로 경시하는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저서에서는 일본 노인이 처한 전체적 상황이 호의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에이지즘에 대해서는 「처우나 차별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이지즘은, 일본에서는 양적·질적 측면 모두 미국 이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일침을 가했다(Palmore, E.B. 1990, 辻, 2007: 24에서 재인용). 이것은 일본사회가 고령자에 대해 경로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대화 과정에서 분명히 회박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에이지즘을 야기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辻, 2007: 24).

제2절 연령주의의 구성요소

연령주의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개념에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차별, 부정적 태도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은 거의 유사하다. 아래에서는 연령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1. 편견·고정관념

버틀러(1969)는 에이지즘을 「완고(편협)한 행위(form of bigotry)」로 칭하며, 「연령 차별(age discrimination)」, 「편견(prejudice)」 등의 용어로 표현하였다(Butler, R.N. 1969: 243, 牛島, 2011: 27에서 재인용). 편견은 「특정대상에 대해 편향된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하며, 차별은 「그러한 편견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열등하고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牛島, 2011: 27). 버틀러(1975)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6가지의 「비현실적 신화」로 제시하였다(표 4-2). 그리고 이러한 신화나 고정관념은 노인에 대한 지식부족, 다양한 노인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지만 보다 더 강력한 요인은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고령자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라고 보았다(Butler, R.N. 1975=1991: 14, 南, 2004: 4에서 재인용).

[표 3-2] Butler(1975)가 제시한 고령자에 대한 편견 – 6가지의 비현실적인 신화

신화	편견
노화 신화	나이가 들면 사고와 운동기능이 둔해진다.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비생산성 신화	노인은 유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이탈 신화	노인은 직업생활이나 사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안의 세계에 은둔하게 된다.
유연성 결여 신화	노인은 변화에 순응할 수 없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노망 신화	노화와 함께 노망(치매)은 피할 수 없다.
온화 신화	노년기는 일종의 유토피아이다.

자료) Butler, R. N. (1975) Why Survival? : Being old in American. Harper & Row, Publisher.

内蔵耕二監訳(1991)『老後はなぜ悲劇なのか? -アメリカの老人たちの生活-』ザカルフレンド社.

에이지즘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2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부정적 편견은 부정적 고정관념(감정)과 부정적 태도(태도)로 구성된다(Palmore, E.B. 1990=奥山他訳, 1995: 22-24). 고정관념이란 고령자 집단에 대한 오해 혹은 과장된 부정적 견해를 의미하고, 부정적 태도란 고령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말한다. 고정관념은 지각적(인지적)인 것에 반해, 태도는 감정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관계로서 부정적 고정관념이 부정적 태도를 야기하고, 부정적 태도가 부정적 고정관념을 지지한다. 즉, 편견의 기저에는 고령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Palmore, E.B. 1990; 南, 2004: 11에서 재인용).

일본의 에이지즘 관련 문헌들을 보면 고령자의 편견 및 차별연구를 지속해 온 미국의 노년학자 펠모어의 유형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浜口, 1996; 南, 2004; 鳥羽, 2005; 佐野・檜原, 2011; 山添, 2013; 手島, 2015). 그는 고령자에 대한 9가지 부정적 편견 - 질병, 성적불능, 추함, 지능 쇠퇴, 정신병, 무의함, 고독(고립), 빈곤, 우울-을 들면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것들이 근거 없는 편견에서 비롯되며, 아울러 고령자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표 3-3).

[표 3-3] Palmore(1990)가 제시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부정적 편견	실제
질병	대부분의 고령자는 환자나 장애인이다.	대부분의 고령자(65세 이상의 약 78%)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성적불능	고령자는 더 이상 성행위나 성적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거나 이상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대부분은 성에 관심이 있으며, 성적능력도 가지고 있다.
추함	고령자는 추하다.	미국에서는 노인과 추함, 짊음을 아름다움을 연관짓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노인의 특징에 대해 공경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혜와 성숙, 봉사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펠모어 1995).
지능쇠퇴	지능, 특히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중년을 넘기면 쇠퇴한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
정신병	대다수 또는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망기"가 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에게 있어 정신병은 일반적인 것으로 피할 수 없거나 치료할 수 없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망기가 없으며, 정신병은 일반적인 것도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치료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익함	대부분의 고령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일을 계속하는 소수의 고령자는 비생산적이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고독	대부분의 고령자는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고독한 생활을 하며 혼자 살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빈곤	고령자의 대부분은 빈곤하다.	고령자의 경제적 지위는 빈곤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빈곤선 이상의 수입이 있다.
우울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성적 불능으로 도움이 안 되며, 고독하고 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증이나 자기혐오 등 우울성향이 크다.	중증의 우울은 고령자가 젊은이 보다 더 적다.

자료) Palmore, E.B.(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奥山正司・秋葉聰・片多順・松村直道訳(1995)『エイジズム－優遇と偏見・差別』法政大学出版局.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사회적 약자라는 고령자 이미지를 지적하고 제2의 현역으로서의 새로운 고령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인식개선과 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후생백서』(1997년)에서는 사람들이 '노화'나 '고령자'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데 이를 「노인신화(神話)」로 칭하였다(표 3-4). 일본정부는 노인신화는 대부분 고령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비롯되므로 고령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표 3-4] 일본 후생백서(1997)에서 제시한 6가지 '노인신화'

노인신화	실제
신화1. 노화여부는 연령에서 결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노화지표로 「역연령(曆年齢)」(살아온 년 수)을 사용함. 대표적 예: 노인복지법 대상(65세 이상인 자), 인구통계상 노년인구(65세 이상 인구)-1956년 국제연합에서 고령화율을 65세 이상 인구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것이 노년인구의 기준이 됨. ○ 65세를 고령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오늘날(당시 1997년) "인생 80세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임. 내각부 국민의식조사(1993)에서 "노인은 몇 살 이상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65세 이상이다라는 응답은 3할도 안 됨. 응답자의 57%가 79세 이상이라고 함(内閣府總理大臣官房廣報室, 1993 「高齢期の生活イメージに関する世論調査」).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63년

	<p>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였고, 지금(1997년)은 74세 이상이 6%정도 차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법률이나 통계규정은 차치하더라도, 신체·정신·정서적인 면에서의 노화 상태는 개인차가 상당히 큰데, 연령만을 기준으로 해서 노화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고령자를 연령으로만 획일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신체·정신적으로 개인차가 큰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신화 2. 고령자는 대부분 건강하지 못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의식조사에서 65세 이상인 자는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응답이 약 2할이며, 대다수의 고령자는 '좋다'라고 응답함(厚生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平成7年國民生活基礎調査」). 최근 고령자개호가 문제시되고 있으나 고령자 전체를 보면 건강과 일상 면에서 지장이 있다고 하는 자는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94.5명임.
신화 3. 고령자는 비생산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상당수는 취업 중이며, 이 외에도 생산적인 활동에도 종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자취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으며(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高齡者の生活と意識に關する國際比較調查(平成8年)」. 특히 70세 후반에도 30% 정도가 일을 하고 있음. 고령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 ○ 최근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서 실버인재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참가중인 고령자 회원은 30만 명이 넘음. 또한 봉런티어나 사회참가 활동도 증가하고 있음. ○ 생산성과 연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음. 생산성은 개인적 차이가 크며, 일의 내용이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음. 각종 연구조사결과에서 보더라도 고령이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관리능력이나 전문적 능력은 오히려 연령에 따라 높아진다는 의견도 많음.
신화 4. 고령자의 두뇌는 젊은 이 만큼 명석하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지능과 연령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할 수 있음. 미국연구에서는 지능 중 유동성 지능(도형분별이나 도형구성 과제 등으로 측정하는 생육,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능)은 청년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에 반해, 결정성 지능(언어나 사회적 지식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학습경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지능)은 고령기가 되어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음. ○ 우리나라 고령자를 74세부터 10년 걸쳐 추적 연구한 결과, WAIS라는 지능 검사척도에서 동작성 IQ(동작의 민감성, 정확성)은 저하되었지만, 언어성IQ(지식, 이해력)은 저하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음(財團法人東京都老人

	<p>總合研究所プロジェクト研究『老化と壽命に關する長期的横断的追跡研究報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화로 인해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신경계 질환으로 야기된 경우가 많음.
신화 5. 고령자는 연애나 성 (性)과는 무 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가 윤택한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연애나 성은 중요한 부분임.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남녀 4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성간의 애정이나 성적 관계를 희망하는 사람이 남성 94%, 여성 70%라는 결과가 나왔음. 고령자는 연애나 성적인 측면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함. ○ 노인의 연애와 성에 대한 논의는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도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노인시설 측의 기본 방침으로서 그것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약 8할 정도로 나온 연구결과도 있음.
신화 6. 고령자는 모두 비슷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매우 위험함. 고령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습관이나 환경의 차이로 다양한 심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큰 개인차를 가지고 있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고령사회에 밝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두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고령자들은 정말 다양함.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 대부분은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기인함.

자료) 厚生労働省『厚生白書』(平成9年版)에서 발췌요약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인식이 일본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佐藤·長嶋(1976)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고령자에 대해 '외롭다', '약하다', '어둡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嶋村(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한편으로는 '풍부한 지식', '지혜로움', '박식함', '풍부한 경험', '인생선배', '착함', '상냥함' 등의 긍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체력쇠퇴', '완고함', '느림', '시끄러움', '부자유', '외로움'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교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호의적인 고령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조부모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鳥羽(2005)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고령이용자에 대한 편견은 잠재적·현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노인시설 직원들은 고령자들이 시대극이나 트로트, 민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곧잘 그것을 염두한 행사나 일상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것 역시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鳥羽, 2005: 97).

2003년 내각부에서 전국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 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상당히 있다고 생각함」 5.9%, 「다소 있다고 생각」 51.2%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杉井(2007)의 연구에서는 일본사회의 에이지즘 의식을 분석하였는데 고령일수록, 질병이 잦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젊은 사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고령자들은 개별성이 없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杉井, 2007: 114). 또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함」(5.9%), 「그다지 없다고 생각함」(38.3%), 「다소 있다고 생각함」(51.1%), 「확실히 있다고 생각함」(4.7%)로 나타나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사회 안에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과반수를 넘었다(杉井, 2007: 80).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고령자를 단일집단으로 범주화 시켜버린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는 획일적이지도 않고 매우 다양한 존재이다. 2013년 내각부 조사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약 7할이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능측면에서도 교육, 학습, 경험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결정성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쇠퇴하지 않는다(岡崎他, 2008: 40). 山添(2013)는 '고립(고독)'이나 '빈곤'은 무연사회(無縁社會)에 있어서 완전히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고령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 '추함'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늙음은 추하고 젊음은 아름답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 '성적불능'은 생식불능 유무와 혼동한 것이며, '무익'은 편견에 의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점을 들어 고령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나 고정관념, 노인신화에 대해 반박하였다(山添, 2013: 15). 都築(2013)는 『독거노인 스타일』에서, 독거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활기차게 잘 살고 있는 고령자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십년동안 혼자서 일을 하며 고독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술집주인, 잡화점 주인, 회사원 정년퇴직 후 혼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는 작가, 영화관 사장 등을 예로 들며, 그들은 「'자신의 노화'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노화'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都築, 2013: 346-351).

2. 태도

노년학자 버틀러(1980)에 의하면, 에이지즘은 다음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인, 노년, 노화과정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노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둘째, 노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 셋째,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영속시켜 그들의 삶의 총족기 회를 줄이고 인격적 존엄을 해치는 제도상의 정책적 관행이다. 즉 그는 에이지즘이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신념, 차별적 행위, 제도 및 정책적 관행이 상호 관련되어 강화되고,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왜곡시켜 버린다고 보았다(加澤, 2007: 315). 펠모어(1995)는 연령만을 가지고 고령기를 '최악의 시기'로 보고 고령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을 「부정적 태도」라고 하였다. 부정적 태도의 기저에는 고령자들에 대한 건강하지 못함, 질병, 신체적 쇠퇴 등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奥山他, 1995: 33).

우리사회에 에이지즘이 지속되는 데에는 언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자에게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령자상이나 이미지에 근거한 표현이자 내용이다(藤田, 2007: 56). 그리고 그러한 언어는 다시 고령자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Berelson & Steiner, 1964; Caporael, Lukaszewski and Culberaton, 1983; Ryan, Hamiltion and Kwong See, 1994; 加沢, 2007: 316에서 재인용). 鳥羽(2005)는 노인주간보호 사업을 예전에 탁(託)노소라고 했었는데, 이는 원래 탁아소를 고령자 분야에 그대로 적용해서 부르게 된 것으로, 탁아는 유아를 「맡기다」는 의미이며, 고령자 역시 「맡기다」로 연결된다. 실제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가족이나 직원도 통상 「잘 맡아주십시오」, 「잘 맡겠습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령자를 인격적 주체로 본다면 「맡기다」라는 용어는 에이지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고령 환자들에게 건네는 베이비 토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종사자들은 그것을 에이지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連沼, 2003). 펠모어는 고령자의 언어사용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단순화, 명료화, 감정적 어조, 들뜬 어조, 베이비토크 등)에서 「의료종사자들은 고령자를 노인취급하고 그들을 비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며, 이를 일종의 에이지즘이라고 하였다(鳥羽, 2005: 97에서 재인용). 山本(2008) 역시 의료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고령자(고령기)를 '제2의 유아기'로 보고 그들을 힘없고 단순하며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그들에게 유아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에이지즘의 또 다른 형태라고 지적하였다(山本, 2008: 77).

의료현장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고령자들에게 보이는 부정적 태도는 다음의 4가지 원인에 기인한다(パルモア, 2002: 21). 첫째, 종사자들은 정상적이 노화과정에 대

한 교육을 대부분 받지 못했다. 때문에 그들은 고령자의 병리학적 측면이나 질병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체나 심리적인 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정상적 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²⁰⁾. 둘째, 그들은 고령자를 죽음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강한 공포를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셋째, 그들은 매우 허약하거나 질병에 걸려있거나, 또는 치매노인을 주로 상대하는 등 고령자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그릇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고령자와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령자 대부분을 자신들이 대하는 환자와 동일시해서 생각해 버린다. 小谷(1993)는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극히 부정적인 노인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을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가운데 고령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강화·고착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넷째, 자신의 부모나 고령자 친척들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과 고령 환자를 취급할 때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부정적 태도로 표출되고, 나아가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위험성을 가진다. 특히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고령자관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문제는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일반 대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小谷, 1993: 97).

3. 차별

차별 역시 에이지즘의 한 형태이다. 차별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라는 기본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편견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공격적 표출을 수반하지는 않는다」(山添, 2013: 14).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별은 편견에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パルモア, 1995: 34).

펄모어(1995)는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부정적 차별을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미국에서 나타나는 고령자 차별의 일반적인 형태 5가지를 제시하였다(パルモア, 1995: 34-36). 첫째, 고용차별로서, 채용, 승진, 해고, 퇴직 등 가장 분명하고 심각한 차별이다. 둘째, 정부기관이나 연방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차별로, 지역정신보건센터, 법률서비스,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셋째, 고령자 무시, 학대, 강제시

20) 東條(1987)는 특별양호노인홈 직원을 대상으로 FAQ질문지를 사용하여 이들의 의식 및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낮은 직원이 상대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입소 등 가족 내 차별이다. 넷째, 고령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자주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주거차별이다. 이 때문에 고령자들은 고령자전용특별주택에 밀집하게 된다. 다섯째, 고령자에게 충분한 의료케어를 제공하지 않는 헬스 케어 차별이다.

일본에서 차별이라 하면 주로 인종차별, 아이누(アイヌ)민족차별, 부락차별, 재일조선인 차별, 오끼나와의 아마미(奄美) 차별 등이 사회문제나 차별문제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여성(성)차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山添, 2013: 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차별, 고령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령자 차별은 크게 개인적 차별과 기관적(제도적)차별로 구분된다(パルモア, 1995). 전자는 고령자를 필요 없는 약자로 간주하여 배제하는 행위로서 고령자 학대나 착취로 나타난다. 후자의 대표적 예는 정년퇴직이다(山添, 2013: 15, パルモア, 1995: 5). 1970년대 일본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55세였다. 1986년 『고연령자 등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년이 60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무’가 명시되었고, 1994년 법 개정으로 1998년부터는 정년 60세가 ‘법적의무’로 되었으며, 2005년 법 개정으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의 고용의무가 규정되었다. 이러한 정년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라는 명백한 제도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정년연령 55세, 60세, 65세의 기준설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단지 「정년연령을 넘기면 작업효율이 나쁘다」라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이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山添, 2013: 15). 정년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노동자의 능력이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제도로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차별의 대표적 형태이다(手島, 2015: 31).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이다.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여 수급자 범주로 취급함에 따라, ‘65세가 되면 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자격상실이 일반적이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초고령사회의 진전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령자도 가능한 근로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령자를 그 이전 세대와 동일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또는 부정기적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만 보더라도 은퇴 후 임시적·단기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문서에서는 고령기(65세 이상) 노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65세가 되면 연금수급과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저변에는 노동자로서의 고령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手島, 2015: 31).

이처럼 일본의 고령자 차별은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65세를 기점으로 고령자 라벨이 붙여지고, 그것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신에, 불리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한정된 근로환경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 이는 과거의 은거제도와 유사하지만 그때는 고령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공경이 전제 되었다면, 현대의 고령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手島, 2015: 32).

제3절 영역별 연령주의

1. 노화

노화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나이를 먹는 과정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Webster, 1987; パルモア, 1995: 15에서 재인용). 그리고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모든 육체적 변화-쇠퇴(노쇠)와 향상(급성질환의 감소 및 알레르기 반응감소)」이지만, 실제로는 쇠퇴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기능유지나 발달은 경시되는 경향이 크다(パルモア, 1995: 57). 이러한 노화의 정의는 ‘진행성’과 ‘불가역적인 쇠퇴’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회복, 개선, 성장, 발달 및 연령에 따른 능력향상의 측면은 무시되고 있다. 모든 고령자에게 이러한 노화 또는 쇠퇴를 볼 수 있다는 전제가 바로 부정적 에이지즘이다(パルモア, 1995: 15).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노화’, ‘나이듦’은 에이지즘을 강화하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노년사회학에서는 고령자의 빈곤, 고독, 질환, 무능 등의 특징을 ‘고령자 문제’로서 접근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고령자의 기능, 지혜, 성장의 잠재성, 고령자의 공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탈이론에서는 고령자가 사회참가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Cumming & Henry, 1961; パルモア, 1995: 61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주장은 고령자는 무익하며 은둔하기 쉽고 활발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パルモア, 1995: 61). 하위문화이론에서는 고령자는 생물학적·경제학적·지위상실문제에 근거한 독특한 하위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Longigo, 1987; パルモア, 1995: 61에서 재인용). 단계이론에서는 「고령자는 극도의 육체적 쇠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신적 과정이 쇠퇴하고, 기질적 뇌질환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노년기에 도달한 개인은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한다. 행동이 급격히 제한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된다.... 일반적으로 시설수용(입원, 입소)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의 생활은 유쾌하지 않다」(Atchley, 1988: 7-8; パルモ아, 1995: 63)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이론은 노화를 연령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연령과 결합된 새로운 고정관념을 만들어 버린다는 점, 더욱이 나이 드는 고령자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장수에 따르는 만족감, 지혜, 존경 등의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パルモア, 1995: 63-64).

노년기와 고령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늙어 빠짐」, 「도움이 안 됨」, 「케케묵음」, 「노망」과 같은 「오래됨」의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듦」과 「죽음」을 혼동하는 것에서 초래된다. 정당한 나이듦의 과정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반면, 죽음에는 쇠퇴, 장애, 의존, 고통, 비참함이 동반되며, 죽음의 과정은 연령과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나이듦과 죽음의 과정을 혼동하고 나이듦을 죽음의 서막으로서 받아들여 그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나이듦과 임종을 구별할 수 있고, 죽음이 연령과 상관없이 찾아오며 반드시 나이듦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줄어들 것이다(パルモア, 1995: 55).

노화나 나이듦, 고령자는 흔히 연령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 살부터 노화나 노년기가 시작되는지, 고령자는 몇 살부터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1997년 내각부 국민의식조사에서 「노인은 몇 살 이상인가」라는 질문에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3할도 채 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57%가 75세 이상이라고 하였다(内閣府總理大臣官房廣報室, 1993). 또한 2012년 내각부의 고령자의 건강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지원받아야 할 고령자 연령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75세 이상」(28.7%)이었고, 「80세 이상」(26.7%), 「연령으로 판단 할 수 없다」(13.8%)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内閣府, 2012).

일본의 법제도에서는 고령자를 대부분 65세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일정하지는 않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규정이 없다. 『고연령자고용 안정법』 제2조 '고연령자'란 55세 이상인자,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기고령자'(65~74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인 자), 『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양호자에 대한 지원등에 대한 법률』 제2조 고령자는 65세 이상인자, 『주택금융공고법』 제21조 5 60세 이상인자, 『고령자 주거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60세 이상인자,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 연령에 근거하여 노화 및 고령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 · 정신 · 정서적인 면에서의 노화상태는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연령만으로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노화를 나이가 들에 따라 수반되는 심신능력의 변화라는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안에서 노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바라볼 때의 관념(노인관, 노년관)이나 사회의 가치원리(가치관, 가치규범)이다. 그리고 그 가치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처우(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의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現代社会学事典, 2012: 120-121). 연령은 사회가 인간에게 편의상 부여한 개념이며, 거기에 다양

한 관점을 붙임으로서 에이지즘이 생겨난다(関, 2008: 45).

일본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고령자의 증가로 나이듦을 인간의 생애에 걸친 변화의 발달과정으로 보며, 나이듦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노화를 생리적·의학적 측면만이 아닌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접근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手島, 2015: 30). 또한 에이지즘 연구에 있어서도 노화를 단선적인 쇠퇴과정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Kaufman, 1986; Fredan, 1993; 高橋・高萩, 1996; 安川・竹島, 2002). 최근에는 「성공적 나이듦」(小田, 2004), 「활기찬 나이듦」(前田, 2006), 「생산적 나이듦(Produitive Aging)」(齊藤, 2006; 藤田, 2007)등의 관점에서 고령기 고용과 노동, 여가, 사회참가, 볼런티어, 건강과 행복 등과 같은 생산성이나 능동성에 주목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宍戸, 2008: 85).

고령자는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존재이다. 그러나 아직 고령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나이듦과 노화를 인간의 전체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변화과정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시스템 역시 부족하다(工藤, 2011: 7). 다양성의 전제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아직 일본사회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실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工藤, 2011: 7)²¹⁾.

2. 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의 에이지즘은 먼저 고령자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범주화 해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에이지즘은 고령사회에 다양한 능력이나 개성을 가진 고령자가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라는 단일 카테고리로 범주화 해 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North & Ffiske, 2012; 二木 他, 2016: 1에서 재인용). 특히 대중매체가 개호 및 치매문제를 「고령자 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고령자의 「무능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버림으로써 고령자를 「하나로 묶어서 같은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고령자를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二木 他, 2016: 8-9).

노동시장에서의 에이지즘은 '고령자를 비생산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에 공통

21) 나이듦에 대한 행정시책을 보면 한편으로는 요개호고령자에 대한 지원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한 고령자에 대한 여가프로그램 지원강화를 하고 있지만 양극단의 가운데에 있는 대다수의 건강하지만 천천히 기능저하를 겪으면서 노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工藤, 2011: 7).

점을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 생산성과 능력중심의 산업사회, 업적에 가치를 두는 사회 체제에서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처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고령이 되면 대부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만연해 있다. 팔모어(197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젊은이처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1/3이상으로 나타났다(palmore, 1977).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일정 조건하에서 젊은이 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젊은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Krauss, 1987; Riley & Foner, 1968). 물론 일의 속도와 정확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쇠퇴를 인정하는 연구도 있다(Rhodes, 1983). 그러나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대다수의 일에서는 대부분의 고령자는 70세까지 또는 80세 까지 쇠퇴함 없이 일을 하고 있다(Labouvie-Vief, 1985). 또한 젊은 노동자와 비교하면 사퇴나 사고, 의도적 결근이 고령자 측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iley & Foner, 1968). 고령자의 2/3이상이 통상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パルモア, 1995: 2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각부 후생백서(1997)에서도 일본사회에 「고령자는 비생산적이다」라는 그릇된 '노인신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고령자의 취업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높으며 70세 후반에도 약 30%가 일을 하고 있다. 2016년 내각부 『고령사회백서』(평성28년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고용자 수는 458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몇 살까지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5세 정도까지」「70세 정도까지」가 각각 16.6%로 나타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 비율이 71.9%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들의 실제 취업욕구는 매우 높다.

고령자의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정년제도가 일찍부터 정착되어 있다. 일본의 정년제는 『고연령자등고용안정법』, 『고용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는 199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는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2013년)에 근거하여,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65세까지의 고용의무화(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가 규정되어 있어, 기업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령 인상」, 「정년연령폐지」 중 반드시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5년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 실시상황을 보면, 기업의 99.2%가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정년제 폐지(2.6%), 정년연령 인상(15.7%), 계속 고용제도 도입(81.7%)으로 제도정착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厚生労働省, 2016 「高年齢者の雇用状況」集計結果). 일본의 정년제는 고령자 고용보장(고용안정 및 고용확보), 고용정책적 기능, 사회보장제도(특히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년제가 고령자 개인의 역량이나 노동능력,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에 근거해서 퇴직을 강요한다는 측면, 나아가 노동계약을 종료시켜버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에이지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년제의 정당성·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桜庭, 2014; 広石, 2013; 山崎, 2004). 특히 정년제는 판례법상 정리해고가 어려운 일본에서는 고용정리의 유일한 수단이며, '연령'이라는 종착점이 확실히 보이므로 인사나 인재육성 측면에서도 활용하기 편리한 제도이다(八代, 2013).

채용 및 승진, 임금 등에서의 연령차별도 노동시장에서의 에이지즘이다. 일본에서는 2007년(평성19년) 10월 고용대책법 개정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제한 금지를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연령에 근거한 고용관행이 광범위하게 정착되어 있어 구직 시 연령제한을 금지한다고 해도 그것이 프리터(freeter)나 육아를 끝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을 채용하려는 기업유인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더욱이 외부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면접단계에서 연령에 근거한 차별유무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령차별문제가 표출되기는 쉽지 않다(大嶋, 2007: 11). 이러한 고령자 차별의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는 젊은 노동자에 비해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고령자는 젊은 노동자들처럼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의 다양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즉, 고령자=약자=의존자로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져 있다(市瀬, 1994: 40).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문부과학성 발행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교과서-사회)에서 고령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조사한 결과(藤田, 2007),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통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고령자는 사회의 '의존적 존재'로 위치부여 되어 있어서 학교학습을 하면 할수록(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약자'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고, 학생들 개개인은 자신의 미래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회에서 활약하는 고령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藤田, 2007: 54).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8할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근로의욕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평생현역사회', '1억 총활약사회'의 슬로건처럼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령자의 근로 및 활약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일할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는다. 65세 이후의 취업은 비정규직이나 파트적이 많고, 임금 역시 4할 정도는 감소한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6). 고령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 특히 사회에서나 기업

에서 고령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을 과소평가하는 풍토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고령자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과대평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노화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욕구와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심신의 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작업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長田, 2016).

제4절 국내외 연령주의 척도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일본에서 행해진 에이지즘 관련 조사를 개괄한다. 특히 에이지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와 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일본판 FAQ (=The Fact on Aging Quizzes)

1) 현황

미국의 펠모어(Palmore, E.B.)가 만든 FAQ척도는 초중등학생부터 고령자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에이지즘 척도 중의 하나이다. 본 척도는 에이지즘이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부족과 편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기초하며, 진위법에 따른 25항 목의 척도를 통해 나이듦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를 측정한다. 일본에서는 前田(1978), 堀尊(1996), 奥山(1999a), 鈴木(2002) 등이 일본판으로 수정번안한 FAQ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표 3-5). 표에서 N은 긍정적 편견에 대한 질문이고, P는 부정적 편견에 대한 질문이다. 따라서 N질문의 정답은 '아니다'이고, P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이다. 서로 반대 되는 대답을 한 경우 각각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5] 일본판(수정판) FAQ 척도

편견	항목
N	1. 대다수 고령자(65세 이상)에게서 기억상실, 견당식장애, 치매증 등의 노화현상을 볼 수 있다.
P	2. 고령이 되면 오감(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모두 쇠퇴하기 쉽다. 3. 대부분의 고령자는 성욕이 없고, 성적으로 불능하다.
P	4. 폐활량은 고령자가 되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5. 대부분의 고령노동자는 항상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
P	6. 고령이 되면 체력이 쇠퇴한다.
N	7. 적어도 고령자의 1할은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양호노인홈, 노인병원 등의 장기케어시설에 입소하거나 입원하고 있다.

	8. 차를 운전하고 있는 고령자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도 낮다.
	9. 고령노동자의 효율은 젊은 사람보다 나쁘다.
	10. 고령자의 3/4이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
N	11. 대다수의 고령자는 시세의 변화에 순응할 수 없다.
P	12. 고령자는 대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
N	13. 일반적인 고령자에게 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곤란하다.
P	14.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반응이 둔하다.
	15. 대체로 고령자는 비슷하다.
	16. 대다수의 고령자는 대부분 지루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N	17. 대다수의 고령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18. 고령노동자는 젊은 노동자보다도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게 적다.
	19. 일본의 총인구의 18%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20. 많은 의료전문가는 고령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21. 독거노인의 절반이상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22. 대다수의 고령자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가사, 볼런티어 포함)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23. 고령자는 나이가 들에 따라 믿음이 깊어진다.
	24. 대다수의 고령자는 좀처럼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하는 일이 없다.
	25. 2020년경의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사회경제적 상황은 현재와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료) 南綾子(2004)「エイジズム：その意味と大学生への調査に見る高齢者差別意識」『天理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7, p.7.

일본판 FAQ를 사용한 조사개요를 요약하면 [표 3-6] 과 같다. 표에서 편모어가 만든 FAQ를 토대로 하면서, 설명변수로서 奥山(1999a)가 사용한 고령자에 대한 지식점수, 긍정적 편견 점수, 부정적 편견점수가 사용되어 있다. 지식점수는 고령화 사회 및 고령자에 대해 인식의 정확성 유무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25문항 중 정답수의 평균과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긍정적 편견과 부정적 편견 점수는 각각 오답수와 비율을 뜻하며, 양쪽 모두 점수가 낮으면 편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일본판 FAQ를 사용한 에이지즘 조사연구 및 결과

조사연구자	조사 대상자	지식점수	긍정적 편견점수	부정적 편견점수
1) 동경도노인종합연구소 사회학부 (1978)	동경도 군마구 거주 20-49세 기혼남녀 591명	13.26 (53.04%)	-	-
2) 柴雄博 · 長田久雄 (1987)	동경도 무사시노시 거주 30-59세 남녀 555명	14.3 (57.3%)	0.51 (10.2%)	2.57 (51.4%)
3) 総務省老人対策室 (1989)	전국 30-69세 남녀 3,000명	8.2 (68.3%)	0.3 (6%)	3.2 (64%)
4) 大阪教育大学生涯 教育計画研究室 (1995)	고령자(노인대학강좌참가자) 387명, 오사카교육대학생 261명	14.3 (57%) 13.3 (53%)	0.7 (14%) 0.87 (17.3%)	2.65 (53%) 2.83 (56.5%)
5) 小坂啓史(1996)	30-59세 유배우여성 399명	12.9 (51.5%)	0.77 (15.4%)	2.45 (49.0%)
6) 奥山正司(1999)	대학생 91명	13.6 (54.4%)	0.77 (15.4%)	2.88 (57.6%)
7) 小川妙子(2001)	간호학과 1학년 100명 3학년 50명	10.39 (47.2%) 10.84 (49.3%)	1.03 (20.6%) 0.2 (4%)	2.49 (49.8%) 3.3 (66%)
8) A大学(2001)	대학생 1학년 28명 3학년 28명	8.21 (32.8%) 15.5 (62%)	0.92 (18.4%) 0.65 (13%)	1.64 (32.8%) 1.18 (23.5%)
9) B大学(2003)	대학생 1학년 50명	16 (64%)	0.95 (10.9%)	2 (40.0%)
10) C大学(2003)	대학생 2학년 50명	15.7 (62.8%)	0.9 (18%)	1.66 (33.2%)

주) 위의 표는 다음의 선행조사 1)~7)의 문현을 토대로 南(2004)가 작성한 것임. 1) 前田大作(1978)、前田大作 · サスマツ(1980), 2) 柴雄博(2003), 3) 奥山正司(1990a), 4) 大阪教育大学生涯教育計画研究室(1995), 5) 小坂啓史(2000), 6) 奥山正司(1999b), 7) 小川妙子(2001)

자료) 南綾子(2004)「エイジズム：その意味と大学生への調査に見る高齢者差別意識」『天理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7, p.6.

2) 조사결과 및 시사점

일본판 FAQ를 사용한 각각의 조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 사회학부(1978) 「대도시 청장년의 노인관 및 노부모에 대한 책임의식」 : 젠더나 사회경제학적 조건 등과 같은 기본속성의 대부분은 노인 및 노부모에 대한 책임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형제간의 출생순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생만족도와 연로한 부모와의 관계성의 좋고 나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노화나 노인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사람이 노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낮게 나왔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책임의식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柴雄博 · 長田久雄(1987): 미국과 일본의 에이지즘 비교조사로서, 편견을 나타내는 오답수가 미국조사보다 일본이 더 많게 나타났다. 페르모어가 말한 "일본은 미국보다 고령자를 경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인식인 맞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総務庁老人対策室(1989) 「고령자에 대한 인식 및 부정적 바이어스 점수, 긍정적 바이어스 점수에 대해」 : 고령자,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세대를 넘어서, 시간이 다소 경과한다고 해도 응답자의 약 50~60%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보다 부정적 편견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大阪教育大学生涯教育計画研究室(1995) 「노인 이미지에 관한 조사연구: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 고령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노인이미지(노인에 대한 지식, 편견)를 조사한 결과, 지식점수는 평균적으로 고령자 쪽이 유의미하게 높고, 부정적 편견점수는 대학생 쪽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긍정적 편견점수는 평균적으로 대학생 쪽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는 대학생에 비해 고령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편견과 긍정적 편견 모두 적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편견은 젊은 사람 측면에서는 신체적, 생리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사회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에 대한 심리적 · 사회상황적 측면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제시되었다(大阪教育大学生涯教育計画論研究室, 1995: 61).

5) 小坂啓史(1996) 「에이지즘으로서의 노년관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본 조사의 특징은 부모와 동거율이 높은(76.4%) 유배우여성의 고령자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는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가 유아기 때 긍정적, 청년기에는 부정적, 중 고령기때 긍정적으로 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자와 동거율이 높은 것도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奥山正司(1999a) 「에이지즘-고령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펠모어의 FAQ를 일본판으로 수정한 자로서, 고령화 사회나 고령자상에 대해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다양한 편견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7) 小川妙子(2001) 「간호학생의 고령자에 대한 에이지즘-1학년과 3학년의 FAQ비교」: 1학년보다 3학년 학생이 고령자의 심리상황이나 사회생활의 적응성,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에 대한 오답수도 더 많았다. 본 조사에서는 노년간호학의 학습경험으로 인해 고학년 학생이 고령자의 특징을 과장해서 일반화하고 이해함으로써 부정적 편견이 더욱 강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8) A大學(2001): 대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학년이 고령자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학년 때 학습한 '노인복지론'과 '실습'의 결과로 보인다. 편견점수를 보면 3학년이 긍정적 편견과 부정적 편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 B大學(2003) : 대학교 문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본 학생들은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으며, 일반교양과목만 수강한 상태이고 1학년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중에서 고령자에 대한 과목도 없다. 조사결과 지식점수는 앞의 8)A대학의 3학년의 지식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3개 대학 중 긍정적 편견점수는 가장 낮고 부정적 편견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C大學(2003): 종합정책학부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과목은 수강한 적이 없으며, '고령사회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수강한 학생

도 있다. 조사결과, 지식점수는 8)A대학의 3학년의 지식점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긍정적 편견점수는 낮고, 부정적 편견점수도 8)A대학의 1학년과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전공과 편견점수와의 관련에서 볼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것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편견이 적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조사대상이나 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도 조사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령사회에 돌입한다고 해서 '나이듦'이나 '고령자'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지식 면에서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비교적 잘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정신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에 관해서는 모든 조사에서 노화의 마이너스 측면을 강조하는 부정적 편견이 긍정적 편견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편견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 매스 미디어나 영상문화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南, 2004: 12).

2. 일본어판 FSA (Faraboni Scale of Ageism) 단축판

1) 현황

일본에서는 미국의 Fraboni(1990)가 개발한 에이지즘 척도(Faraboni Scale of Ageism: FSA)를 原田외가 번안한 일본어판 FSA척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原田외(2004)는 본래 29항목인 것을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인자부하량이 높은 14항목을 발췌해서, 일본어판 FSA척도(단축판)를 만들었다(표 4-7). 응답은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1점), 「그렇게 생각한다」(2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3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4점)로 4점 척도로 이루어진다. 총 합계점수가 낮으면 에이지즘이 높음을 의미한다.

原田외가 만든 일본어판 FSA는 「에이지즘을 정량화 하고, 표준적으로 이용가능한 척도가 없는 가운데, FAQ테스트 등과 같이 고령사회나 고령자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인관·나이듦에 대한 의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杉井, 2007: 99).

[표 3-7] 일본어판 FSA척도(단축판)

에이지즘 지표
1. 많은 고령자(65세 이상)는 구두쇠로 돈을 모으고 있다.
2. 많은 고령자는 옛날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흥미가 없다.
3. 많은 고령자들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
4. 고령자를 만나면 종종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 버린다.
5. 고령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도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6. 고령자는 젊은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감사해야 한다.
7. 만약 초대받아도 나는 노인클럽행사에는 가고 싶지 않다.
8. 개인적으로는 고령자와 긴 시간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9. 고령자에게 지역의 스포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싶지 않다.
10. 대부분의 고령자에게는 아기 돌보는 일을 맡길 수 없다.
11. 고령자는 누구라도 폐를 끼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12. 고령자와 사귀는 것은 매우 즐겁다.
13. 가능한 고령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14. 대부분의 고령자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기 때문에 화나게 된다.

자료) 佐野望・桧原登志子(2011)「看護学生のエイジズムと高齢者看護学実習との関連－病院実習と福祉施設実習の学習要素からの検討－」『共立女子短期大学看護学科紀要』6, p. 4.

2) 조사결과 및 시사점

일본어판 FSA(단축판)를 사용한 연구조사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原田 謙, 杉澤秀博, 杉原陽子, 山田嘉子, 柴田 博(2004) 「일본어판 Fraboni 에이지즘 척도(FSA)단축판 작성: 도시부의 청년남성에 있어서의 에이지즘 측정」

본 연구는 도시부 청년남성들에 있어서 Fraboniエイジズム尺度 (Fraboni Scale of Ageism; FSA) 의 인자구조를 검토하고, 일본어판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동경도 및 치바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25~39세 남성 1,289명이다. 분석결과 1)검증적 인자분석결과 「비방Antilocution)」 「차별(Discrimination)」 「회피(Avoidance)」라는 3가지 인자 19항목으로 구성되는 FSA

기본모델의 적합도는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15항목으로 구성되는 수정모델의 적합도는 허용수준에 도달하였지만 FSA를 일본에서 사용하는 경우 내용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시사되었다. 2)일본어단축판을 작성하기 위해, 항목분석, 탐색적 인자분석을 행한 결과, 「혐오, 차별」, 「기피」, 「비방」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3가지 인자가 추출되었다. 검증적 인자분석 결과, 이 3가지 인자 14항목으로 구성되는 2차 인자모델이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척도는 충분한 내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어판 FSA단축판이 에이지즘 척도로서 일정한 구성개념타당성 및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原田 謙, 杉澤秀博, 柴田 博(2008) 「도시부 청년남성에 있어서의 에이지즘 관련요인」

일본어판 FSA(단축판)을 사용하여, 도시부 청년남성의 에이지즘 관련 요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동경도 치바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25-39세 남성 1,289명이다. 분석결과, 1)새로운 고령친족 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에이지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유무는 에이지즘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2)나이듦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일수록 에이지즘이 강하다는 점에서, 나이듦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육에 의해 에이지즘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생활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에이지즘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욕구불만이 에이지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佐野望・檜原登志子(2011)「간호학과 학생의 에이지즘과 고령자간호학실습과의 관련-병원실습과 복지시설실습의 학습요소를 통한 검토」

연구목적은 간호학과 학생의 실습전후의 에이지즘 변화, 에이지즘을 변화시키는 실습의 학습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대상은 A단기대학 간호학과 3학년 96명이다. 연구결과, 3년차 실습 전 후의 에이지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는 3년차 실습 전 단계에서 에이지즘의 요인인 '지식결여'나 '다양한 고령자와의 관계부족'을 보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3년차 실습에서 에이지즘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고령자에 대한 에이지즘이 아니라, 실습대상이 된 개인의 고령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령자간호학실습은 에이지즘을 낮추는 요인으로 유효했고,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치매고령자 간호를 체험하는 것이 에이지즘을 더욱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4) 畑野相子·簗原文子(2013)「고령자간호학 실습에 있어서 라이프인터뷰와 고령자이해와의 관련-고령자이미지와 에이지즘 변화의 분석-」

고령자이미지 및 에이지즘의 변화를 분석하고, 라이프 인터뷰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시가대학 의학부 간호학과 3학년 59명이다. 연구결과, 1)라이프인터뷰를 한 결과 FSA 총점이 낮아졌으며, 하위항목에서는 회피를 나타내는 항목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2)고령자이미지는 15항목 중 10항목이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었고, 교류체험이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실습에 라이프 인터뷰를 활용하는 것은 고령자 이미지나 에이지즘 변화를 초래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新井 智之, 小野 絵美, 加藤 仁志, 高橋かおり, 佐藤 純, 細井 俊希, 丸谷 康平,. 藤田 博曉(2013) 「물리치료학과 학생에 대한 에이지즘 조사와 에이지즘에 관한 요인검토」

물리치료사는 일상에서 고령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리치료학 영역에서의 에이지즘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에이지즘을 조사하고 에이지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물리치료학과 1학년~4학년 학생 328명이다. 본 연구는 특히 일본어판 FAQ를 통해 대상자의 노후불안감도 질문하고 있다. 연구결과, 일반성인의 FSA평균점수는 31.7 ± 7.7 점인데 반해 대상자의 FSA점수는 55.7 ± 8.0 으로 에이지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년 비교를 통해 2학년과 4학년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고령자시설에 대한 취업희망 유무, 볼런티어 경험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물리치료학 교육현장에 있어서도 고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고령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에이지즘을 낮추는 방안으로 보인다.

(6) 杉井潤子(2007)『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이지즘)의 실태규명과 고령화 교육 추진』

原田외(2003)가 번안한 일본어판 FSA척도(19항목)을 활용하여 에이지즘 의식(고령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原田외(2004) 일본어판 FSA척도(단축판)+5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된 5문항은 다음과 같다.

9. 대부분의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14. 최근 고령자의 힘든 상황을 들으면 슬퍼진다. 15. 고령자가 정치에 대해 발언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6. 대부분의 고령자는 재미있고 개성적인 사람들이다. 19.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연구결과, 에이지즘 의식이 높은 항목(상위권 항목)은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고령자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된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많은 고령자는 과거에 살고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에이지즘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식은 40대 후반에 강해지고 이후 50대 전반까지 약해지며, 이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유의미하게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에이지즘을 연령과 나이듦에 따른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증하였는데, 특히 에이지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고령일수록, 질병치료가 많을수록, 또한 남성 쪽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고령자를 차별·배제하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는 늙음이나 의존적 지위를 실감함에 따른 ‘자기투영’, 즉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의식에서 ‘자기배제’를 해 나가는 것에 기인하며, 또한 고령자 사이에서 고령자를 객체화함으로써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달라”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杉井, 2007: 114). 성별에 따른 에이지즘의 유의미한 차이는 젠더 관점에서의 남성의 우위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여성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있다.

둘째, 대도시 거주의 경우 기피·거절감이나 민폐의식이 강하고 나아가 젊은 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고령자에 대해 타인의 일로 치부하고, 개별성이 없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거주자의 에이지즘 의식이 높은 것은 전통적인 지역커뮤니티가 희박해 진 도시형 사회 안에서 고령자를 약자로 배제해 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杉井, 2007: 115).

셋째, 가족 구성원의 개호경험이 일반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적인 경험과 고령자에 대한 에이지즘 의식은 다른 차원으로 개호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차별이나 편견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개호경험이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개호경험이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본 내각부 [평성15년도 연령·나이듦에 대한 의식조사] (2003년)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고령사회대책대강』에 근거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조사이다. 특히 대강에서 분야별 기본시책의 큰 프레임으로서 '횡단적으로 착수해야 할 과제'-정책지표 작성, 정책체계 구축-를 제시하였는데 본 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 1) 「연령만으로 고령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제도·관행 등의 개선」
: 고령자에 대한 획일적인 관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의식개혁,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제한 등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저해하는 것, 고령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우대하는 제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개선
 - 2) 「세대간 연대강화」
: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부담과 급여 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파악 등
- 조사대상자: 전국 15세 이상, 표본 6,000명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 각각 1,000명, 60대 이상 남녀 2,000명)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 청취법 및 우편조사(표본수의 1/3)
- 조사사항: [표 3-8] 참고

[표 3-8] 내각부 「연령·나이듦의 사고방식에 대한 의식조사」 (2003) 조사항목

조사항목	세부항목
1. 고령자에 대한 의식, 이미지	고령자 정의 (연령) 고령자 정의 (연령 외) 고령자의 이미지 고령기 생활에 대한 불안 고령자로서의 인식유무
2. 고령자와의 교류실태	세대간 교류경험
3. 세대간 교류	세대간 교류 의향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세대간 교류에 대한 정책니즈
4. 고령자 취급	현재의 고령자 처우에 대한 인식 고령자에 대한 차별, 편견 연령차별 경험

	앞으로의 고령자 처우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조건 정년퇴직 적절한 퇴직연령 인사평가 공적연금 지급시기 의료비 자기부담 (부담을 낮추어야 할 연령, 자기비율의 격차)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부담과 급여 고령기 생활보장
5. 고령사회관련시책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시책니즈

자료: 内閣府(2003) 「平成15年度年齢・加齢に対する考え方に関する意識調査」에서 발췌요약.

2) 조사결과

(1) 고령자의 정의 (연령)

「몇 살 이상의 사람이 ‘고령자’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약 70세 이상」이 48.7%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약 65세 이상」 18.5%, 「약 75세 이상」 12.9%, 「약 60세 이상」 6.8%의 순을 보였다. 70세 이상을 고령자로 본 비율을 합하면 전체의 67.6%이다. 성별로 보면 「약 70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고령자를 생각하는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약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비율이 15.2%이다.

(2) 고령자의 정의 (연령 외)

「어떠한 시기부터가 ‘고령자’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체를 자유롭게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39.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을 하게 된 시기」 23.1%, 「일에서 은퇴하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시기」 12.3%, 「개호가 필요하게 된 시기」 12.0%, 「자녀들에게 돌봄을 받는 시기」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고령자의 이미지

「‘고령자’ ‘어르신’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신이 쇠약해지고 건강 면에서 불안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2.3%로 가장 높다. 이하 「경험이나 지혜가 풍부하다」 43.5%, 「수입이 적고 경제적으로 불안이 크다」 33.3%,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29.9%, 「옛날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27.1%, 「주변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고 고독하다」 19.4%,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고령기 생활에 대한 불안

「자신의 고령기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느낀다」 30.0%, 「다소 느낀다」 50.6%로 노후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8할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연금, 개호, 의료등의 사회보장급여 감소」(76.2%)와 「자신의 건강」(72.7%)에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9.2%이다.

(5) 고령자로서의 의식유무

「고령자로서의 인식유무」에 대해서는, 50대가 13.3%, 60-64세가 22.0%, 65-74세 55.9%, 75세 이상이 85.6%가 「그런 것 같다(자신을 고령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65-74세에서 42.2%, 75세 이상에서 13.3%가 「그렇지 않다(자신을 고령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6) 세대 간 교류의 경험, 의향

「세대 간 교류를 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79.3%이고, 교류내용으로는 「같이 동거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다」가 46%로 가장 높고 「가족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가사, 육아, 개호 등)」가 32%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앞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류하고 싶다」가 43.9%, 「교류하고 싶지 않다」 6.9%, 「어느 쪽도 아니다」가 48%로 가장 높다. 특히 교류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어떠한 교류를 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취미, 스포츠, 생애 학습 등의 활동을 같이 한다」가 48.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볼런티어, 마을모임 등의 지역공헌활동을 함께 한다」 44.1%,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 39.1%, 「가족 안에서 역할이 있고 공헌을 한다」 30.8%, 「직장에서 함께 일한다」 15.7%의 순을 보였다. 교류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확인 한 결과, 「신경을 쓰는 것이 번거로워서」 47.8%로 가장 높다. 이하 「대화가 잘 되

지 않을 것 같아서」 38.1%, 「활동을 같이 해 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36.2%,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32.1%, 「취미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26.9%의 순을 보였다.

(7) 현재의 고령자 처우에 대한 인식

「현재 일본사회에서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 한다」 12.7%, 「약간 그렇다고 생각 한다」 41.3%로 이 둘을 합하면 「그렇게 생각 한다」가 54.0%로 과반수를 넘는다. 한편,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7.1%,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8.4%, 고령자가 우대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5.5%로 나타났다.

(8) 고령자에 대한 차별, 편견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 5.9%, 「다소 있다고 생각 한다」 51.2%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있다고 생각 한다」가 57%로 과반수를 넘는다. 반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37.2%,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5.3%로 「없다고 생각한다」가 42.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있다고 생각 한다」가 20대와 30대에서 66.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65-74세는 49.5%를 보였다.

(9) 연령차별 경험

「연령이 주된 이유가 되어서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령을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18.2%로 가장 많다. 이하 「연령을 이유로 임대차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당했다」 1.6%, 「연령을 이유로 봄런티어, 행사, 취미 활동 참가를 거절당했다」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연령을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응답이 50대 25.1%, 60-64세 2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0) 앞으로의 고령자 처우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령자를 더욱 우대해야 함」 29.3%, 「현재의 상태로 괜찮음」 27.7%, 「젊은 세대, 현역세대를 조금 더 중시해야 함」 20.4%, 「잘 모르겠음」 21.9%로 나타났다.

(11)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조건

「연령제한을 두고 인재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제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채용 시 연령제한을 없애야 함」 30.1%, 「중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 이상’등의 우대모집을 늘려야 함」 29.4%, 「젊은 세대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음」 29.3% 등의 비율을 보였다.

(12) 정년퇴직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정년퇴직제도를 두고 있고, 대부분 퇴직연령을 60세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정년퇴직제도를 유지하고, 퇴직연령을 조금 더 올려야 함」 41.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정년퇴직제도를 없애고 퇴직연령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7%, 「정년퇴직제도는 유지하되, 퇴직연령은 지금 수준이 적절」 18.8%, 「정년퇴직제도는 유지하되, 퇴직연령은 지금보다 더 내려야 함」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연령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60-64세에서 51.1%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3) 적절한 퇴직연령

「일반적으로 몇 살까지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정년 후 재취직, 아르바이트 포함해서)」라는 질문에, 「65-69세 정도까지」가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64세 정도까지」 25.4%, 「70-74세 정도까지」가 9.2%로 나타났다.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하다면 언제까지라도 일하는 편이 좋다」라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14) 고령기 생활보장

「일반적으로 고령기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적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함」 69.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이나 공적연금 등에 의지하지 않고 예적금이나 자신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함」 13.2%, 「가족이 돌보아야 함」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일본 내각부 - [공생사회 (共生社会) 지표] (2005년), [공생사회 (共生社会)에 관한 기초조사] (2004년)

일본에서 '공생사회'(共生社会)란 개념은 1987년 黒川紀章가 「공생의 사상」을 출판하면서 부터이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공생사회에 관한 연구에서의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奥村, 2006: 172). 일본 내각부에서는 2003년 12월에 공생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내각부 내에 「공생사회 형성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29일, 그 결과로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제창」(「共に生きる新たな結び合い」の提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학문적 논의와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여 공생사회를 <표 3-9>와 같이 5가지 시점으로 체계화 하였다. 내각부에서 공생사회의 정의를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고 5가지 시점으로 정리한 것은 공생사회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奥村, 2006: 173)

보고서에서는 공생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로서 크게 2가지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공생도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분야별 지표'이다. 공생도 지표는 각각의 횡단적 시점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분야별 지표는 개별 정책분야와 관계된 지표로서 청소년 분야, 고령자 분야, 장애인 분야로 구분된다. 전체적인 지표체계를 보면 횡축에는 공생도 지표와 분야별 지표가, 종축에는 5가지 횡단적 시점이 놓이는 매트릭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기존의 다양한 조사결과 데이터와 함께 2004년에 실시된 「공생사회에 관한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이다. 특히 '공생도 지표'는 모두 「공생사회에 관한 기초조사」 데이터에서 얻은 것으로, 사회 전체의 「의식 지표」를 의미한다. 또한 내각부에서는 이러한 지표체계가 3가지 정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았다(내각부 홈페이지).

[표 3-9] 일본 내각부 [공생사회 지표]-공생도 지표, 고령자 분야만 발췌

공생사회의 횡단적 시점	공생도 지표	고령자 분야
1. 각자가 확실한 자신을 가지면서 귀속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1)가치관의 공유 (2)지역에 대한 애착 (3)타인에 대한 관심	(1)가치관 공유 (2)지역에 대한 애착 (3)주위로부터의 기대
2. 각자가 다른 특성과 다양한	(1)차이에 대한 이해 · 승인	(1)고령자에 대한 경의

타인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사회	(2)커뮤니케이션 정도 (3)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관용도	(2)커뮤니케이션 정도 (3)타인에 대한 관용도
3.연령, 장애유무, 성별등과 같은 속성 만으로 배제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	(1)사회의 장벽유무 (2)상담상대 유무 (3)차별적인 행동의 보고들음	(1)일상생활의 장애 (2)정보부족에 따른 활동제약 (3)차별, 편견
4. 지지하고 지지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참가·공헌하는 사회	(1)사회활동 참가 (2)자발적인 사회공헌의식 (3)상부상조 의식	(1)사회활동 참가 (2)자발적인 사회공헌의식 (3)상부상조 의식
5. 다양한 연계와 다양한 접촉 기회를 풍부하게 찾을 수 있는 사회	(1)지역행사 참가 (2)상담이나 부탁할 수 있는 곳의 다양성 (3)교류의 폭	(1)세대 간 교류 (2)상담이나 부탁할 수 있는 곳의 다양성 (3)세대계승

자료) 共生社会形成促進のための政策研究会(2005)「共に生きる新たな結び合い」の提倡. 内閣府.

아래에서는 내각부 보고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제창」과 2004년 조사 결과 중 고령자와의 공생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1) [공생사회에 관한 기초조사] (2004) 조사개요

- 조사목적: 일본사회의 공생도 파악, 공생사회형성 촉진도모
- 조사대상자: 전국 20세 이상, 표본 5,000명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개별면접 청취
- 조사사항: 1) 사회참가의식, 사회공헌의식, 2) 타인에 대한 관심, 신뢰, 커뮤니케이션 정도, 3) 생활안전 및 안심, 네트워크 등

2) [고령자와의 공생] 에 대한 결과

일본 사회전체의 공생도 의식정도와 고령자(65세 이상)와의 공생도에 대한 결과는 [표 3-10] 을 참조하길 바란다. 여기에서는 에이지즘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발췌해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0] [공생도], [고령자와의 공생도] 결과

공생사회의 횡단적 시점	공생도	고령자와의 공생도
1. 각자가 확실한 자신을 가지면서 귀속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p>(1) 가치관의 공유 (74.3%) -타인에게 공감하는 사람의 비율</p> <p>(2) 지역에 대한 애착 (79.7%) -거주지역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p> <p>(3) 타인에 대한 관심 (48.2%)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p>	<p>(1) 가치관 공유 (78.7%) -타인에게 공감하는 고령자비율</p> <p>(2) 지역에 대한 애착 (88.4%) -거주지역에 애착을 느끼는 고령자비율</p> <p>(3) 주위로부터의 기대 (72.7%) -자신이 주위(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령자 비율</p>
2. 각자가 다른 특성과 다양한 타인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사회	<p>(1) 차이에 대한 이해·승인 (50.8%) -차별적인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p> <p>(2) 커뮤니케이션 정도 (33.6%) -주변 사람들과 거의 매일 인사를 건네는 사람의 비율</p> <p>(3)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관용도 (22.8%) -수용할 수 없는 "다름"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p>	<p>(1) 고령자에 대한 경의 (43.5%) -고령자에 대해 「경험이나 지혜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비율</p> <p>(2) 커뮤니케이션 정도 (49.5%) -주변 사람들과 거의 매일 인사를 건네는 고령자 비율</p> <p>(3) 타인에 대한 관용도 (78.3%) -타인의 이질성에 대해 관용할 수 있는 고령자 비율</p>
3. 연령, 장애유무 등과 같은 속성만으로 배제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	<p>(1) 사회의 장벽유무 (2.45개/명)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주된 제약 가운데 특히 제약을 느끼지 않는 분야의 수</p> <p>(2) 상담상대 유무 (81.9%) -일상의 문제점이나 개인사 상담대상이 있는 사람비율</p> <p>(3) 차별적인 행동의 보고 들음 (37.0%) -주위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동을 보고들은 사람의 비율</p>	<p>(1) 일상생활의 장애 (30.6%) -사회활동에 제약을 느끼는 고령자 비율</p> <p>(2) 정보부족에 따른 활동제약 (4.1%)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고령자 비율</p> <p>(3) 차별, 편견 (57.0%)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고 느끼는 고령자 비율</p>
4. 지지하고 지지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양한 형태	<p>(1) 사회활동 참가 (53.7%) -사회활동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p>	<p>(1) 사회활동 참가 (72.3%) -사회활동을 행하는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고령자 비율</p>

로 참가 · 공헌하는 사회	<p>(2) 자발적인 사회공헌의식 (60.8%) -사회나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p> <p>(3) 상부상조 의식 (42.1%)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돋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p>	<p>(2) 자발적인 사회공헌의식 (71.9%) -사회나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고령자 비율</p> <p>(3) 상부상조 의식 (48.0%)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돋고 있다고 느끼는 고령자 비율</p>
5. 다양한 연계와 다양한 접촉기회를 풍부하게 찾을 수 있는 사회	<p>(1) 지역 행사 참가 (42.3%) -지역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비율</p> <p>(2) 상담이나 부탁할 수 있는 곳의 다양성 (2.08개/명) -상담이나 부탁을 할 수 있는 곳</p> <p>(3) 교류의 폭 (0.91개/명)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회활동 종류의 수</p>	<p>(1) 세대 간 교류 (53.7%)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고령자 비율</p> <p>(2) 상담이나 부탁할 수 있는 곳의 다양성 (2.39개/명) -상담이나 부탁을 할 수 있는 곳</p> <p>(3) 세대계승 (23.7%) -젊은 세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고령자 비율</p>

자료: 共生社会形成促進のための政策研究会(2005)「共に生きる新たな結び合い」の提唱. 内閣府.

(1) 횡단적 시점 2. 각자가 다른 특성과 다양한 타인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사회

(해설) 고령자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건강면에서도 열악한 계층으로 횡단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생사회에서는 그러한 횡단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각자가 가진 다양한 개성과 경험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또한 고령자 자신도 연령이나 경험 등의 차이에 얹매이지 않고, 지역이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다.

① 고령자에 대한 경의

- 지표의미: 고령자가 다양한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의 침투상황
- 산출방법: 아래의 질문에 대해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로서 「경험이나 지혜가 풍부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
- 출처: 「연령·나이듦에 대한 사고방식에 관한 의식조사」(내각부, 2003)

<문항3> 당신은 「고령자」 「어르신」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3개까지 중복응답 가능)

1. 경험이나 지혜가 풍부하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3. 오래된 사고방식에 치우치기 쉽다
4. 심신이 쇠약해서 건강 면에 불안이 많다
5.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6. 저축이나 주택 등의 자산이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7.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적고 고독하다
8.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불안이 크다
9. 봉런티어나 지역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10.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로서 「경험이나 지혜가 풍부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총 43.5%로 나타났다. (응답자 총수 3,941명)

(2) 횡단적 시점 3. 연령이나 장애유무 등의 속성만으로 배제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

(해설) "공생사회"에서는 고령자가 연령을 이유로 해서 차별이나 배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가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듦의 원인으로 건강 및 육체적 장애를 지닌 고령자의 지역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여 고령자가 손쉽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고령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적 활동의 기회 및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가 사회에서 지원받는 존재, 사회에 대한 공헌을 마친 존재라는 획일적인 이미지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개선하여, 연령만으로 다르게 취급받는 제도, 관행 등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일상생활의 장벽

-지표의미: 일상생활의 장벽 유무

-산출방법: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주 있음」 「종종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연령·나이듦에 대한 사고방식에 관한 의식조사」(내각부, 2003)

<문항 26> 당신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활동의 제약을(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한 개 선택해 주세요.

1. 자주 있다

2. 종종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5. 잘 모르겠다

-결과: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활동의 제약을 경험한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고령자 응답자 총수=1,000명).

③ 차별, 편견

-지표의미: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산출방법: 아래의 질문에 대해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많이 있다」 또는 「다소 있다고 생각한다」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연령·나이듦에 대한 사고방식에 관한 의식조사」(내각부, 2003)

<문항 10>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있음)

1. 많이 있다

2. 다소 있다고 생각한다

3.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4.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7.0%이다(응답자 총수 3,941명) 연령별로 보면, 20대 65.3%, 30대 67.3%, 40대 59.7%, 50대 56.3%, 60대 48.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고령자의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杉井潤子(2007)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이지즘)의 실태 규명과 고령화 교육의 추진」(現代社会における年齢差別(エイジズム)の実態解明と高齢化教育の推進)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연령차별(에이지즘)의 관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 차별, 나아가 학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에 대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의식 및 부적절한 태도(mistreatment)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의식과 실태 양 측면에서 학대를 야기하는(가능성 있는) 예비단계로서 자리매김되는 현대사회의 연령차별(에이지즘)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친기지역(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 등) 거주 40세 이상 인구 1840명
- 조사내용: 친한 관계에 있는 요개호고령자 유무, 조부모 및 부모 개호경험, 개호 및 부양규범, 나이 들에 대한 의식 · 자각 · 고령기에 대한 불안, 고령자 이미지, 에이지즘 의식, 고령자에 대한 차별 · 편견유무,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생활만족도

-조사지표: 고령자 이미지(SD법), 에이지즘 의식조사 지표(일본어판 FSA지표 19항목),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지표(15항목) 등.

* 고령자 이미지 및 에이지즘 의식조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도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지표'에 관련된 연구내용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지표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란, 학대행위의 예비적 단계로서 일상생활의 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태, 한번 또는 여러 번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杉井, 2007: 11). 이것은 교육노년학, 노년심리학, 노년사회학 등에서 부적절한 처우나 학대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령자에 대한 사례검토를 거친 후 15가지 항목을 지표로 만들어졌다.

[표 3-11]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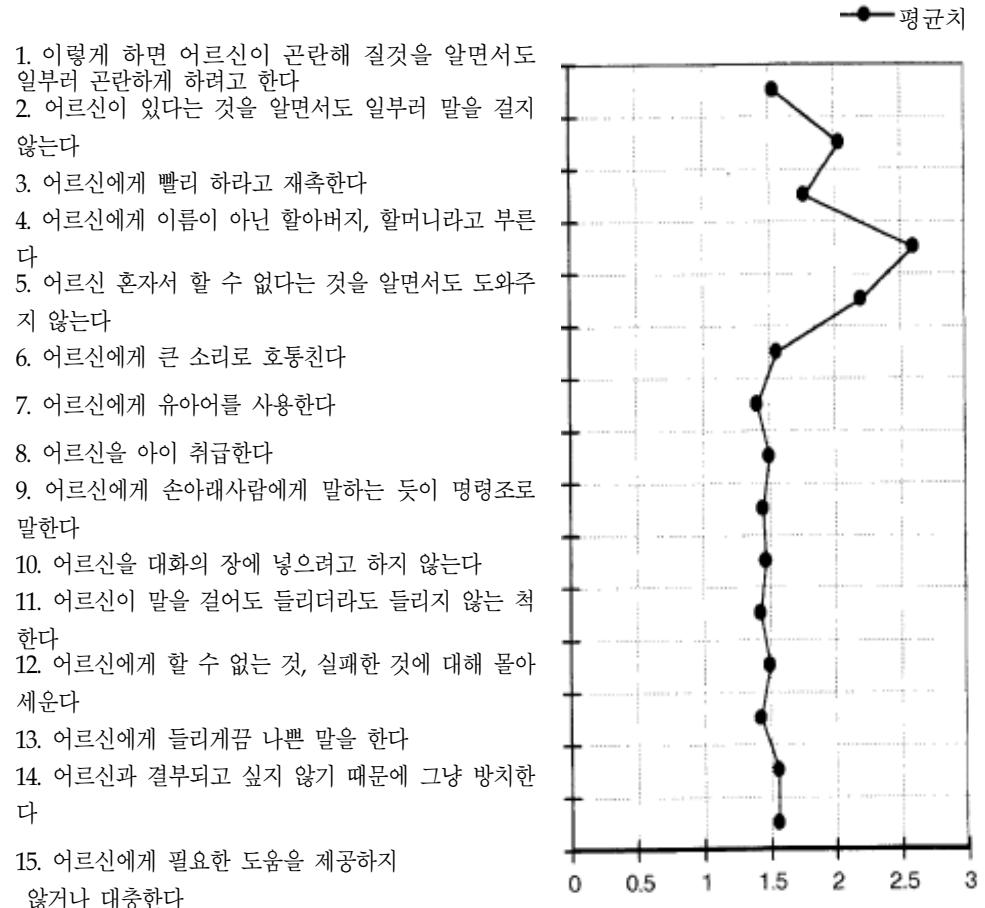
1.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려는 일을 한다
2. 어르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는다
3. 어르신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한다
4. 어르신을 이름이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
5. 어르신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6. 어르신에게 큰소리로 호통친다
7. 어르신에게 유아어를 사용한다.
8. 어르신을 아이 취급한다
9. 어르신에게 손아래사람에게 말하는 듯이 명령조로 말한다
10. 어르신을 대화의 장에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11. 어르신이 말을 걸어도 들리더라도 들리지 않는 척 한다
12. 어르신에게 할 수 없는 것, 실패한 것에 대해 몰아 세운다
13. 어르신에게 들리게끔 나쁜 말을 한다
14. 어르신과 관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다
15. 고령자나 어르신에게 필요한 도움(식사, 배변, 목욕 등의 지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거나 대충한다

자료) 杉井潤子(2007)『現代社会における年齢差別(エイジズム)の実態解明と高齢化教育の推進』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課題番号16500475 研究成果報告書, pp. 11-12.

2)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실태 결과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항목 중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르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는다」 「어르신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한다」이다. 이 항목은 평균치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3-12]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실태 결과



자료) 杉井潤子(2007)『現代社会における年齢差別(エイジズム)の実態解明と高齢化教育の推進』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課題番号16500475 研究成果報告書, p.88.

남녀 간 평균치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부적절한 대응이 더 많게 나타났으며, 1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다. 특히 전체 척도에서 볼 때, 남성, 잦은 질병, 시어머니에 대한 개호경험이 있는 경우, 고령자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에서는 첫째, 남성, 잦은 질병, 아버지나 시어머니의 개호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령자에 대한 '거절'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남성, 잦은 질병을 가진 경우, 고령자를 아이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저학력, 잦은 질병, 현재 요개호고령자가 가까운 근처

에 있지 않고 시어머니에 대한 개호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령자에 대한 '무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에이지즘 의식은 짧은 층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자와 같은 위치에 놓인 고령, 허약자 안에서 강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점임.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남성, 허약자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에이지즘은 강자가 약자를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가 약자를 다시 선별해서 차별하는 아주 뿌리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杉井, 2007: 117).

제5절 소결

일본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모해 왔다. 1945년 이전까지는 이에제도와 은거제도 하에서 고령자는 효와 경로의 대상이었으나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화와 핵가족화,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부양이나 가족규범에 대한 가치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는 노인부양이나 개호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고령자는 사회적 약자, 지원 받아야 하는 대상, 사회참가 주체 등 다양한 가치관의 갈등 안에 놓이게 된다. 특히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타테마에로서의 경로사상과 혼네로서의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는 이중적 고령자 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정부는 사회전체적 차원에서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서 접근하게 된다. 90년대 일본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고령자 정책이 본격화된다. 고령자는 제2의 현역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가를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요구되었다. 2000년대는 ‘전원참가형 사회’, ‘평생현역사회’, ‘공생사회’, ‘1억 총활약사회’의 실현을 고령사회대책의 전면에 내걸고 다각적인 시책을 실시한다.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획일적 고령자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 있는 고령자를 사회주체로서 제 활동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적인 고령자상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사회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도 스스로 자립을 추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고령자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에이지즘(연령주의)이 여전히 공고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에서의 에이지즘은 일반적으로 고령자 차별을 의미하며, 그 개념은 미국학자들의 개념정의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효·경로사상, 장수문화 등이 여전히 타테마에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지즘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화, 공식화 되지는 못하였다. 에이지즘 관련 연구 역시 80년대에 미국의 선행연구 고찰을 기초로 90년대 후반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에이지즘이 사회적 차별문제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에이지즘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에이지즘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개념에는 공통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차별, 부정적 태도 등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7년 후생백서에서 고령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6가지의 ‘노인신화’로 들어 설

명·논박함으로써, 고령자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에이지즘이 일본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에이지즘은 편견이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부정적 태도로서도 표출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다. 부정적 태도의 기저에는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고령자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고령자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위험성을 지닌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령자 차별은 크게 고령자 학대나 착취 등과 같은 개인적 차별과 정년퇴직, 연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차별로 구분된다.

연령주의는 크게 노화와 노동시장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화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어쨌든 노화나 나이듦은 대부분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된다. 일본의 법제도에서는 보통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일률적이라는 않다.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고령자가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3할도 되지 않는다. 연령을 기준으로 노화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는 희박하지만, 사회 안에서 노화와 노인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고령자를 획일적으로 간주하고 처우하고 있음을 분명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이지즘의 공고함은 재확인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에이지즘은 고령자의 개인적 역량이나 노동능력,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령자를 무능력하고 비생산적인 존재’라는 단일한 카테고리로 범주화시켜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채용, 승진, 임금, 퇴직 등에서 구체적인 사회적·구조적 차별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령주의 척도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펠모어(Palmore, E.B.)가 만든 FAQ척도를 일본판으로 수정번안 한 것이다(前田(1978), 堀尊(1996), 奥山(1999a), 鈴木(2002) 등). 이것은 고령사회나 고령자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조사대상이나 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도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고령사회에 돌입한다고 해서 나이듦이나 고령자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비교적 잘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정신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견에서는 모든 조사에서 부정적 편견이 긍정적 편견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Fraboni(1990)가 개발한 FSA를 原田외가 번안한 일본어판 FSA척도(단축판)이다. 이 척도를 활용한 연구조사에서는 나이듦이나 고령자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 고령자와 남성, 질병이 많은 사람이 에이지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호경험유무가 에이지즘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외에도 2003년과 2004년의 내각부 조사 결과를 통해, 고령자의 과반수 이상이 일본사회에 고령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있다고 보고 있음과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활동의 제약을 경험한 비율도 3할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사회대책 전반을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령자는 존엄과 존경의 대상보다는 ‘고령자 문제’, ‘고령화 문제’ 등의 사회문제의 대상 집단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듦이 하나의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고령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생산적·성공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에이지즘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본어 문헌>

- 二木望, 渡辺匠, 桜井良祐, 唐沢かおり(2016)「実体性が両面価値的な集団への行動意図に及ぼす影響:エイジズムに着目して」『社会心理学研究』, 1-11.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6)『労働力不足時代における高年齢者雇用』,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86.
- 長田久雄(2016)「シニア就労に社会の意識改革が必要」『わたしの思』20.
- 藤原往典(2016)「楽しみながらボランティア活動を」『わたしの思』20.
- 内閣府(2016)「平成28年度高齢社会白書」.
- 手島洋(2015)「日本の高齢者観の形成と現状」『人間と科学』15(1), 23-34.
- 桜庭涼子(2014)「年齢差別禁止と定年制—EU法・英國法の展開を手がかりに」『日本労働研究雑誌』643. 31-40.
- 畠野相子・簗原文子(2013)「高齢者看護学実習におけるライフインタビューと高齢者理解との関連～高齢者イメージとエイジズムの変化の分析～」滋賀医科大学看護学ジャーナル, 11(1): 23-27.
- 新井 智之, 小野 絵美, 加藤 仁志, 高橋かおり, 佐藤 純, 細井 俊希, 丸谷 康平, 藤田 博暁(2013)「理学療法学科学生におけるエイジズムの調査とエイジズムに関連する要因の検討」第48回日本理学療法学術大会.
- 山添仁嗣(2013)「超高齢社会にあってエイジズムと向き合う」早稲田大学文化構想学部現代人間論系岡部ゼミ・ゼミ論文.
- 都築響一(2013)『独居老人スタイル』筑摩書房.
- 広石忠司(2013)「生涯現役社会に向けての障害」Business Labor Trend 2013.4.
- 八代充史(2013)「六五歳現役社会における『一律』と『個別』」Business Labor Trend 2013.4.
- 内閣府(2013)『平成25年度高齢社会白書』.
- 内閣府(2013)「平成25年度高齢者の地位社会への参加に関する意識調査結果(要約版)」
- 内閣府(2012)「平成24年度高齢者の健康に関する意識調査結果(要約版)」.
- 牛島慎之亮(2011)「年齢を理由とする偏見・差別を考える授業の開発」『授業実践開発研究』4, 27-36.
- 佐野望・桧原登志子(2011)「看護学生のエイジズムと高齢者看護学実習との関連—病院実習と福祉施設実習の学習要素からの検討—」『共立女子短期大学看護学科紀要』6, 1-10.
- 工藤由貴子(2011)「老いの可能性—向老世代の老年学—」『生活福祉研究』78, 1-11.
- 山本思外里(2008)『老年学に学ぶ—サクセスフル・エイシングの秘密』角田学芸, 77.
- 『現代社会学事典』(2011) 弘文堂.
- 岡崎強, 野口典子, 水谷俊夫編 (2008) 『新選・高齢者福祉論』.

- 原田 謙, 杉沢秀博, 柴田 博(2008) 「都市部の若年男性におけるエイジズムに関する要因」 『老年社会科学』, 29(4): 485-492.
- 関ふ.佐子(2008)「高齢者と年齢」 『週間社会保障』 No.2483, 42-47.
- 宍戸邦章(2008)「中高年が抱く高齢期ライフスタイルの分析—JGSS-2005を用いて—」 大阪商業大学論集, 4(2), 85-100.
- 加沢恒雄・訳ならびに解題(2007)『アメリカにおけるエイジズム研究30年の回顧と展望』 ジョディ A .ウイルギンソン ケネス F. ファーレイロ共著, 広島工業大学紀要研究編, 4, 315-325.
- 杉井潤子(2007)『現代社会における年齢差別(エイジズム)の実態解明と高齢化教育の推進』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課題番号16500475 研究成果報告書.
- 大嶋寧子(2007)「『募集・採用時の年齢制限禁止』の義務化一法改正に伴う成果と課題一」, みずほ銀行研究所, 1-15.
- 藤田綾子(2007)『超高齢社会は高齢者が支える一年齢差別を超えて創造的おいへー』 大阪大学出版会.
- 前田信彦(2006)『アクティブ・エイジング社会学—高齢者・仕事・ネットワーカー』ミネルヴァ書房.
- 斎藤ゆか(2006)『ウォンタリー活動とプロダクティヴ・エイジング』ミネルヴァ書房.
- 奥村隆一(2006)「高齢社会における『共生の思想』第3部 団塊高齢者を中心とした地域共生システムの構築」, 三菱総合研究所, 170-181.
- 共生社会形成促進のための政策研究会(2005)「『共に生きる新たな結び合い』の提唱」, 内閣府.
- 鳥羽美香(2005)「エイジズムと社会福祉実践—専門職の高齢者観と実践への影響—」 京都学院大学研究紀要 7(1), 89-100.
- 山崎隆志(2004)「雇用における年齢差別禁止への内外の取り組み状況」 『調査と情報』 446, 1-10.
- 小田勝利(2004)『サクセスフル・エイジングの研究』 学文堂.
- 南綾子(2004)「エイジズム：その意味と大学生への調査に見る高齢者差別意識」 『天理大学人権問題研究室紀要』 7, 1-14.
- 原田 謙, 杉沢秀博, 杉原陽子, 山田嘉子, 柴田博 (2004) 「日本語版Fraboniエイジズム尺度 (FSA) 短縮版の作成；都市部の若年男性におけるエイジズムの測定」 『老年社会科学』, 26(3) : 308-319.
- 『現代福祉学レキシコン第2版』 (2003), 雄山閣.
- 連沼剛(2003)「高齢者の一般その(対応・治療)の"Do's & Don'ts"!」 『治療一日常臨床で陥りやすい落とし穴一』 85.
- 『エイジング基本用語集』 (2003)
- 内閣府(2003)「平成15年度年齢・加齢に対する考え方に関する意識調査」.
- 柴田博(2003)「第2章 高齢者と『こころ』のケアの心構え 1.高齢者差別(エイジズム)(柴雄博・長田久雄編『老いのこころを知る』ぎょうせい, 57-70.
- アードマン・B・バルモア 著 ; 鈴木研一 訳(2002)『エイジズム：高齢者差別の実相と克服の展望』 明石書店.
- 安川悦子・竹島伸生編(2002)『高齢者神話の打破—現代エイジング研究の射程一』 御茶の水書房.
- 嶋村寛子(2002)「大学生のお年寄りイメージとそれを生み出す背景」 『立正社会福祉研究』 4(1), 4-12.
- 小川妙子(2001)「看護学生の高齢者へのエイジズム—1年生と3年生のFAQの比較—」 『順天堂医療短

- 期大学紀要』12, 35-41.
- 小坂啓史(2000)「エイジズムとしての老年観の要因に関する実証的研究」『ソシオロジスト』2(1).
- 辻正二(2000)『高齢者ラベリングの社会学』恒星社厚生閣.
- 奥山正司(1999a)「エイジズム—高齢者へのステレオタイプ」『現代のエスプリ』345(偏見とステレオタイプの心理学)至文堂, 109-118.
- 奥山正司(1999b)「建前としての敬老思想と本音としての老人蔑視の混在」『月刊 ばんぞう』7月号.
- 幾島幸子訳(1998)『エイジレス・セルフ』筑摩書房.
- 『人権事典』(1997)
- 総務庁長官官房高齢社会対策室(1996)「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平成8年)」.
- 『現代エイジング事典』(1996)
- 浜口晴彦他編(1996)『現代エイジング事典』早稲田大学出版部.
- 堀尊夫(1996)『老いと死に関する調査研究』大阪教育大学生涯教育計画論研究室.
- 高橋勇悦・高萩盾男編(1996)『高齢化とボランティア社会』弘文堂.
- アードマン・B.パルモア 著；奥山正司 [ほか]訳(1995)『エイジズム：優遇と偏見・差別』法政大学出版局.
- 寺沢恵美子・山本博子訳(1995)『老いの泉(上・下)』西村書店.
- 深谷昌志(1995)「親孝行の終焉」黎明書房, 167-174.
- 大阪教育大学生涯教育計画研究室(1995)「老人イメージに関する調査研究—生涯教育の視点から一」.
- 厚生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1995)「平成7年国民生活基礎調査」.
- 市瀬幸平(1994)「老いと死」関東学院大学人文科学研究編『死を考える』所収. 理想社.
- 内閣府総理大臣官房広報室(1993)「高齢期の生活イメージに関する世論調査」.
- 小谷野旦(1993)「老いに対する態度」柴田博・芳賀博他編著『老年学入門』川島書店.
- 財団法人東京都老人総合研究所プロジェクト研究『老化と寿命に関する長期的横断的追跡研究報告』.
- 内蔭耕二監訳(1991)『老後はなぜ悲劇なのか？—アメリカの老人たちの生活—』ザカルフレンド社.
- 『新版フェミニズム事典』](1991).
- 奥山正司(1990)「高齢者に対する認識およびネガティブ・バイアス・スコア、ポジティブ・バイアス・スコアについて」(総務庁官官房老人対策室編『長寿社会と男女の役割、意識—長寿社会における男女の意識の傾向に関する調査報告』).
- 総務庁老人対策室(1989)「長寿社会と男女の役割、意識—長寿社会における男女の意識の傾向に関する調査報告」.
- 東条光雄(1987)『待遇・介護に関する特養職員の意識と態度』川島書店.
- 副田義也(1986)「現代日本における老年観」副田義也編『老いの発見2—老いのパラダイム』岩波書店.
- 前田大作・サスマン(1980)「青壯年の老人観および老親に対する責任意識-日米比較-」『社会老年学』12, 29-40.
- 前田大作(1978)「大都市青壯年の老人観及び老親に対する意識調査」『社会老年学』10, 3-22.
- 佐藤泰道・長嶋紀一(1976)「大学生による老人のイメージ」『浴風会調査研究紀要』60, 73-76.

<영어문헌>

- Atchley, R. (1988) Social forces and aging. Belmont, CA: Wadsworth.
- Berelson, B., & Steiner, G. A. (1964) *Human behavior*. New York: Harcourt, Brace.
- Butler, R.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 243-246.
- Butler, R.N. (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Harper & Row.
- Caporael, L. R., Lukaszewski, M. P., and Culberaton, G. H. (1983) Secondary bavy tale: judgments by institutionalized elderly and their caregi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46-754.
- Cumming E., & Henry, E. (1961) *Growing old*. New York: Basic Books.
- Friedan Betty. (1993) *The Fountain of Age*, Curtis Brown Ltd.
- G.L. Maddox, ed., (1995) *The Encyclopedia of Ageing*, Second Editio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ongigo, C. (1987) Subcultures. In G.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Palmore, E.B. (1977) The Facts on Aging: A Short Quiz, *The Gerontologist*, 17.(4), 315–320.
- Palmore, E.B. (1988) *The Facts on Aging Quiz*,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Palmore, E.B.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Kaufman Sharon, R. (1986) *The Ageless Self: Source of Meaning in Later Lif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rauss, I. (1987) Reaction time. In G. Maddox(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North, M. S. & Fiske, S.T.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 982-997.
- Rhodes, S. (1983) Age related differences in work attitudes and behavior, *Psychological Bullitin*, 93, 328.
- Riley, M., & Foner, A. (1968) *Aging and society*, 1, New YorkL Russell Sage.
- Ryan, E. B., Hamilton, J. M., and Kwong See, S. (1994) Patronizing the old: How do younger and older adults respond to baby talk in the nursing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9, 21-32.
-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7)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Inc.

제4장 프랑스의 연령주의

손동기

제1절 연령주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는 1585년에 연령(les âges)을 ‘출생부터 18세, 유아(puerilité), 18세~25세, 청소년기(adolescence), 25~35세, 청년 혹은 성년기, 그리고 노년(vieillesse)’ 이렇게 네 기간으로 구분을 했다.²²⁾ 그리고 노년을 다시 둘로 구분을 했는데 49세 전과 후로 구분을 했다. 49세 이후는 상태에 따라 우선, 시민의 역할을 노력하고 하는 ‘덜 여문 노인네(les verts vieillards)’ 둘째, ‘침대와 식탁에만 머무는 노인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관(fosse)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이들’로 구분을 했다. 파레는 50세 이상은 연령으로 더 이상 구분을 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과 상태(des comportements et des états)로 구분을 했다. 이러한 방법은 나이로 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동질성(homogénéité)을 가진 최소 분류를 가능하게 했다.

22) Béatrice Beaufils, 2007, *Du découpage de la vie à l'âgisme*, Sciences Sociales et Santé, Vol. 25, n° 3, pp. 107-108.

112 | 연령주의(ageism)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표 4-1] 노인의 연령 기준

연령	연구기관	연구주제
50세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시니어 일자리 2007-2010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시니어 주거 2009
	삶의 조건 연구·관찰 조사센터(CREDOC)	시니어 소비 2013
	Communauté européenne	유럽의 고령화에 대한 장기적 연구
55세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가계의 수입과 자산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시니어 고용률 2011
	INED	시니어 고용률 2012
	삶의 조건 연구·관찰 조사센터(CREDOC)	시니어의 가치와 69년 5월의 유산에 대한 연구 2008
	OECD	시니어 고용률 2013
60세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인구통계와 전망 2011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시니어의 삶의 상태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노인에 대한 도움 2011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노인의 사회성 1999
	삶의 조건 연구·관찰 조사센터(CREDOC)	노인의 취약성 2008
	DREES	노인에 대한 각 도의 사회적 지원 2004
	Eurostat	성별 노인의 빈곤 2012
65세	Eurostat	노인의 빈곤 2012
	Eurostat	노인부양지수 2012
	Eurostat	인구구조와 고령화 2012
70세	INED	노인의 사고와 신체적 피해 2010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노인의 수입 2009
75세	삶의 조건 연구·관찰 조사센터(CREDOC)	노인의 취약성 2008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	인구통계와 전망 2001
80세	OECD	노인 돌봄 2013

자료) CREDOC, 2013, p.21.

최근에는 연령으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구분을 한다는 것이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해서도 유야식이 아닌 0-3개월, 3-6개월 그리고 1살 등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서도 연령으로 구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특별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청년(Jeunes)과 노인(personnes âgées)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외에 인구를 연령별로 구분을 할 때는 15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따

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그 이외에 20세, 20-59세, 60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특히 취업률이나 실업률을 구분을 할 때는 15-24세를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한편 청년(Jeunes)이란 키워드(mot-clé)로 동거(cohabitation) 형태를 알고자 할 때는 15-19세, 20-24세 그리고 25-29세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한편 일반의(généraliste)의 진료 중 차지하는 비율은 60-79세와 8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하고, 사망의 원인은 65-74세, 75-84세, 85-94세 그리고 9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연령을 잣대로 어떤 현상을 혹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연구의 주제에 따라 비슷한 연령층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에서도 노인을 나타내는 'Seniors', 'Personnes âgées'를 연구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국립통계청 뿐만 아니라 OECD나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도 같다.

하지만 흔히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거나, 미디어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뤄지는 가장 흔하게 숫자로 이뤄진 담론은 연령과 관련된 차이에 대한 단순한 이론을 생산하는 방식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의 방식은 '연령주의(L'âgisme)'를 수반한다.

1) 연령주의(l'âgisme)란?

연령주의(L'âgisme)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그 기준이 되는 '나이(L'âg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나이이다. 프랑스어 대사전 Petit Robert에 따르면 늙음을 뜻하는 'Vieux(se)'는 라틴어에서 '오래된' 늙은'이란 단어 'vetus', 'veteris'에서 왔다고 한다. 그리고 '늙은, 노후한(Vétuste)', '더 이상 좋은 상태가 아닌(N'est plus en bon état)', '훼손된, 망가진(Détérioré)', '황폐화된(Délabré)'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우리가 '늙음(Vieux)'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삶(vie)'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늙은이(Le vieux)'라고 하면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 실제로 여론전문조사기관 TNS Sofres에서 진행한 2009년 여론조사²³⁾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프랑스인들에게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느냐는 조사에서 40%가 '시니어(Les seniors)', 38%가 '은퇴자(Les retraités)'라고 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은 '노인(Les personnes âgées)'로 67%나 된다.

23) 18세 이상 1450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26일-29일 그리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6일과 17일에 조사를 했다. 50세 이상은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114 | 연령주의(ageism)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표 4-2] 50세 이상이 불리기 원하는 호칭과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호칭 비교
(단위: %)

	불리기 원하는 호칭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호칭
시니어(Les seniors)	40	16
은퇴자(Les retraités)	38	55
연장자(Les aînés)	25	9
노인(les personnes âgées)	23	67
어르신(Les anciens)	22	33
베이비붐어(Les baby-boomers)	7	0
베테랑(Les vétérans)	7	3
늙은이(Les vieux)	3	33
의견 없음	-	-

자료) Notre temps, "L'appellation des plus de 50 ans : perceptions, représentations et sémantique", TNS Sofres에 의해서 조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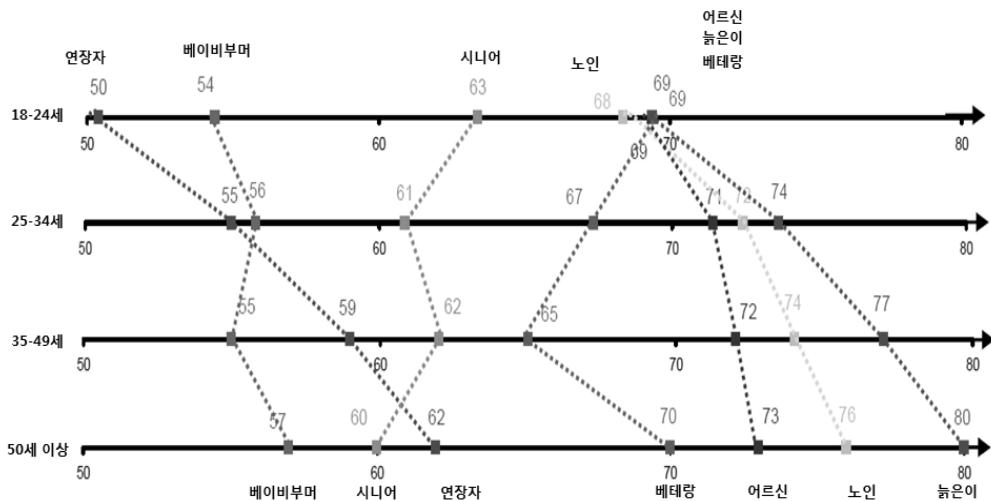
같은 조사에서 프랑스인들은 노인을 나타내는 명칭에 따라 다른 기준의 연령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늙은이(un vieux)’로 76세, ‘노인(les personnes âgées)’은 74세 그리고 ‘베이비붐어(baby-boomer)’는 56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을 지칭하는 어휘들이지만 최고 20세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18-24세들에게는 어르신, 늙은이, 베테랑이 비슷한 연령대로 인식을 하지만 50세 이상에겐 베테랑은 70세, 늙은이는 80세로 10세가량 차이가 난다.

[그림 4-1] 프랑스인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호칭에 따른 연령



자료) *Idem.*

[그림 4-2] 연령에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호칭에 따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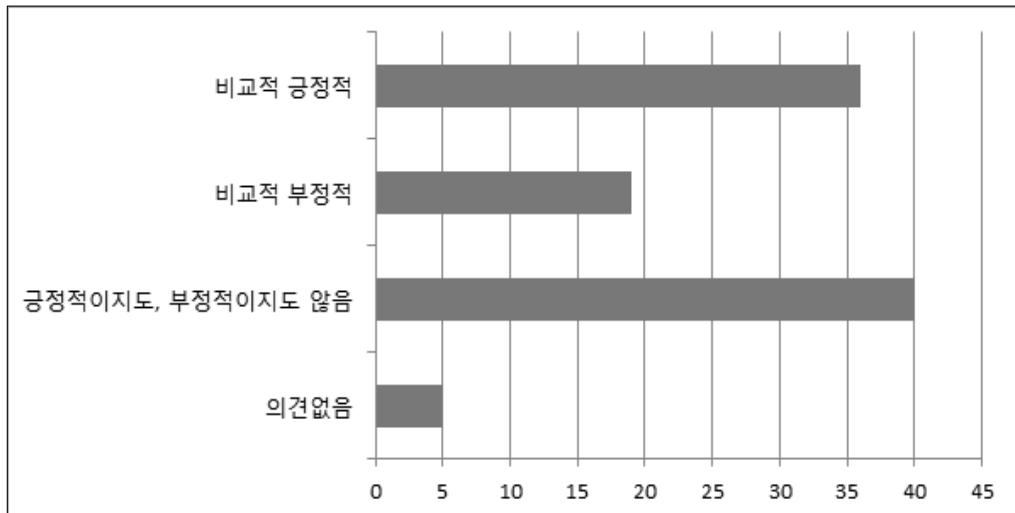


자료) *Idem.*

‘노인’,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 중에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들이 덧붙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노인이라는 하는 ‘기표(signifiant)’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기의(signifié)’에 담겨있는 의미가 문제가 아닐까 한다.

한편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년에 대한 삶의 방식도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사회가 젊어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이라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지속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와 역량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50세 이상이 미디어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36%는 50세 이상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단지 19%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40%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응답했다.

[그림 4-3] 미디어에서 50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료) *Idem.*

Anne-Marie Guillemard 파리5대학 명예교수는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강제로 퇴출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노인들이 노동시장 혹은 사회적 활동의 장에서 퇴출되거나 혹은 스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사회복지제도와 노동법에 대한 수 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집단으로 그 힘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노인들의 정치적 힘에 대해서 Jean-Philippe Viriot Durandal(2008)은 ‘회색의 힘(le pouvoir gris)’라고 칭했다. 즉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의 삶을 중심하는 집단으로 사회적 참여가 부족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강해질 우려가 있다. 즉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노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기의’가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닐까 한다.

연령주의(L'âgisme)는 미국에서 1969년 노년학자인 Robert Butler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연령주의는 ‘나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discrimination, ségrégation)이나 멸시(mépris)’를 나타낸다. 연령주의는 노인이나 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Angus et Reeve, 2006; Kelchner, 1999; Palmore, 1999; Stones et Stones, 1997).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almore, 1999). 유

립연합 'Stop Discrimination' 홈페이지의 용어집에서 '연령주의는 나이를 이유로 한 집단(un groupe) 또는 개인(une personne)'에 대한 선입견(un préjug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discrimination par l'âge, fondée sur l'âge, liée à l'âge, 등등)이나 연령주의(terme d'âgisme)라는 용어들은 매우 근래에 와서야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Vincent Caradec, Alexandra poli, 2009, p.15). 미국이 이미 1960년대에 연령이 차별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프랑스는 1990년 초에 들어서야 비슷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M. Mercat-Brun, 2001; J. Macnicol, 2006). 주요 5대 일간지(Le Figaro, Libération, Le Monde, La Tribune et Les Echos)에서 '연령차별'에 대한 기사는 1998년 4개에서 2006년 45개로 점차 증가해왔다(Vincent Caradec et al, 2009). 2007년에는 28개 2008년에는 22개로 줄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프랑스에서 연령차별이란 용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반적인 기사의 증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2008년에 만들어진 '연령주의 관측소(l'Observatoire de l'âgisme)'는 연령주의는 성에 의한 차별이 성차별, 인종에 의한 차별이 인종차별 이듯이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건강), 인종 그리고 노조활동에 이어 4번째 주요 차별의 요인이다. 연령과 관련된 차별은 주로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외에 신용등급이나 보험 혹은 주거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연령주의는 꼭 연령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차별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도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연령주의는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도 문제이지만 모든 연령에 대한 편견 혹은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연령주의(L'âgisme)는 '인종차별주의(racisme)'와 '성차별주의(sexisme)'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 세 가지는 모두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 편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연령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는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연령주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얻게 되는 지위(statut)라는 덤이다. 즉 누구나 오래 살면 연령주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연령주의를 나이로 분류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즉 연령주의는 어떤 사회, 어떤 시대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종이나 성은 불편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연령주의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2) 디지털 연령주의 (Agisme numér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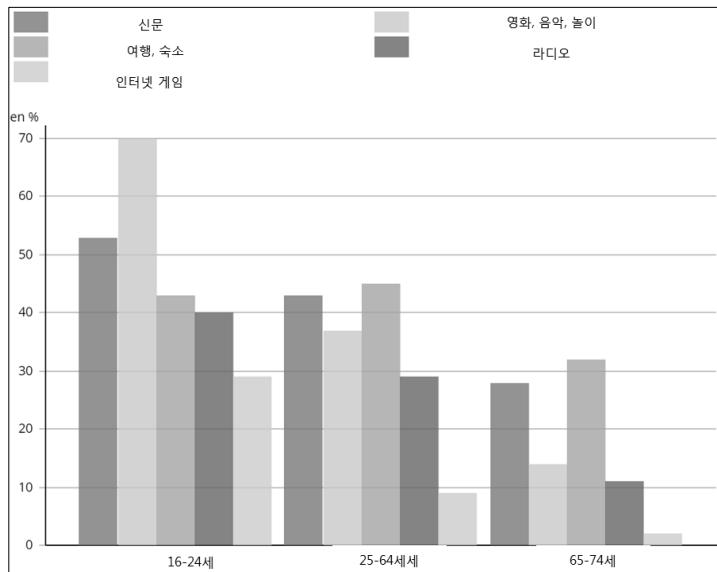
한편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정보화 매체의 활용과 관련해서 연령 차별이 발생한다. 노인들을 젊은이들에 비해서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화 기기들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하나의 집단(un groupe homogène)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한다(David Herold, 2012, pp.71-87).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용이나 접근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디지털 단절(*la fracture numérique*)’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Kim Sawchuk 컨커디어 대(Concordia University) 교수는 ‘디지털 연령주의(*l'âgisme numérique*)’라고 용어를 사용했다.

한편 디지털 단절과 관련해서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2014년 4월 9일에 국회에서 현재 프랑스 사회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 발표 중에 ‘디지털 단절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단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이미 2012년 12월 13일에 독립적인 자문 위원회로 ‘국립디지털위원회(*Le 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를 설립해서 사회의 디지털화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해오고 있다.²⁴⁾ 2016년 2월 8일에는 대통령령(*le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u 8 février 2016*)에 의거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이 되었다. 국립디지털위원회는 프랑스 내 디지털과 관련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다. 위원회는 급속히 사회가 디지털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l'exclusion sociale*)’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공공 기관의 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하기 힘든 이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디지털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적응의 기회와 기간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나 새로운 것을 빠르게 습득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사회적 소외 효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실제로 ‘삶의 조건 연구·관찰 조사센터(Centre de Recherche pour l'Etude et l'Observation des Conditions de Vie, 이하 CREDOC)’에서 2015년에 한 조사에서는 60세-69세는 76%, 70세 이상은 38%로 프랑스인 평균 인터넷 사용률 84%보다 아래에 있고 수입이 낮은 이들 79%보다도 낮게 나타났다(CREDOC, 2015, p.51). 즉 과거 ‘나이’와 관련해서 없던 새로운 소외와 차별의 영역이 발생했고, 그 심각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24) 이 위원회는 2012년 12월 13일 법령 n° 2012-1400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

25) Libération, 2016년 11월 22일, ‘L'administration numérique ne doit pas accélérer l'exclusion sociale.’

[그림 4-4] 2015년 연령에 따른 여가로 인터넷 활용



자료) Eurostat, EU-TIC, 2016..

3) 사회적 소외(exclusion sociale)로써의 연령주의

프랑스는 ‘사회적 부담(fardeau social)’으로 인식되는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관련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결정하는 힘의 관계, 사회적 역할 그리고 한 인구집단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적 소외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표상, 정치,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의 각종 기구들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용시장이다. 30대는 너무 젊다(trentenaires jugés « trop jeunes »)고 차별을 받고, 40대는 너무 늙었다(quadragénaires jugés « trop vieux »)고 차별을 받는다. 사회적 소외는 비단 연령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성(性)’, ‘인종’, ‘장애’ 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를 통해서 피아를 구분하고, 일부의 타자를 배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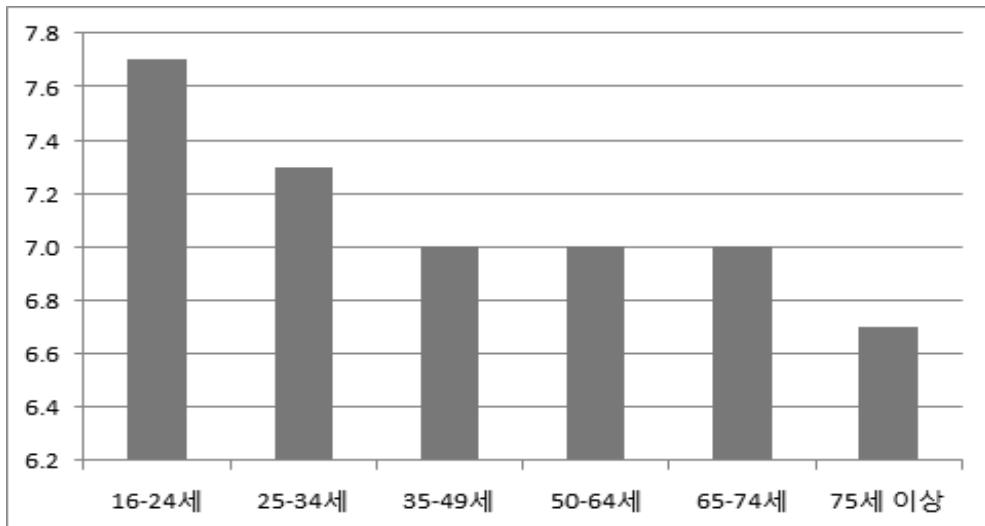
나이에 의한 사회적 소외는 주로 고령자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늙어감(ageing)’은 ‘사회적 부양의 대상’ 혹은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문제는 같은 연령을 가진 개인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되면서 사회적 소외로서의 연령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2. 연령주의의 구성요소

1) 편견(Préjugé)

프랑스어 대사전 'Le nouveau Petit Robert (2009)'에 따르면, 편견은 '임시적인 의견을 내는데 필요한 단서'를 말한다. 연령과 관련해서 잘못된 믿음은 고령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끼친다. 때로는 편견이 어떠한 그룹에 대한 일반화된 방법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고정관념과도 비슷하다. 물론 편견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령 특히 고령과 관련해서 만들어 지는 편견은 부정적인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이 '나이듦', '고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연령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결과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5] 2013년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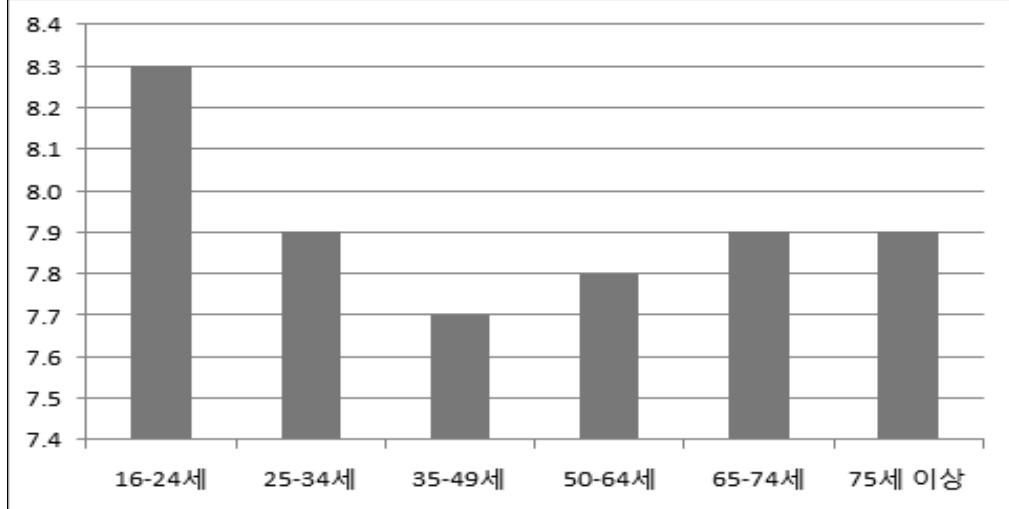


* 10점 만점 기준.

자료) Eurostat, EU-Silc.

위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이 되면 삶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일반화된 편견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기존에 통상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 2013년 연령에 따른 개인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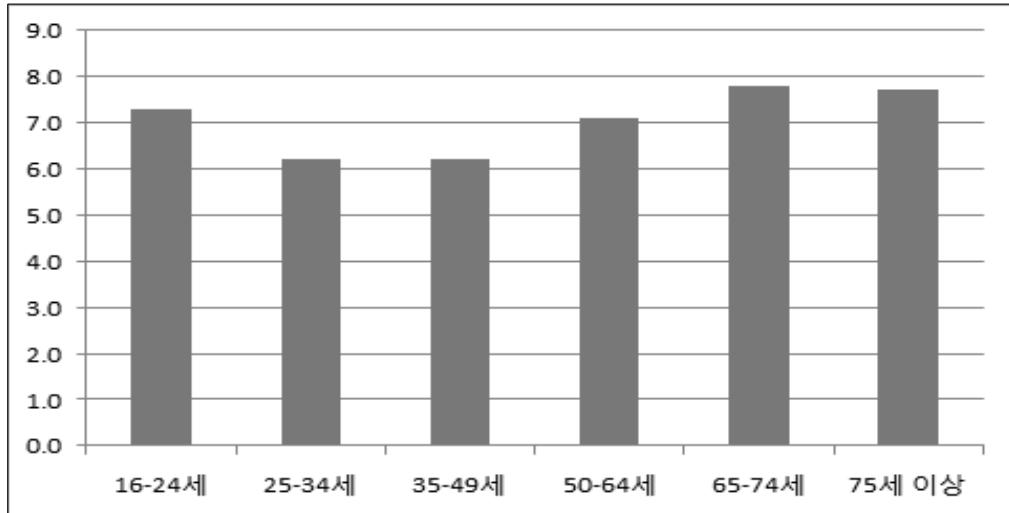
* 10점 만점 기준.

자료) Eurostat, EU-Silc.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들이 다 맞는 것은 아리다. 위 [그림 4-6]은 노인이 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고독에 대한 편견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아가 들어도 개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개인시간이 부족 한 때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이 되면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무위(無爲)’로 인해서 주어 진 노후의 자유시간에 대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래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에 주어진 시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 연령층 중에서 65 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2013년 연령에 따른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수준



* 10점 만점 기준.

자료) Eurostat, Eu-Silic.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491405#tableau-Donnes>, 2016년 12월 22일 검색)

실제로 2014년 전문여론조사기관 Harris Interactive에서 50-70세 프랑스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seniors)’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갖는 이미지는 어떠한가?” 질문에 대해서 5%가 ‘매우 좋은 이미지’, 54%가 ‘좋은 이미지’ 그리고 40%가 ‘나쁜 이미지’, 5%가 ‘매우 나쁜 이미지’라고는 결과가 나왔다. 은퇴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5%가 ‘매우 좋은 이미지’, 56%가 ‘좋은 이미지’ 그리고 33%가 ‘나쁜 이미지’, 6%가 ‘매우 나쁜 이미지’라고는 결과가 나왔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니어(Seniors actifs)들은 4%가 ‘매우 좋은 이미지’, 54%가 ‘좋은 이미지’ 그리고 37%가 ‘나쁜 이미지’, 4%가 ‘매우 나쁜 이미지’라고 답했다.²⁶⁾ 즉 프랑스 사회에서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혹은 받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는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휘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은퇴와 제일 연관되는 단어들은 자유(Liberté) 70%, 여가 68%, 여행 53%, 가족 52%, 프로젝트 42%, 건강 42%, 행복 37%, 안도(soulagement) 36%, 관계 27%, 부흥(renouveau) 24%, 외로움 12%, 무료함 11% 그리고 슬픔 7%로 나타났다.²⁷⁾ 반면 일반적인 편견에 따른 노후와 연관된 어휘들로 꼽히는 외로움, 무료함, 슬픔은 제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http://www.lavie.fr/famille/seniors/sondage-retraite> (언론사 lavie 의뢰로 전문여론조사기관 Harris Interactive, 2016년 12월 27일 검색)

27) <http://www.lavie.fr/famille/seniors/sondage-retraite> (언론사 lavie 의뢰로 전문여론조사기관 Harris Interactive, 2016년 12월 27일 검색)

이와 같이 프랑스 노인들에게는 통상적인 노인에 대한 편견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편견은 고정적인 관념이라도 생각하기 쉽지만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고정관념(Stéréotype)

프랑스어로 노인을 뜻하는 단어는 다양하지만 보통은 «vieux», «personnes âgées» 혹은 최근 들어서 «seniors»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들이 갖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고정관념은 개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일반화된 의견이나 신념의 총체를 말한다. 즉 고정관념은 편견이나 차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Bourhis & Leyens, 1999). 고정관념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돌고 있는 노인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실제로 노인에 대한 주요 고정관념은 쇠약(faiblesse), 혀약함(vulnérabilité), 의존성(dépendance), 의욕상실(perte d'intérêt), 질병(maladie), 굴복(soumission), 무기력(apathie), 고독(isolément), 불안정(insécurité) 그리고 비생산성(improductivité)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비현실적으로 광고에서나 불법한 이미지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인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 환경, 시대, 교육에 의해서 종종 심어진 신념이나 미리 생각한 의견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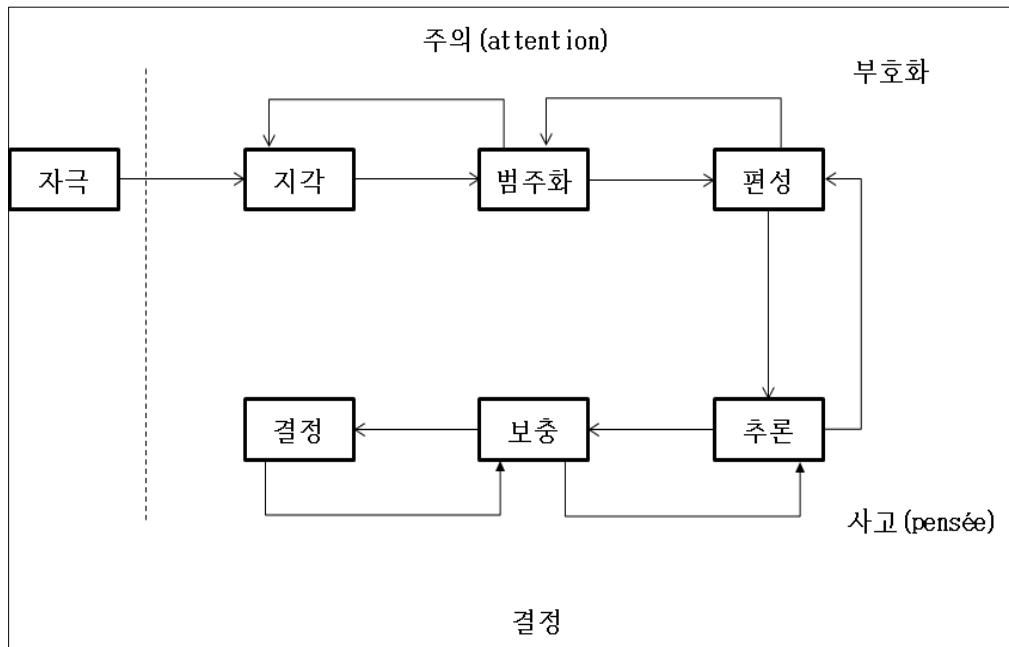
고정관념은 완고하고(rigide), 비논리적이고(illogique), 단순화하고(simplifié), 극단적이며(exagéré) 부정적인(négatif) 믿음의 총체와 같이 특징지어지기도 한다(Gardner, 1994).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정관념과 관련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고정관념은 한 부류(une catégorie)에 대한 극단적인 믿음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 부류와 관련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Allport (1954, p.191)
- «고정관념은 대다수의 개인들이 개인들의 계급을 묘사하는데 동의를 한 행위들의 총체로 정의 된다.» Vinacke (1957, p. 229)
- «고정관념은 고정 관념화된 그룹과 다른 그룹을 구분하는 예언(prédiction)들이 다.» McCauley & Stitt (1978, p. 935)
- «고정관념은 그룹에서 개인의 특징에 대한 믿음의 총합이다.» (Ashmore & Del Boca, 1981 ; p.16)
- «고정관념은 집단에 대한 개인의 예상, 믿음, 인식을 내포한 인지적 구조이다.» Hamilton & Trolier (1986, p.133).

- «고정관념은 한 부류의 구성원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의 합인 실제적·상상적 견본이다.» Brewer & Lui (1989)

즉 고정관념은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Hamilton et Sherman(1994)은 특징적인 범주화의 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인의 인식의 도식(des schémas de perception d'un individu)과 같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적 그룹의 범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도식들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그림 4-8] Fiedler의 사회적 정보 취급 과정



자료) Valérian Boudjemadi, 2009, p. 23, 재인용.

개인은 고정관념을 매개(l'intermédiaire)로 성(sex), 연령과 같이 드러나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범주화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범주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특징을 부여한다(Snyder, 1981).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부호화’(encodage)되고 이후 도식화(Schéma)가 되어서 각 대상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게 처리가 된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과정에서 회귀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기존

의 고정관념은 변화 혹은 수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한 사회에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을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성된 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Hummert와 그의 동료들(1994)은 나이로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3그룹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수량화를 해봤다. 이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노인(senior)’에 대한 고정관념이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그룹들은 비슷한 점도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Hummert의 연구를 통해서 연령을 통한 고정관념은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비슷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연령층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고정관념의 수량화 (1994년)

구분	긍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
청소년	3	5
성인	4	6
노인	5	7

자료) *Idem.*, p. 52, 재인용.

3)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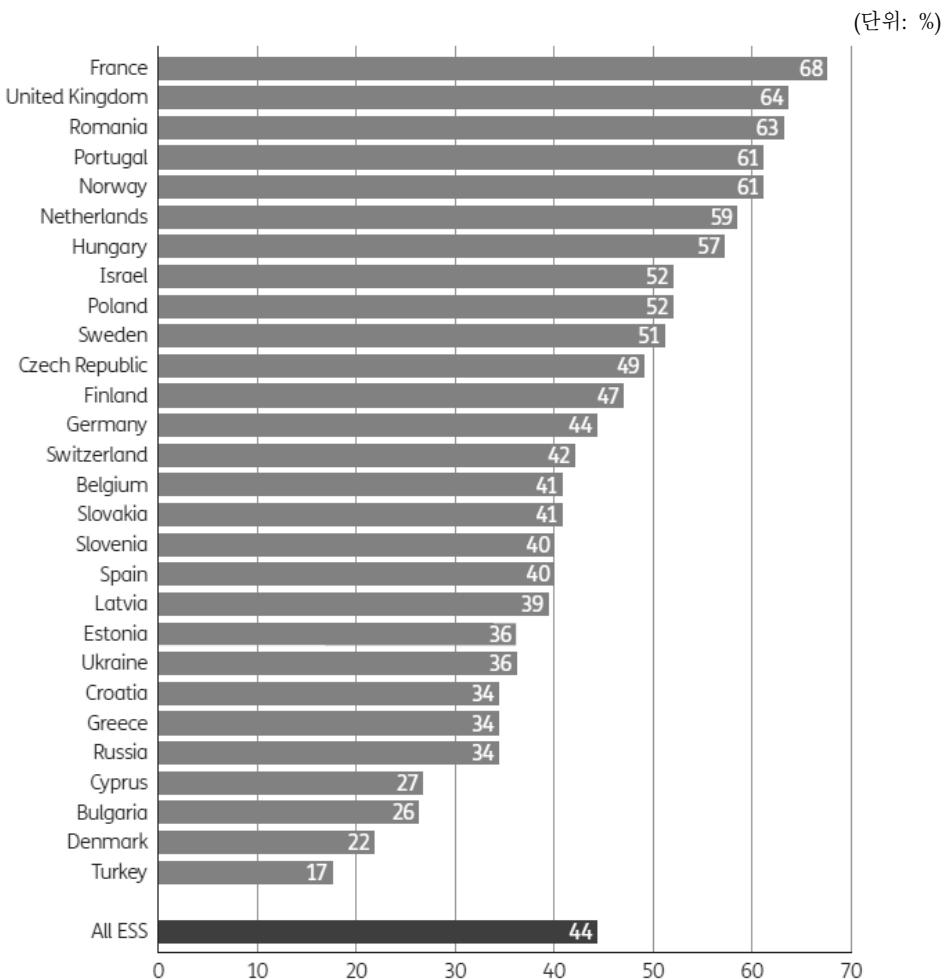
차별(discrimination)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다른 처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성(性), 인종, 종교, 출신, 나이 등에 근거해서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 부정한 처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정치적 차별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당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경제적 차별은 노동,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등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에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유럽 28개국, 55,000명을 대상으로 ‘Ageism in Europe’에 따르면, 조사자의 44%가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35%는 나이를 근거로 부당한(unfair)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인종(17.3%)이나 성(性, 24.9%)의 문제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9%는 나이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29%는 모욕(insulted), 학대(abused)를 경험했다고 한다. 51%는 고용주가 20대의 젊은 사원을 선호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 57%는 70대 이상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8%로 조

126 | 연령주의(ageism)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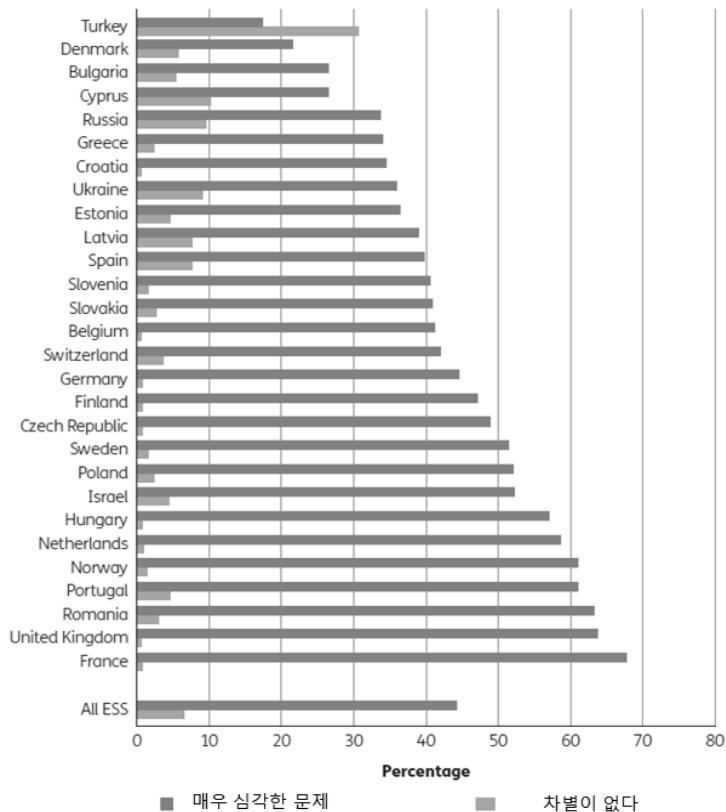
[그림 4-9] 유럽국가들의 연령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 Age UK, 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2011, p.32.

[그림 4-10] 유럽국가들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조사: 심각한 문제 / 전혀 없다

(단위: %)



자료) Age UK, 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2011, p.33.

프랑스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고용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차별의 주요 이유는 민족 혹은 인종과 같은 출신이다. 이는 산업사회 성장기를 거치면서 필요한 노동력이 프랑스 주변국에서 몰려든 시기와 이후 1차·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필요한 노동력들이 다른 대륙에서 이주해온으로 인해서 인종이 다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왔고, 현재도 이러한 차별로 인한 사적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의 성을 가진 이를 특별한 사유가 없이 채용에서 누락을 시키는 것과 같은 차별이 존재한다.²⁸⁾ 한편 고용에서 차별의 이유로 연령은 출신, 건강, 장애, 노동조합 활동, 임신 다음으로 6번째를 차지했다.

28) 프랑스 의회의 차별 철폐와 관련된 보고서 N° 695(12페이지)에 따르면 고용주들의 70%가 프랑스인의 성을 갖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 <http://www.assemblee-nationale.fr> (프랑스 의회 홈페이지, 2016년 12월 20일 검색)

[표 4-4] 2015년 프랑스 기관별 이의 신청된 주요 차별 이유 분포

(단위: %)

	고용	공공서비스	물품, 사적 서비스	교육	주거	전체
출신(인종)	9.6	6.2	2.8	1.3	2.7	22.6
장애	8.3	4.1	2.9	3.7	2.1	21.1
건강	9.6	0.7	1.2	0.7	0.6	12.8
나이	4.3	0.7	1.3	0.3	0.3	6.9
노동조합 활동	5.5	-	0.1	-	-	5.6
임신	4.5	0.1	0.1	0.1	-	4.8
가족 상황	2.5	0.6	0.7	-	0.6	4.4
성(性)	3.1	0.3	0.8	0.1	0.1	4.4
종교	1.4	0.6	0.6	0.7	0.1	3.4
국적	0.6	1.7	0.3	0.1	0.1	2.8
외모	1.3	0.7	0.5	0.2	-	2.7
주거 지역	0.8	0.5	0.9	0.2	0.2	2.6
정치적 견해	0.9	0.2	0.3	-	0.1	1.5
성적 취향	0.7	0.4	0.2	-	0.2	1.5
기타	1.2	0.9	0.5	0.2	0.1	2.9
합계	54.3	17.7	13.2	7.6	7.2	100

자료) Le Défenseur des droits, Rapport annuel d'activité, 2015, p.75.

4)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의 원인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의 원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해서 ‘너무 궁정정적으로’ 혹은 ‘너무 부정적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일으키는 요인들로는 ‘노화에 대한 무지(Méconnaissance du vieillissement)’, ‘정보의 인지적 처리(Traitement cognitif de l'information)’, ‘개인의 보호 메카니즘(Mécanismes de protection de l'individu)’, ‘사회문화적 컨텍스트(Contexte socioculturel)’, ‘나이의 분리(Ségrégation des âges)’ 등이 있다.²⁹⁾

노화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가질 성향이 커진다고 한다(Angus et Reeve, 2006; Palmore, 1999; Stones et Stones, 1997).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다. 어린이들은 범주화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적인 틀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적인 틀을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삶을 경제적

29) Conseil des aînés du Québec, 2010, ‘Avis sur l’âgisme envers les aînés : état de la situation’, pp. 9-13.

으로 인식하고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고정관념은 인종, 성(性) 그리고 나이가 일차적인 범주의 역할을 한다(Nelson, 2005). Palmore(1999)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특히나 노인들과 관련해서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두려움 관리(*la gestion de la peur*)’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보호 매카니즘은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를 잘 보여준다고 한다(Dozois, 2006; Martens, Goldenberg et Greenberg, 2005; Nelson, 2005). 즉 노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신체적 쇠퇴가 되는 것으로 인해 좌절을 겪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컨텍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는 경제적인 관점이 크다. 특히 산업사회 등장 이후에 노인들의 위상과 신분이 떨어졌다. 이는 기술에 대한 습득이나 교육이 경험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의무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 이는 생산력과도 관련이 있고, 연령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사회적 부담(*fardeau social*)’이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연령을 구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연령주의가 만들어진다. 나이에 따른 차이에 따른 건강보험이나 교육 등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비슷한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게 된다.

4. 제도(nomologique)를 통해서 본 연령주의

1)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연령주의

프랑스 헌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1조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법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les distinctions sociales*)은 공익(*l'utilité commune*)에 기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종교적·신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인간상 및 사회질서의 모습을 자유와 평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평등과 관련하여 1789년 인권선언은 ‘법에서의 평등’을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La loi favorise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ainsi qu'aux responsabilités professionnelles et sociales)³⁰⁾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는 헌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5공화국 헌법에서의 평등권은 명시적인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1789년 인권선언문과 1946년 헌법 전문에 나오는 평등권이 현행 헌법에서도 유효하다고 현행 헌법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최근에는 노동 분야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랑스에서 평등원칙은 규율이나, 공무원 선발과 같은 사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225-1은 차별에 대해 '출신, 성별, 가족상황, 건강, 나이, 장애, 외보, 성정체성, 정치적 성향, 프랑스어 능력 등을 구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5-2는³¹⁾ 위에서 규정한 차별로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용을 거절하고나, 해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로는 최고 3년의 금고형과 벌금 4만 5천 유로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차별금지의 법은 형법에서 1970년대 초반, 노동법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법이 마련된다. 이후에도 2001년 11월 16일 차별해소(*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령과 성(姓)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연령'은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차별사유이다.

한편 프랑스는 2004년 12월 30일에 차별 철폐를 위해서 독립된 기구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고등청(HALDE,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을 설립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은 2004년 12월 30일 법률 4조(*Loi n°2004-1486 du 30 décembre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에 따라 고등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³²⁾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고등청은 신청인이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심문과 조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조사가 마치면 검사에게 조사한 결과와 자료를 전달하여 법적 조치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 독립된 기구는 프랑스의 평등을 신장시키고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역할을 2011년 3월 1일까지 맡아 왔다.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고등청'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과할 수는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³³⁾ 현재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고등청'의 임무는 '권리 보호관(Défenseur

30)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프랑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2016년 12월 24일 검색)

31)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년 12월 20일 검색)

32)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년 12월 22일 검색)

des droits)'이 맞고 있다. 권리 보호관은 차별철폐와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형법(Article 225-1)으로 정한 금기 기준과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감시하고 있다.³⁴⁾ 즉 권리 보호관은 성(性), 출신, 임신, 가족상황, 외모, 성(姓), 거주지역, 건강상태, 장애, 유전적 특징, 품행(mœurs), 성적취향, 성정체성, 연령,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활동, 인종(인종, 국가), 독립성 상실(Perte d'autonomie), 개인의 특별한 취약점(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등 불평등이 발생하기 쉬운 22개의 주요 차별 이유를 부분하고 있다.

권리 보호관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역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권리 보호관은 고용과 노동, 주거, 재화와 서비스(biens et services), 돌봄과 사회서비스, 교육으로 나눠서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차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들은 2015년 6월에 선정된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43명의 권리 보호관 위원들(délégués du Défenseur des droits) 중 누구에게나 연락을 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법에서의 차별주의와 연령주의³⁵⁾

프랑스에서 노동과 관련된 모든 법령은 '노동법(code du travail)'에 명시가 되어 있다. 고용과 관련된 차별 역시도 노동법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국제 규정이나 유럽연합의 지침의 영향을 받아 점차 명문화되어 오고 있다.

프랑스는 1982년 8월 4일 '오루법(la loi Auroux)'으로 불리는 법률(제82-689호)에 의해 노동법 전 L.122-45조가 신설한다. 이로 인해서 출신, 성별, 가족상황,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조합활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노동법 전 L.122-45조는 출신, 성별, 품행, 성정체성, 나이, 가족상황, 유전적 특성, 민족(인종),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활동, 종교, 외모 등등에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연령'은 2001년 11월 16일 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차별사유이다. 연령은 사전적 의미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수치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정신적·심리적·육체적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며, 사회학적으로는 사람에게 일정한 지위와 역할·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반면 노동법 L.122-45-3조 제1항에 의하면, "연령에 기초한 대우의 차이가 고용정책

33) <http://www.defenseurdesdroits.fr> (권리보호관 홈페이지, 2016년 12월 22일 검색)

34)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년 12월 22일 검색)

35) 프랑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안주엽 외 2007년 노동과 차별: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프랑스 부분을 요약해서 인용해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목적 등과 같은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적정한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법의 제2항은 그 예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청년 및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근로조건을 설정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직업훈련에 근거하여, 또는 퇴직 이전의 합리적인 고용기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채용에서의 연령상한(un âgemaximum)을 정하고 있다.³⁶⁾

3) EU의 연령차별금지정책

유럽연합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함께 늘어난 노후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 그리고 한편으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고령노동자들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을 지침으로 만들었다. 이 지침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각 회원국에 국내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서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의존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1997년 10월 2일, 암스테르담조약이 조인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유럽연합은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였다.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개정된 유럽공동체조약 제13조에 의하면, “본 조약상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본 조약이 공동체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유럽이사회(Council)는 성별, 인종적 내지 민족적 기원, 종교 내지 신조,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유럽이사회가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시키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안주엽 외, 2007, p.85).”

유럽의회는 2000년 11월 27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서 종교, 장애, 나이, 성적취향 등으로 채용 및 승진, 직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 고용 및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³⁷⁾

36) <https://www.senat.fr>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 2016년 12월 19일 검색)

37) EU지침 제2000/78호 Official Journal L 303 , 02/12/2000 P.16-22; <http://eur-lex.europa.eu> (유럽연합 법령정보센터, 2016년 12월 29일 검색)

제2절 영역별 연령주의

1. 연령주의와 사회적 표상(representations sociales)

연령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표상을 통해서 노인이나 노화를 나타낸다. 과거 노화 혹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가난, 질병, 퇴행, 고립, 불행 등이었지만 현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활동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때문에 예전에 노화 혹은 노인에게 주어졌던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은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들은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고립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존재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회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존 비어드(John Beard) 세계보건기구 고령생애국장은 18세 이상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가?’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아니다’가 60%로 연령주의가 매우 팽배해있다는 것을 지적했다.³⁸⁾

1) 여가, 신체활동과 노화

연령주의는 활동적인 삶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노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한편으로 그들의 신체적인 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참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여가활동은 젊은이들, 가족의 활동으로 인식이 많이 되면서 노인들은 잊혀지기 쉽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참여를 지속화시키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건강과 관련된 사회정책으로 활동적 삶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서 노인들은 큰 대도시보다는 작은 마을 단위에서 노인들의 필요한 것에 더 잘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8) Ouest France, 2016년, 10월 3일, “Seniors. Agisme et discrimination riment avec dépression et isolement”.

2) 성(性)과 노화

노인과 성(性)은 어느 사회나 금기(taboo)시 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잘 못된 믿음과 편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인의 성에 대한 금기는 노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의사 그리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Bondil, 2008). 노화와 관련한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성적본능(sexualité)이 사라지거나, 축소된다’로 존재하고 있다(Dupras et Ribes, 2008). 하지만 현실은 편견이나 잘못된 신념을 초래하는 사회적 표상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현대의 사회적 표상에도 성생활은 ‘젊은’과 ‘아름다움’과 연관을 시킨다. 즉 성적욕망은 노인들에게는 결핍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사랑과 성적본능은 때때로 희화화되거나, 노화를 경시하는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연령주의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무지를 들었는데 이 역시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도 없고, 때문에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잘 못된 믿음만 존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적 미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리학적 연구에서도 노화가 성적 기능을 자동적으로 저하시킨다는 결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들의 성생활은 부정적인 파단을 받고 있으며, 연구도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반대로 노인들이 사회적 표상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감추거나, 스스로 무성욕자(un être asexué)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Kass, 1981).

실제로 노인의 집과 같은 기관에 입소를 하게 되면 노인들에게 성생활의 자유는 끝이 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노인시설들의 문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방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 공간이 없고, 개인 침대만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생활공간 또한 구분이 되어 서로 교류를 할 수 없다(Conseil des aînés, 2004).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부정적인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받아들이는 노인들은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Conseil des aînés, 2004).

한편 노인들의 동성애에 대해서도 전혀 연구나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혼히들 노인들은 이성애자라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다. 노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담론이나, 미디어, 노년학 연구 등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물론 동성애 단체들에서도 노인들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나 이를 위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동성애의 문제는 단지 그들의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인 동성애자들은 노화로 인한 편견과 싸워야 할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편견·차별도 극복해야 한다. 이들에게 노년은 더욱 고독하고 단절된 삶이 되고 있다.

3) 사회적 참여와 노화

노인의 사회적 앙가주망(engagement)은 가족이나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프랑스에서 노인들의 앙가주망(engagement)은 젊은이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주의는 노인들이 여전히 세대 간 연결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앙가주망(engagement)을 끊게 만드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Lagacé, 2009).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전수 시키는 것에 대한 좌절은 사회로 보면 매우 큰 손실이다(Thorpe et Decock, 2004).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표상은 노인들이 사회에 자신들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배제(exclusion)나 축소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는 소외를 증가시키거나 활동을 축소 시킴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를 발생 시킨다(Thorpe et Decock, 2004). 노인들은 자신들이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소외나 자신들이 사회에서 무의미한 존재로 사회에 부담만 되는 존재로 믿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연령주의는 심리적으로 궁핍하고, 고독에 힘들어하는 소외된 이들, '목소리가 없는(sans-voix)'를 약화 시키거나, 소외시키는 역할을 한다(Lefrancois, 2009. p.28.).

연령주의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연대의 전통이 위험에 처했다. 이로 인해서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문화들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점차 작아지고, 경제활동인구가 축소되는 변화로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안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제도들은 프랑스 사회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특히 노동시장의 참여와 관련해서 프랑스 내에서 연퇴연령에 대해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축소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젊은층과 노년층의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참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큰 과제가 지금 프랑스 사회가 극복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경제적 과제이다.

2. 연령주의와 노동시장

중세의 유럽에서 노인이라고 해서 오늘날과는 다르게 "공동체에 살아가기 위한 생존능력에 있느냐 혹은 공동체에 쓸모가 있는가" 하는 노인의 능력에 달렸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지지는 않았다(Jean-Pierre Bois, 1996). 오늘날과 같이 노인이라고 해서 특

별히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계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빈민의 한 범주에 포함되었을 뿐이었다. 당시에는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유용하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 최근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2015년 ‘프랑스 연령과 장애 차별대우-유럽연합과 국내 법정에서 차별 금지법의 내부 한계에 대한 접근방식 비교(Age and disability differential treatment in France - Contrasting EU and national court's approaches to the inner limits of anti-discrimination law)³⁹⁾’라는 논문에서 Marie Mercat Brun은 프랑스의 고용주들은 고령의 노동자 혹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젊은 노동자나 근로자들보다 덜 제공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는 최근 늦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을 하는 정년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법정연령보다 조기에 은퇴하는 것이 최근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Anne-Marie Guillemard, 2003). 이러한 조기은퇴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세대 간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Louis Chauvel, 2011).

프랑스는 최근에는 연금고갈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퇴직연령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전 경제부 장관은 2016년 11월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령에 따른 노동시간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이야기했다⁴⁰⁾. 이러한 마크롱 전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프랑스 사회 곳곳에서 연령에 따른 노동시간 운영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연령과 관련해서 젊은이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는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2월에 발표된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제8차 척도(8ème Baromètre) 조사에 따르면 연령, 임신, 외모가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령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⁴¹⁾.

한편 안-마리 기마(Anne-Marie Guillemard) 파리5대학 명예교수는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인구고령화는 연령으로 구분했던 노동시장의 관습을 단절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를 위해서 연령을 새롭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nne-Marie Guillemard, 2007, pp.11-25).

1) 노인의 역량(생산성)과 활성화 레짐(activation regime)

39) <http://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1358229114558383> (2016년 12월 23일 검색)

40) Libération, 2016년 11월 10일, “Peut-on moduler le temps de travail en fonction de l'âge?”.

41) <http://www.defenseurdesdroits.fr> (권리보호관 홈페이지, 2016년 12월 15일 검색)

노동시장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공적연금을 받기 이전에 퇴직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조기퇴직(préretraite)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아래 [표 4-5]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인들이 조기퇴직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을 중단한 이후의 삶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노후의 삶의 보장은 노인들의 역량에 따른 것이 아닌 공적연금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조기퇴직 문화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산업사회의 경기침체로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를 들 수 있다.

[표 4-5] 나이에 따른 개인의 삶의 수준 변화 추이 1996–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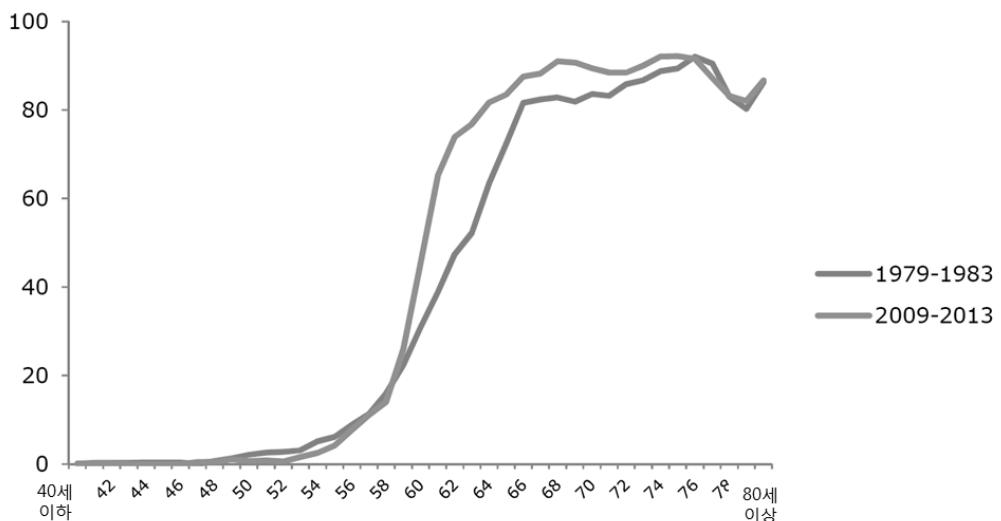
(단위: 유로)

년도	18세 이하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2014	20,730	20,250	22,050	22,850	24,310	27,320	26,740	23,320
2013	20,660	19,830	21,990	22,870	24,370	27,550	26,710	23,780
2012	21,160	20,410	21,970	23,380	25,460	27,820	26,470	23,100
2011	21,630	20,730	22,300	23,860	25,440	28,540	26,620	23,040
2010	21,630	20,390	22,750	24,070	25,700	27,960	25,640	22,870
2009	21,610	20,290	22,780	23,760	25,740	27,750	25,580	22,770
2008	21,630	20,650	22,430	23,730	25,770	28,050	24,930	23,160
2007	20,960	19,990	22,040	22,970	25,510	28,060	24,650	22,650
2006	20,560	19,780	22,200	22,300	25,240	26,760	24,920	22,680
2005	20,300	19,270	21,630	21,970	24,530	26,650	22,970	22,110
2004	19,980	19,600	21,240	21,860	24,300	26,330	22,720	21,580
2003	19,920	19,750	21,330	21,770	24,890	26,000	22,480	21,810
2002	20,140	20,190	21,590	21,930	24,950	25,520	22,640	22,060
2001	19,590	19,010	21,040	21,460	24,670	25,260	22,540	21,410
2000	19,070	18,500	20,290	21,020	24,330	24,610	22,060	21,130
1999	18,570	17,910	19,770	20,530	23,830	24,120	21,900	20,970
1998	18,210	17,500	19,370	20,260	23,230	23,170	20,670	19,900
1997	17,950	16,840	19,090	19,760	22,630	22,350	20,470	19,550
1996	17,820	16,880	19,000	19,670	22,850	21,960	20,360	19,980

자료) Insee, Enquêtes Revenus fiscaux et sociaux rétropolées 1996 à 2004 - enquêtes Revenus fiscaux et sociaux 2005 à 2014, 2016.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노동인력 수요의 감소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노동인력 공급의 과잉으로 인해서 조기퇴직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왔다. 실제로 1979-1982년과 2009-2013년 사이에 연령별 은퇴자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은퇴를 기준으로 본다면 30년 전보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노인은 더 빨리 찾아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1] 연령에 따른 은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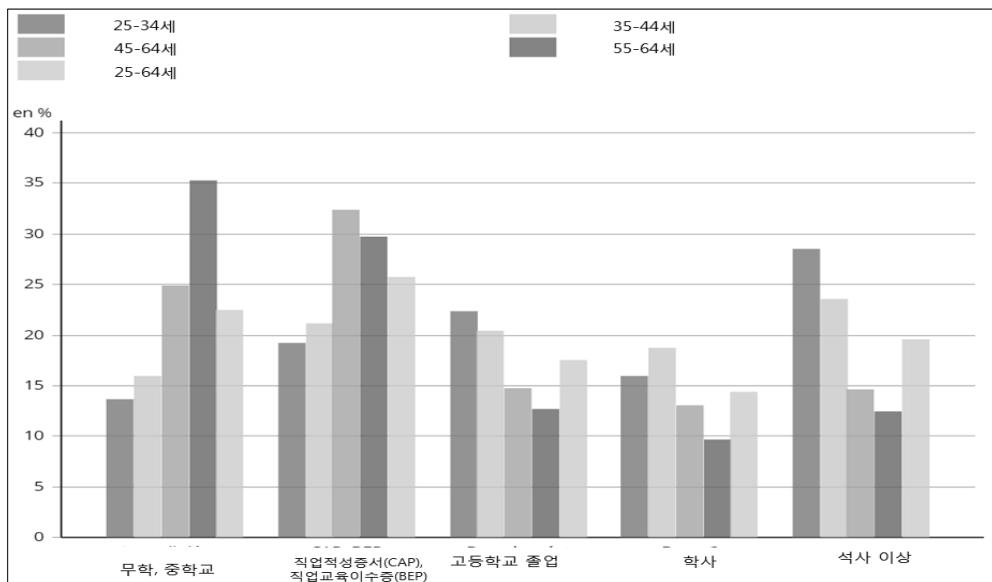
자료) CREDOC, 2013, p.27, 재인용.

이러한 조기퇴직문화가 산업사회에서 실행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작용했다. 현재도 프랑스는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임금(Anciennet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비해서 고령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젊은 노동자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국가통계청(Insee)에 따르면, 특히 55세 이후에 연봉이 급격히 상승하고 하는 50세 이상 임원의 평균연봉이 75,000유로인 반면 30-39세의 임원들은 57,200유로로 나타났다(Insée, 2010). 한편, Aubert et Crépon(2004)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활동인구의 생산력은 40세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 은퇴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고용주들은 고령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보다는 퇴직을 시키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더 유리하고, 은퇴에 대한 비용은 사회에게 떠넘기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생산력에 대한 의문은 신체적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Amar

et Amira, 2003). 노화가 진행될수록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노동활동에 악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인들의 업무효율성이나 역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노동환경이 서비스산업 중심인 3차 산업화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서 젊은이들에 비해서 평균 교육수준이 낮고 가진 기술이 낡은 고령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은 고령 노동자를 선호하지 않는다(Minni et Topiol, 2004). 아래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프랑스의 노인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노인들이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교육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기도 하고, 노인들도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잔류나 재진입에 대한 의욕이 크지 않다.

[그림 4-12] 2015년 연령에 따른 교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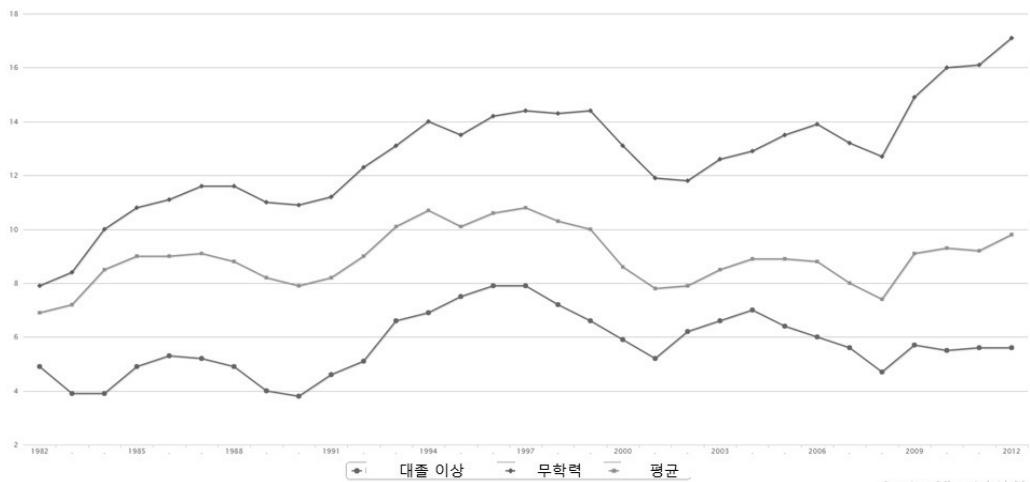


자료) Insee, enquêtes, Emploi, 2016.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은 고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아래 [그림 4-13]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지고 저학력과 고학력의 실업률 차이는 점차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나이

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경쟁력이 부재가 실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단 현재 프랑스의 노인들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경쟁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연대기적 연령과 상관없이 노인들도 노동시장에 머물거나, 재진입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13] 교육 수준에 따른 실업률 비교(1982-2012)



자료) Insee, Donnée 2013.

기업에서 젊은 지원자와 나이든 지원자들 중에 채용하는 이유를 보면 노인의 경우 그들의 경력에서 오는 전문적인 역량, 지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업의식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도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노인들은 노동시장에 머물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표 4-6] 2000년 젊은이와 노인 지원자의 채용 이유

(단위:%)

	30세 미만 지원자	50세 이상 지원자
가장 지원자가 많은 연령	58	13
새로운 기술 습득력	56	3
변화 친화적	51	5
다기능적(polyvalence)	42	21
장기근속 가능	42	6

강한 지원동기	37	24
이동성(mobilité)	37	8
기업 경쟁력의 다양화	34	21
신체적 검사	34	3
전문적 역량	33	67
연령 피라미드의 균형	33	8
유연한 노동시간	29	23
기업 내에서의 성취욕	26	12
저렴한 임금	23	8
국가보조금 가능	20	19
외부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18	11
털 교육이 필요해서	10	33
직업의식	9	42
직업에 대한 지식	7	45

자료) Claude Minni, Agnès Topiol, 2004, p.61, 재인용.

프랑스에서의 은퇴연령과 관련된 조기퇴직문화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연금으로 안정적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2014년에 있었던 은퇴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90%가 연금수령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⁴²⁾ 하지만 이러한 조기퇴직문화는 세대 간 소득의 재분배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갈등의 증가와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프랑스 정부는 은퇴제도와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프랑스는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은퇴연령이 조금씩 증가하고, 50-64세 노동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었다. 특히 2010년 개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은퇴연령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 늦춰졌다.⁴³⁾ 프랑스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차별의 기준으로는 인종, 장애, 건강, 노동조합활동, 임신 등이 연령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42)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은퇴자 오리엔테이션 심의회), 2016, Les âges de départ à la retraite : évolutions et déterminants, actes du 13e colloque, p. 6.

43) Cindy Duc, 2015, L'impact des reformes depuis 1993 sur l'age moyen de depart a la retraite, Colloque du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p.44.

142 | 연령주의(ageism)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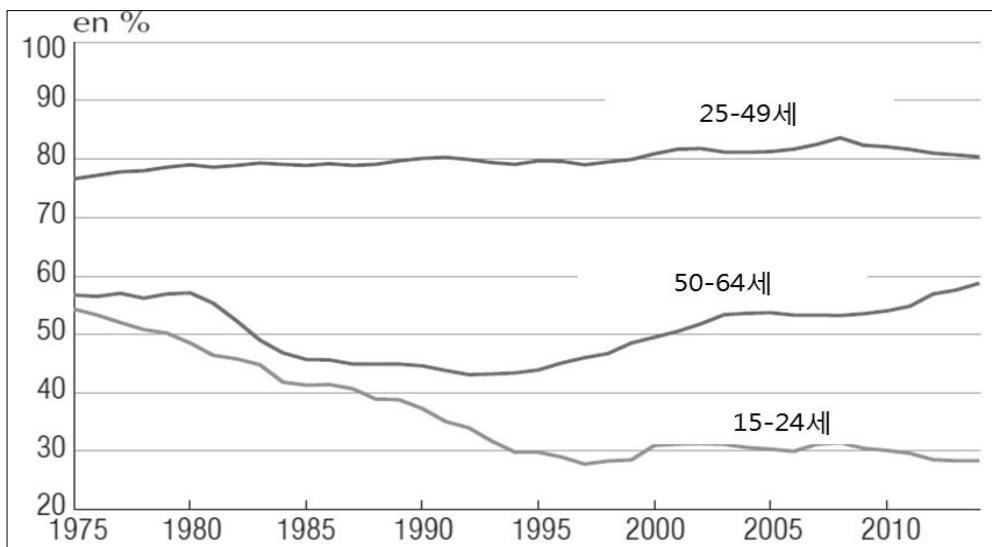
[표 4-7] 프랑스 고용시장에서의 주요 차별 기준

(단위: %)

	민간분야	공공분야
출신(인종)	6.6	3
장애	3.6	4.7
건강	4.7	4.9
연령	1.9	2.4
노동조합 활동	3.9	1.6
임신	3.2	1.3
가족 상황	1.4	1.1
성(性)	2.2	0.9
종교	0.9	0.5
외모	1	0.3

자료) Le Défenseur des droits, Rapport annuel d'activité 2015, p.76.

[그림 4-14] 1975~2014년 연령에 따른 고용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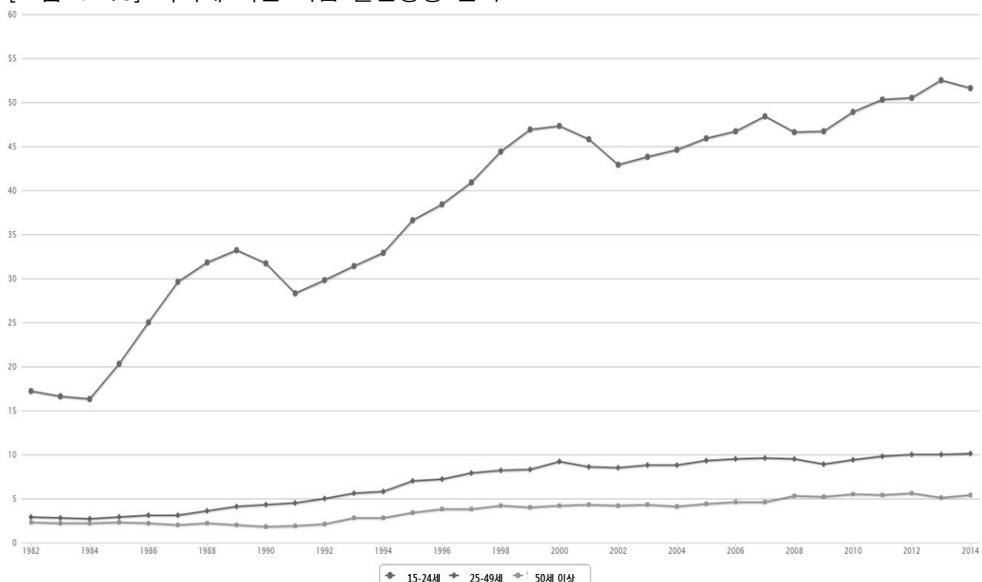
자료) Insee, enquêtes, Emploi, 2016.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 연령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기 보다는 노인들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참여동기 약화가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노동시장에서 연령은 개인에게는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러한 개인의 선택은 공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시장과 연령

프랑스에서 일자리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더 옥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15-24세는 1982년 17.2%에서 2014년 51.6%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5-49세는 2.9%에서 10.1%로 증가해고, 50세 이상은 2.3%에서 5.4%로 가장 낮게 증가했다. 프랑스에서 일자리의 불안정화는 1980년대에서 2000년도 사이에 급속히 악화가 되었는데 가장 젊은 층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림 4-15] 나이에 따른 직업 불안정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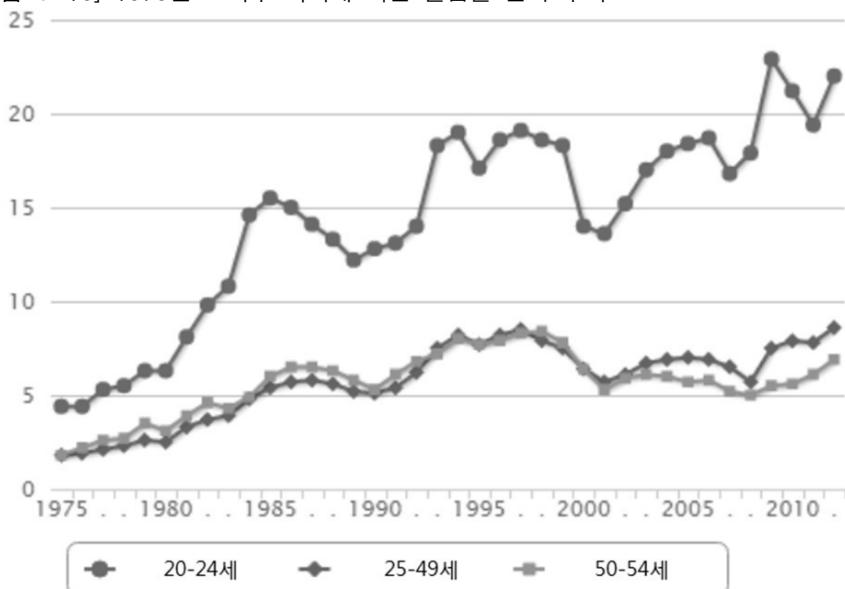


자료) Insee, enquêtes, Emploi; Observatoire des inégalités, 2012, 재인용.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불안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점차 줄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15세에서 24세는 1980년대 17%에서 2014년에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는 이들이 절반에 달한다. 25-49세는 3%에서 10%를 초과했다. 50대 이상에서도 1980년 초에는 2.3%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5.4%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50-54세의 실업률은 1975년 1.9%에서 2015년 6.7%가 가장 낮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프랑스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특히 20-24세는 5% 넘게 급증을 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노동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Louis Chauvel(2010)은 그의 저서 ‘세대의 운명: 20세기부터 2010까지 프랑스에서 사회구조와 코호트(Le destin des générations:

structure sociale et cohortes en France du XXeme siècle aux années 2010)“에서 연령으로 노동시장을 구분하기 보다는 세대로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Chauvel은 오늘날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연령 보다는 세대가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4-16] 1975년도 이후 나이에 따른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Insee, enquêtes, Emploi.; Observatoire des inégalités, 2012, 재인용.

한편 프랑스 취업과 관련해서 연령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을까? 2006년에 만들어진 ‘평등한 자격(A Compétence Égale)’연맹의 2013년 10월에서 2014년 3월 사이에 진행한 ‘취업(L'accès à l'emploi)’과 관련한 조사에서 연령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컨설턴트 그리고 기업의 리쿠르터 사이에 연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니어’의 연령에 대한 기준에서 구직자는 48%가 45세, 26%가 50세라고 답했고, 취업 컨설턴트는 55%가 50세, 24%가 45세 그리고 기업의 리쿠르터는 38%가 55세 27%가 6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리쿠르터가 ‘시니어’에 대한 연령 기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 ‘시니어’는 몇 세부터인가?:

(단위:%)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기업리쿠르터
60세 이상	10	2	27
55세	7	12	38
50세	26	55	22
45세	48	24	11
40세	9	7	2

자료) Les enquêtes d'A Compétence Egale, 2013.

기업에서 고용을 할 때 ‘시니어’의 지원에 대한 제약에 대한 조사에서 시니어 지원자들은 91%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의 리쿠르터들은 35%만 존재하고, 65%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실제 기업에서 고용을 할 때 연령이 제약이나 차별요소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자들이나 사회에서는 연령이 취업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할 수 있다.

[표 4-9] ‘시니어’ 지원자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가?:

(단위:%)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기업리쿠르터
존재한다	91	74	35
존재하지 않는다	9	26	65

자료) Les enquêtes d'A Compétence Egale, 2013.

시니어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에서 작용하는 제약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비용(coût)’으로 노인 구직자들은 60%가 비용이라고 답했고, 기업의 리쿠르터는 49%라고 답했다. 단 취업 컨설턴트는 ‘노인 구직자와 젊은 동료의 화합의 어려움’을 55%로 첫 번째로 꼽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46%가 ‘변화에 대한 저항’을 시니어 지원자를 채용하는데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146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표 4-10] ‘시니어’ 채용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최대 4가지 응답 가능)
(단위:%)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기업리쿠르터
비용	60	32	49
다루기 어렵다	34	33	30
과도한 결정(Sur-dimensionnement)	33	44	21
매니저의 역할을 대신 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33	6	11
젊은 팀원과의 화합의 어려움	27	55	22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잔여 기간	26	26	25
새로운 기술 습득의 취약함	23	32	28
변화에 대한 저항	20	36	43
옛날 지식	15	7	10
운동성 결여	14	4	15
더 약한 건강	13	3	19
무기력/약한 동기부여	8	18	14
완고함	6	15	18
창의력 부족	2	5	6
자주적 행동 결여	1	1	1
기타	12	11	4

자료) Les enquêtes d'A Compétence Egale, 2013.

시니어의 장점에 대해서는 구직자, 취업 컨설턴트 그리고 기업의 리쿠르터가 비교적 비슷한 응답을 했다. 시니어의 장점으로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독립성, 세 번째 ‘뒤로 물러날 수 능력(Capacité de recul)’ 그리고 네 번째가 전문성을 꼽았다.

노인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이동성에 대한 질문에서 역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90%가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임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68%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32%는 아니라고 답했다. 반면 지리적인 이동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노인 지원자는 47%만이 준비가 되었고, 53%는 어렵다고 답했다. 노인들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변화는 수용할 준비가 되었지만 임금의 감소나 지리적으로 이동이 많은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프랑스 연령주의 척도 및 평가

1. 프랑스에서 연령주의 연구

Annick Percheron은 “연령과 관련된 정책은 사회복지국가의 도구이자 생산물이다 (la police des âges est l'instrument et le produit de l'État-providence).”라고 이야기 할 만큼 연령과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Annick Percheron, 1991, p. 111). 예를 들어 1981년 프랑스에서의 첫 번째 사회제도는 8세 미만의 어린이의 노동을 금지 시키고,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노동시간을 제약하는 등 나이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후 은퇴제도가 연령을 기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된다.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신체적인 부적격함에 대한 실용적인 기준,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 그리고 행정의 간소화를 이를 수 있는 장점에서 연령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으로 인식이 되었다(Annick Percheron, 1991, p. 117).

한편 최근에는 연령으로 이한 차별 혹은 연령주의는 연령에 근거한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의문 이전에 근본적으로 Marie Mercat-Bruns은 프랑스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은 그렇지 친숙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Marie Mercat-Bruns, 2002, pp.109-135). 특히 연령과 관련된 차별에 대한 법령은 유럽연합의 법과 프랑스 법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법은 오랜 동안 성(性) 혹은 인종 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지만 연령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2001년 노동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연령으로 인해서 처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제도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무은퇴연령과 관련해서 연령이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연령 때문에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점차 늘고 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선택적 은퇴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만기연금의 납입이 부족하거나 작은 일거리라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담론이 점차 프랑스 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령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영미권 연구와 비교하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연령과 관련한 차별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문제, 금

용신용 그리고 보험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각 영역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와 관련해서는 1989년에 만들어진 “메르마즈(Mermaz) 법”에 의해서 70세 이상의 임차인은 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집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벌어지는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의 사례를 통해서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2. 프랑스 연령주의 척도

프랑스의 연령주의 연구를 위한 척도는 Fraboni Scale of Ageism(FSA)를 프랑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FSA-R(Fraboni Scale of Ageism-Revisited)와 프랑스에 맞게 타당도 검사를 한 FSA-14가 가장 대표적이다.

[표 4-11] FSA-R과 FSA-14

	문항	FSA-R	FSA-14
1	젊은 사람의 자살이 노인의 자살보다 더 비극적이다.	Stereotypes	-
2	많은 노인이 인식하고 그들의 돈과 자신을 축적한다.	Stereotypes	Stereotypes
3	많은 노인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옛 친구들과의 교제의 폭에 만족한다.	Stereotypes	-
4	많은 노인들이 과거에서만 돈벌이를 했다.	Stereotypes	Stereotypes
5	때때로 노인을 볼 때, 시선을 맞추지는 것을 회피한다.	Separation	Separation
6	나는 노인이 나와 대화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Separation	Separation
7	대부분의 노인과 흥미롭고, 복잡한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Separation	-
8	노인들로 둘러싸였을 때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정상이다.	Separation	Separation
9	노인은 비슷한 연령의 친구를 만난다.	Separation	Separation
10	노인들은 모임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환영 받는다고 느낀다.	Separation	-

11	초대가 된다면, 난 노인의 집 오픈하우스의 날에 참여 하지 않기를 더 선호한다.	Stereotypes	-
12	개인적으로 나는 노인과 동석을 오래 하고 싶지 않다.	Affective attitude	Stereotypes
13	노인은 정말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Separation	-
14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노인을 믿을 수 없다.	Stereotypes	Stereotypes
15	많은 노인들은 그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하다.	Stereotypes	-
16	노인은 아무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	Separation	Separation
17	대부분의 노인들은 동반자에게 우호적이다.	Affective attitude	Affective attitude
18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슬프다.	Affective attitude	-
19	노인들에게 정치적 생각을 표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Affective attitude	-
20	대부분의 노인들은 각자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Affective attitude	Affective attitude
21	많은 노인들은 몸이 더럽다.	Stereotypes	Stereotypes
22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가시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이다.	Stereotypes	Stereotypes
23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불평한다.	Stereotypes	Stereotypes

자료) Valérian boudjemad, Kamel Gana, 2009, p. 389.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프랑스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령주의를 연구하는 이제 초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연령차별금지법의 도입과 비슷하게 유럽연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연령주의에 대한 척도에 있어서도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서 2008년에 만든 연령주의 척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조사는 연령과 관련해서 인지능력(perceptions), 관계(relationships), 고정관념(stereotypes) 그리고 편견(prejudices)의 영역에서 연령주의 경험, 연령과 관련한 사회적 위치(Status), 고정관념, 차별경험 그리고 다른 연령층과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표 4-12] 급내상관관계수(ICCs) Ageism(ESS4 2008) Module items of ESS

	Items	ICC
Age categorisation and identification		
E2	몇 살부터 늙었다고 평가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가?	.056
E1	몇 살까지 젊다고 평가된다고 생각하는가?	.136
E4	당신은 당신이 속한 나이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갖고 계신가요? 매우 약함 0에서부터 매우 강함 10 중 선택하시오.	.040
Perceived status of age categories		
E7	70대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낮음 0에서 매우 높은 10 중 선택하시오.	.167
E24	적절하게 겸증 받은 70세가 당신의 상사로 온다면 어떻게 받아 드리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함 0에서 흔쾌히 받아들임 10 중 선택하시오.	.097
Perceived threat of age categories		
E14	70세 이상이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못함 0에서 매우 크게 기여를 함 10 중에 선택하시오.	.149
E12	70세 이상이 건강서비스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없음 0에서 매우 부담 10 중에 선택하시오.	.092
Age stereotypes		
E20	70세 이상은 능력이 있다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0에서 매우 그렇게 보인다 4 중에 선택하시오.	.073
E19	70세 이상은 친근감이 있다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0에서 매우 그렇게 보인다 4 중에 선택하시오.	.036
Direct prejudice		
E34	70대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매우 부정적 0에서 매우 긍정적 10 중에서 선택하시오.	.049

Personal experience of ageism			
E39	과거에 얼마나 자주 연령으로 인해서 안좋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음 0에서 매우 자주 4 중에서 선택하시오.	연령주의 경험	.039
E55	연령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심각함 1에서 전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없음 6 중에서 선택하시오.	연령주의는 심각한 이슈가 아니다	.073
Contact			
E42	가족 이외에 70세 이상의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없음 1에서 10명 이상 5 중에서 선택하시오.	Number of friends with people over 70	.039

자료) Dominic Abrams, Christin-Melanie Vauclair, Hannah Swift, 2011, p.80.

[표 4-13] 노인의 스스로 인간성 상실(Auto-deshumanisation) 관련 적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노인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한 모습이다.	1	2	3	4	5
노인이라는 것은 나를 보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1	2	3	4	5
나는 내가 노인그룹에 속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나는 다른 노인들과 연대감을 느낀다.	1	2	3	4	5
나는 내가 노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다른 노인들과 굳게 결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자료) Aude Verhelst, 2014, pp.73-74.

제4절 소결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1970년에 ‘노년(La Vieillesse)’이라는 책에서 ‘노년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이하는 숙명’이라고 정의했다. 그녀는 많은 아름다운 결론으로 귀결되는 우화들처럼 노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잘 못된 환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늙어 가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사회가 혹은 타자에 의해서 자신의 연령을 확인 받을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회피하거나, 더 나아가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년에 대해서 사르트르(Jeans Paul Sartre)은 ‘실감할 수 없는 것(irréalisable)’이라 표현했다. 즉 노인들의 ‘연령’은 노인들 스스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이기 보다는 사회가 규정지어주고, 부여하는, 일깨우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시몬 드 보부아르 자신도 누군가 그녀에게 늙었다는 말을 했을 때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이처럼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아닌 외부의 어느 타자에 의해서 일깨워지고, 규정 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주의는 바로 이와 같이 타자에 의해서 규정지어는 잣대로 인해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차별에 대한 연구는 인종(ethnie)나 성(性)과 관련해서 주로 이뤄져왔다. 2000년 이후에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노인에 대한 무시 혹은 폭력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서 ‘연령주의(L'âgisme)’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 연구나 통계자료가 검색이 되고 있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차별(la discrimination)’과 ‘연령(l'âge)’을 함께 검색하면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연령주의와 관련해서 노인인구집단이 처한 그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배제, 기피에 대한 노인들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럽연합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통해서 노인인구집단과 다른 연령인구집단 간의 비교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로

서의 노인인구집단의 특성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이나 돌봄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평가에 대한 지표(l'échelle de qualité de vie adaptée aux personnes âgées, EQVPA)’는 노인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객관적인 사회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연령효과(effet d'âge)’에 따른 연령집단별 사회적 이해와 태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직 연령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포괄적인 이해와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연구는 부족하지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전 연령층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재정상태, 건강상태, 노동활동상태, 생활환경상태 등등에 대해서 각각 연령에 따른 비교연구는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장점으로는 노인인구집단의 상황을 다른 인구연령집단과 비교할 수 있고 이에 연령효과가 어떻게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

연령효과 이외에 ‘세대효과(effet de génération)’에 따른 세대 간 특성 혹은 차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Louis Chauvel은 연령에 의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세대효과에 의해서 미치는 프랑스 젊은이들에 대한 차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세대효과에 의해서 프랑스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연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나 노력을 세대 간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주의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라고 정의를 하다면 프랑스는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받고 있는 혹은 느끼고 있는 편견, 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이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에서 연령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최근에는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서 연령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에서 연령주의 연구의 대상은 노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가 프랑스 연령주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소외(exclusion)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호(protection)로 볼 수 있다는 Didier Fassin(2002)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연령주의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연령주의와 관련한 통합척도는 아직 부재하지만 전 연령층에 대한 연령

주의적 행동에 대한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져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프랑스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연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자 한다면 노인에 대해서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연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측정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연령주의 통합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연령주의 통합지표의 연구대상이 노인에만 국한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령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연구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그 대상이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안주엽 외. 2007. “노동과 차별: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한국노동연구원. p. 80-145.
- Age UK,『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2011,
- Angus, J., et P. Reeve. 2006. “Ageism : A threat to "Aging Wel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25. no 2. p. 137-152.
- Anne-Marie Guillemard. 2003.『L'âge de l'emploi : Les sociétés à l'épreuve du vieillissement』. Armand Colin.
- Anne-Marie Guillemard, 2007, “Pourquoi l'âge est-il en France le premier facteur de discrimination dans l'emploi ?”, Retraite et société, n° 51, pp.11-25.
- Annick. Percheron, 1991, “Police et gestion des âgés”, in A. PERCHERON, R. REMOND (eds), Age et politique, Economica, Paris, p.111.
- Aude Verhelst, 2014, “Auto déshumanisation des personnes âgées: Impact de l'identification au groupe et conséquences sur les cognitions et les émotions”,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pp.73-74.
- Béatrice Beaujils, 2007, Du découpage de la vie à l'âgisme, Sciences Sociales et Santé, Vol. 25, n° 3, pp. 107-110.
- Bondil, P. 2008. “Vieillissement sexuel: mythes et réalités biologiques”. Sexologies. vol. 17. p. 152-173.
- Insee, 2015, Enquêtes Revenus fiscaux et sociaux rétropolées 1996 à 2004 - enquêtes Revenus fiscaux et sociaux 2005 à 2014.CREDOC, ‘Baromètre du Numérique’.
- Cindy Duc, 2015, L'impact des reformes depuis 1993 sur l'age moyen de départ a la retraite, Colloque du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p.44.
- Conseil des aînés. 2004.『Cheveux gris cœur chaud : Document de réflexion sur la sexualité des aînés』.
- Conseil des aînés du Québec. 2010.『Avis sur l'âgisme envers les aînés : état de la situation』.
-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2016, Les âges de départ à la retraite : évolutions et déterminants, actes du 13e colloque, p. 6.
- CREDOC, 2013, “Evolution des conditions de vie et des aspirations des seniors en France depuis 30 ans”,
- David Herold. 2012. Digital natives: Discourses of exclusion in an inclusive society. Dans Loos, E. F., L. Haddon & E. Mante-Meijer (dir.), Generational use of new media (p. 71 - 87). Farnham: Ashgate.
- Didier Fassin. 2002. L'invention française de la discrimination.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52e année, n°4, pp. 403-423.

- Dominic Abrams, Christin-Melanie Vauclair, Hannah Swift, 2011, Predictors of attitudes to age across Europe,
- Dupras, A., et G. Ribes. 2008. "La sexologie gérontologique". Sexologies. vol. 17. p. 121-123.
- INSEE, 2010, «Les salaries en France».
- J. Macnicol, «Age Discrimination.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chapitre III.
- Jean-Pierre Bois, 1996, "Du pauvre stropiat à la personne âgée dépendante", Réadaptation, La vie des personnes âgées devenues dépendantes, no. 40.
- Kaas, M.J. 1981. " Geriatric sexuality breakdown syndrom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13, n°1, p. 71-77.
- Le Défenseur des droits, Rapport annuel d'activité 2015.
- Lefrançois, R. 2009. «Vieillesse oubliées : Insécurité économique et sociale des aînés». Sherbrooke, Les Éditions G.G.C.
- Marie Mercat-Brun, 2002, "Discrimination fondée sur l'âge et fin de carrière", Retraite et Société, no36, pp.109-135.
- Martens, A., J.L. Goldenberg et J. Greenberg. 2005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1, n°2, p. 223-239.
- Marie Mercat-Brun. 2001. «Vieillissement et droit à la lumière du droit français et du droit américain». Thèses. Paris. LGDJ. coll.
- Nelson, T.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1, n°2, p. 207-221.
- Notre temps, "L'appellation des plus de 50 ans : perceptions, représentations et sémantique", TNS SofresPalmore. E.B..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2e édi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Patrick Aubert, et Crépon Bruno. 2004. "Les salariés âgés sont-ils moins productifs?". Gérontologie et société. vol. 4, no 111, p. 95-112.
- Poli Alexandra, Caradec Vincent, Lefrançois Claire, 2009, "Les discriminations liées à l'âge, entre exclusion et protection", Essai & Débat.
- Stones, M.J., et L. Stones. 1997. "L'âgisme: l'épidémie silencieuse".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8. n°5. p. 295-296.
- Thorpe, E., et G. Decock. 2004. "La discrimination fondée sur l'âge en Europe". Gérontologie et société, vol. 4, n°111, p. 207-223.
- Viriot Durandal Jean-Philippe. 2003 «Le pouvoir gris. Sociologie des groupes de pression de retraités». Collection le Lien Social,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3.
- Valérian boudjemad, Kamel Gana. 2009. "L'âgisme: Adaptation française d'une mesure et test d'un modèle structural des effets de l'empathie, l'orientation à la dominance sociale et le dogmatisme sur l'âgisme". 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28(4), p. 389
- Vincent Caradec, Alexandra Poli. 2009. "Diffusion et usages de la notion de discrimination sur

l'âge en france". Sous la direction d'Élise MUIR,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 liées à l'âge en matière d'emploi, p. 15.

Libération, 2016년 11월 10일, "Peut-on moduler le temps de travail en fonction de l'âge?".

Ouest France, 2016년, 10월 3일, "Seniors. Agisme et discrimination riment avec dépression et isolement".

제5장

결론

지은정

연령주의는 연령을 기초로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편견·고정관념, 태도로써, 대부분 미국 학자인 Burtler(1969)나 Palmore(1999; 2001)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령주의를 ‘어떤 연령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정의하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거나 차별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Burtler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정도가 다른 OECD 국가보다도 심하지만, 아직 연령주의, 에이지즘이라는 용어도 보편화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도 연령주의 개념을 프랑스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Burtler이 사용한 연령주의 개념을 가장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Stop Discrimination’ 홈페이지의 용어집에서 ‘연령주의는 나이를 이유로 한 집단(un groupe) 또는 개인(une personne)’에 대한 선입견(un préjugé)’라는 정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국 학자의 정의를 인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Burtler(1969)나 Palmore(1999)의 정의를 사용하고 우리만의 연령주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연령주의의 구성요소도 Palmore(1999)의 편견, 고정관념, 차별, 태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연령주의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 이은 우리 사회의 3번째 이즘(ism)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별에 비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적다. 연령주의는 1969년 미국의 노년학자인 Burtler이 제시한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져서(1980년보다 2배 증가)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의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WHO, 2015; Levy and Macdonald, 2016 재인용)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Levy and Macdonald, 2016).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컨대, 1960년대 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경우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본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이다. 아직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사회문제로 생점화 되지 못하고 관련 연구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김진, 2016). 프랑스도 연령주의나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란 용어는 매우 근래에 와서야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 이미 연령이 차별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프랑스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슷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M. Mercat-Brun, 2001; Macnicol, 2006; 손동기, 2016 재인용).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구가 몇 편 수행되다가 소강상태를 거친 후, 2010년 이후 조금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연령주의는 다른 국가보다도 더 생경하고 관련 연구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없을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문화와 역사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공격의식이 있지만, 산업화 이후 무의식적으로 노인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서구국가보다 연령주의가 더 심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선진산업국가인 프랑스도 산업화 이후 노인들의 위상과 신분이 떨어졌고(손동기, 2016), 일본도 1975년 이후 경로사상이 약해지고 생산성을 상실한 고령자에 대한 무능력, 쇠약함을 강조하는 부정적 태도나 이미지가 고령자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약자 이미지가 더욱 확대되었다(副田, 1986; 김진, 2016 재인용).

노인에 대한 호명도 최근으로 올수록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80년대 들어와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김진, 2016). 프랑스는 50세 이상의 프랑스인들에게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냐는 조사에서 40%가 '시니어(Les seniors)', 38%가 '은퇴자(Les retraités)'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은 '노인(Les personnes âgées. 67%)'으로(손동기, 2016) 고령자는 노인으로 호명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노인은 이미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되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누구를 부를 때 노인이라는 용어를 호칭으로 쓰지 않고, 지칭어로서도 그 사용이 조심스러워졌다(정진웅, 2011). 따라서 연령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이라는 호명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의미 또한 축소시켜야 한다.

한편, 연령주의는 긍정적인 연령주의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연령주의가 더 팽배

해있다. 노인을 쇠약하고 우울하고 가난하며 무력하고 완고하며 지저분하다와 같은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다. 또한 노인을 아이처럼 대하거나 노인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기도 한다. 노인이 노인을 경시하기보다는 비노년 계층이 노년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고령자는 '자신의 노화'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노화'와 싸우고 있다」는 (都築, 2013; 김진, 2016 재인용)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달로 우리나라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기는 하지만, 미국, 프랑스, 일본 모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크다.

연령주의는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계층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가 더 심각하다. 프랑스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령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크고 일본에서는 연령주의라고 하면 모두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연령주의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고령자에 대한 연령주의 실태와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연령주의는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모든 연령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연령주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노동시장으로써,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며 임금차별, 승진차별, 강제퇴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활동 자체를 저해하여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에 연령주의를 측정하고자 한 시도들이 지속되었다. 다만, 연령주의로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노화사실인지척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Attitudes Toward Old People Measure(Tuckman and Lorge,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Scale(Kogan, 1961), Aging Semantic Differential(Rosencranz and McNevin, 1969), The Salter View of Elderly Scale(Salter and Salter, 1976), Facts on Aging Quiz(Palmore, 1977; 1998), Ageism Survey(Palmore, 2001), Fraboni Scale of Ageism(Fraboni et al., 1990), the image of aging scale(Levy et al., 2004), Succession, Identity and Consumption Scale(North and Fiske, 2013), Ageism(European Society Survey. ESS. European Commission, 2008), Nordic Age Discrimination Scale(NADS. Furnes and Mykletun, 2010), Workplace Age Discrimination Scale(Marchiondo et al., 2016)을 들 수 있다(European Society Survey

홈페이지, Palmore, 2001; Morrison and Morrison, 2002; Cherry and Palmore, 2008; Furunes and Mykletun, 2010; Wisdom, 2010; Kilic and Adibelli, 2011; North and Fiske, 2013; Fiske and North, 2014; Levy and Macdonald, 2016; Marchiondo et al., 2016).

그러나 그 외에는 Palmore(2001)의 ageism survey와 Fraboni et al.(1990)의 FSA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척도개발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일본은 연령주의에 대한 척도를 별도로 개발하기 보다는 Fraboni et al.(1990)의 FSA 척도(29문항)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본판 FSA 단축판(14개 문항)을 많이 사용한다. 일본에서 축약된 FSA 단축판은 노화에 대한 지식이나 노인관·나이 드립에 대한 의식을 묻지 않는다. 다만,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연령주의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2003년 일본 내각부에서 '나이 드립에 대한 의식조사(전국 15세 이상 6,000명)'를 하면서 연령주의를 질문하였고, 2004년에는 '공생사회에 관한 기초조사(2004년 전국 20세 이상 5,000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이지즘의 실태규명과 고령화 교육의 추진)조사(킨키지역 거주 40세 이상 1,840명 대상)'를 실시하여 고령자에 대한 편견, 차별, 부적절한 대응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지표'를 고안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 알렸다. 지표는 '어르신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곤란해 질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한다', '어르신에게 큰 소리로 호통친다', '어르신을 아이 취급한다', '어르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는다' 등의 15문항으로 구성하여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실태를 보고하였다.

프랑스도 연령주의 척도를 별도로 개발하기 보다는 Fraboni et al.(1990)의 FSA 척도를 프랑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FSA-R과 FSA-14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ESS 차원에서 연령주의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프랑스만의 척도를 마련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척도는 '노인 스스로 인간성 상실(auto-deshumanisation)가 있다. 노인 스스로 인간성 상실' 척도는 6문항으로 '노인이 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 '나는 다른 노인들과 연대감을 느낀다', '나는 다른 노인들과 굳게 결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도 2006년부터 '노인들의 삶의 질 평가에 대한 지표'도 실시되고 있다. 연령주의지표는 FSA-R과 FSA-14와 유럽연합의 ESS를 사용하고 노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기 보다는 Sanders et al.(1984)의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번안하여 사용하거나(한정란, 2000;

2003; 김수영 외, 2002; 원영희 외, 2002; 임영신 외, 2002; Sanders et al., 1984; Hawkins, 1996; 한정란, 2004 재인용), Palmore(1977)의 FAQ를 활용하여 노화사실인지정도를 측정하거나(문혜리, 1999; 한정란, 2000; 김수영 외, 2002; 한정란 외, 2007 재인용), Palmore(2001)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조사하거나(김욱, 2003; 원영희, 2005; 양정남 외, 2010), FSA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김지연 외, 2012)가 대부분이다. 혹은 윤진과 조석미(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 원영희(2005)의 노인차별피해경험 척도가 있고, 한정란(2000)이 Palmore(1988)가 개발한 Facts on Aging Quiz I (FAQ I)과 Facts on Aging Quiz II (FAQ II) 및 윤진과 조석미(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개발한 한국판 노화에 대한 지식 척도'가 있을(한정란, 2007; 김지연 외, 2012) 뿐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령주의 척도 개발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끝으로 해외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1990년대 이후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연령주의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연방차별금지기구(ADS)는 “최상의 노년”이라는 주제로 2012년을 ‘노년의 해’로 지정하여 연령차별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노년에 대한 인식을 계몽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연령차별과 관련된 개념과 Q&A 정리, 상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ADS, 2012).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도 한다(ADS, 2016; 송영신, 2016 재인용).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적 약자라는 고령자 이미지를 지적하고 제2의 현역으로서의 새로운 고령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인식개선과 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후생백서』(1997년)에서는 사람들이 ‘노화’나 ‘고령자’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만(노인신화. 神話) 이는 대부분 고령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비롯되므로 고령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부정적 인식전환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일본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사회대책을 전면에 내걸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고령자의 사회참가나 사회연대 구축을 저해하고 고령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져 노인문제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정부시책에서 보이는 고령자관도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노인이 아니라 활동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김진, 2016).

또한 유럽연합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active aging, productive aging, successful aging, healthy aging과 같은 신노년담론을 가치로 노인에 각인된 부정적 이

미지(노쇠하고 연약한)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과거처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노인복지를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연령주의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도, 연구도 적지만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더 미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주장한 보고서는 있지만(지은정 외, 2016)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60세 이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차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단일문항이나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판 연령주의 지표로 측정하여 문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소개

■ 책임연구원

지은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진(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동기(한국외대 EU연구소 연구원)

연령주의(ageism)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행 ■ 2016년 12월

발 행 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소 ■ 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종산동 1701)

전화번호 ■ 031) 8035-7500 Fax. 031) 819-0790

인 쇄 처 ■ 동진문화사 02) 2268-5805

